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26. 1.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이용 안내

1. 사업시행지침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주요 지원사업 (용자사업 포함)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분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수행자가 정해진 사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등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3. 사업지침 개정 등으로 수록된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 완료 후 농업e지(www.nongupez.go.kr)에 게시되오니, 자료가 필요할 경우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침서의 연락처나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비, 지원내용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시행지침서의 상세내용은 농업e지(www.nongupez.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사업별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서 인터넷 검색 방법

☑ 농업e지(www.nongupez.go.kr)



인터넷

농업e지 사용안내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농업e지' 검색
- ☑ 농업e지 (www.nongupez.go.kr) 접속 → 로그인 → 농식품 사업 검색 및 맞춤형 추천사업 확인(전체사업 or 간편찾기 or 맞춤사업 or 인기사업 or AI추천) → 사업신청

[전체사업]

- 사업 검색창을 클릭하여 사업명 또는 사업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
- 검색창 아래 검색 조건별 사업 목록 및 내용 확인

[간편찾기] 자격, 품목, 관심 분야 조건으로 검색 가능

[맞춤사업] 나의 자격과 조건에 맞는 사업을 로그인하여 확인

[인기사업] 많이 본 사업, 공유된 사업, 인기 사업을 확인

[AI 추천] AI 챗봇과 대화를 통해 나에게 맞는 사업을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Nongupez website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농업(e)지', '농업경제', '농식품사업 안내' (highlighted), '농식품지도', '농업e지 도우미', and '고객센터'. Below the navigation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여기서 사업을 찾을 수 있어요.' and a search input field containing '사업을 검색하세요'. Below the search bar are several filter buttons: '검색영역', '2026', '지역', '사업대상', '사업광고', '온라인신청', '담당기관', '사업분야', and '재배품목'. Below the filters, it shows '총 367건' and sorting options: '주요사업 순', '신청마감일 순', '최신등록 순', and '가나다 순'. Thre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as cards, each with a title, a brief description, and the year '2026'.

사업명	사업연도
기본형공익직불	2026
전략작물직불	2026
친환경농업직불	2026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분류 세부기준

대분류(9)	중분류(36)	내용(소분류)
생산기반 (공통)	1. 직불제	1. 기본직불 2. 선택직불
	2. 소득안정	1. 재해지원 2. 경영안정
	3. 농기자재	1. 비료농약 2. 농기계, 장비
	4. 농지	1. 농지구입, 임차
	5. 농촌인력, 일자리	1. 인력(농촌인력)
농촌, 공동체	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1. 농촌복지 2. 취약계층 3. 여성농업인
	2. 농촌개발, 농촌산업	1. 농촌개발 2. 농촌산업
	3. 농촌공동체, 환경	1. 농촌공동체 2. 농촌환경 3. 농촌돌봄
	4. 지역먹거리	1. 푸드플랜
	5. 귀농귀촌, 인력육성	1. 귀농귀촌 2. 인력육성 3. 경영체지원
식량	1. 공동경영체	1. 공동경영체
	2. 기반조성	1. 농촌용수 2. 수리·배수 3. 기반조성
	3. 수매, 가공, 소비	1. 수매, 가공, 건조 2. 소비촉진(식량)
원예작물, 유통	1. 시설·기반(시설, 장비)	1. 기반조성, 하우스·온실설치 2. 내외부 시설장비 3. 산지조직화
	2. 채소(노지, 시설)	1. 노지채소
	3. 과수, 화훼, 특작	1. 과수 2. 화훼, 특작
	4. 유통, 가공 효율화	1. 유통, 보관시설 2. 물류, 마케팅
	5. 수급안정, 소비촉진	1. 수급조절 2. 소비촉진
축산	1. 시설·장비지원	1. 축사시설 2. 축사부대시설 3. 조사료지원
	2. 가축사육, 말산업	1. 소 2. 기금, 양봉, 기타가축
	3. 축산환경개선	1. 환경개선 2. 분뇨자원화 3. 퇴액비활용
	4. 가공, 유통, 수급, 소비	1. 축산물품질관리 2. 축산물 위생안전 3. 축산물유통, 수급관리 4. 축산물소비촉진
	5. 가축방역, 위생지원	1. 방역대응 2. 동물약품
식품	1. 기반구축	1. 산업기반
	2. 식품안전, 환경, 인증	1. 식품안전 2. 식품인증
	3. 식품산업, 외식산업	1. 식품산업 2. 외식산업
	4. 식생활, 식품소비	1. 식품소비촉진
	5. 농식품 수출	1. 농식품 수출지원 2. 해외판로
농생명산업	1. 스마트농업	1. 스마트 시설장비 2. 스마트 실증 보급 3. 데이터구축 및 활용
	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1. 종자, 묘목 2. 도시농업
	3. 동물복지	1. 동물복지 2. 동물산업 3. 개식용종식
	4. 창업, 농산업인력	1. 농식품창업 2. 농산업인력 3. 농산업지원
	5.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1. 농산업수출 2. 국제개발지원
탄소중립, 기후변화	1. 친환경농업	1. 친환경농업 2.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2. 저탄소농축산	1. 탄소저감
임업	1. 임업	1. 임업

CONTENTS 목차

생산기반(공통)

1-1	직불제	3
	• 기본 직불	
	1 기본형공익직불	5
	• 선택직불	
	2 전략작물직불	7
	3 친환경농업직불	9
	4 친환경축산직불	11
	5 경관보전직불	13
	6 농지이양 은퇴직불	15
	7 피해보전직불	17
1-2	소득안정	19
	• 재해지원	
	8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21
	9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23
	10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25
	11 가축재해보험	26
	12 농업수입안정보험	28
	13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29
	• 경영안정	
	14 농업종합자금	30
	15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32
	16 농축산경영자금(재해대책경영자금)	34
	1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6
	18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장 조성	38
	19 농업경영회생자금	39



1-3 농기자재 41

• 비료농약

20 토양개량제 지원 43

• 농기계, 장비

21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45

22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47

23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49

24 농기계임대 50

25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52

26 농업기계 구입지원 53

1-4 농지 55

• 농지구입, 임차

27 맞춤형농지지원 57

28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59

29 농지연금(용자) 61

30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63

31 농지은행사업관리비 65

32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66

33 농지은행교육지원 67

34 훼손농지복구 69

1-5 농촌인력, 일자리 71

• 인력(농촌인력)

35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73

36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75

37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77

CONTENTS 목차

농촌, 공동체

2-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81

• 농촌복지

- 38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농번기돌봄지원-지자체) 83
- 39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농촌아이돌봄지원-지자체) 86
- 40 농촌형교통모델 91
- 41 농촌형보건의료지원(응급처치인력육성-민간) 93

• 취약계층

- 42 영농도우미 지원 94
- 43 농촌형보건의료지원(농촌왕진버스 사업비-지자체) 96

• 여성농업인

- 4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7
- 45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99
- 46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101
- 47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102
- 48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 103

2-2 농촌개발, 농촌산업 105

• 농촌개발

- 49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지원 107
- 50 농촌휴양·서비스 산업육성(크리에이투어) 109
- 51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111
- 52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113
- 53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농촌) 115
- 5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117
- 55 농촌공간정비 120



56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122
 57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123
 58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124

• **농촌산업**

59 농촌경제활성화 지원기관 125
 60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27
 61 농촌휴양·서비스 산업육성(지역단위농촌관광) 129
 62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민간경상보조) 130
 63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관계인구형성지원) 131
 64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보험가입지원) 133
 65 인증경영체 성장지원 135
 6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37
 67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138
 68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139

2-3 농촌공동체, 환경 141

• **농촌공동체**

69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재능나눔) 143
 70 꾸러미사업지원 145

• **농촌환경**

71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46
 72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사업비-지자체) 147
 73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운영비-민간) 149

• **농촌돌봄**

74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51
 75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53
 76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농촌 돌봄 활동지원) 155

CONTENTS 목차

2-4 지역먹거리	157
• 푸드플랜	
77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지자체보조)	159
2-5 귀농귀촌, 인력육성	161
• 귀농귀촌	
78 귀농귀촌 교육	163
79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165
80 귀농귀촌 실태조사	166
81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167
• 인력육성	
8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169
83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 지원	171
84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스마트팜확산교육지원-현장실습형)	173
85 청년창업농장학금	175
86 농업계대학지원(농업계대학교 실습장 시설 지원)	176
87 농업계대학지원(농업계대학교 교육지원)	178
88 예비농업인교육지원(농업계고교 실습장 시설 지원)	180
89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82
90 영농창업특성화대학	184
91 예비농업인교육지원(미래농업선도고교)	186
92 예비농업인교육지원(농업계고교 교육지원)	188
93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청년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 지원)	190
94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191
9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운영비 지원	192
96 한-뉴 FTA 협력사업(훈련비자, 어학연수 및 장학금 지원)	193
97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195
98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197
99 성장농단계 역량향상 프로그램	199



• 경영체지원

100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200
 101 현장실습지원(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202

식 량

3-1 공동경영체 207

• 공동경영체

102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교육컨설팅) 사업 209
 103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시설장비지원) 사업 210
 104 전략작물산업화(밀 교육컨설팅) 사업 211
 105 전략작물산업화(밀 시설장비지원) 사업 212
 106 전략작물산업화(두류 교육컨설팅) 사업 213
 107 전략작물산업화(두류 사업다각화지원) 사업 215
 108 전략작물산업화(밀 건조·저장시설 사업다각화지원) 사업 217
 109 전략작물산업화(두류 시설장비지원) 사업 219
 110 공동영농확산지원 221

3-2 기반조성 223

• 농촌용수

111 가뭄대비용수개발(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 지원) 225
 112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226
 113 농업용수 수질개선 227
 114 농업용수 수질개선(자치단체자본보조) 228
 115 농업용수 수질조사 229
 116 농촌용수개발 230
 117 용배수 계통도 디지털화 233
 118 지하수 자원관리 234
 119 농업생산기반 건설기준 고도화 235

CONTENTS 목차

• 수리, 배수

120 배수개선(지자체)	236
121 수리시설개보수	238
122 수리시설유지관리	239

• 기반조성

123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40
124 농업가뭄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241

→ 3-3 수매, 가공, 소비 243

• 수매, 가공, 건조

125 국산 콩 가공산업 지원사업	245
--------------------	-----

• 소비촉진(식량)

126 천원의 아침밥	247
127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249
128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251

원예작물, 유통

→ 4-1 생산기반(시설, 장비) 255

• 기반조성, 하우스·온실설치

129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257
130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259
13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260

• 내외부시설장비

132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261
13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262

• 산지조직화

134 산지조직지원(생산유통 통합조직)	263
-----------------------	-----



4-2	채소(노지, 시설)	265
	• 노지채소	
	135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267
	136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69
4-3	과수, 화훼, 특작	271
	• 과수	
	13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73
	138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275
	139 과원규모화	276
	140 과수분야 공동브랜드육성 지원	278
	14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280
	142 과실지정출하 지원사업	281
	143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282
	144 재해대응형과수재배시설구축지원(시범)	284
	• 화훼, 특작	
	145 특용작물시설현대화(인삼)	285
	146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287
	147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289
	148 특용작물계열화사업	291
4-4	유통, 가공 효율화	293
	• 유통, 보관시설	
	14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자치단체)	295
	15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297
	151 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299
	152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시설현대화)	301
	15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303
	154 유통시설현대화	304

CONTENTS 목차

15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05
 15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307
 157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9

• 물류, 마케팅

158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311
 159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313
 160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화훼유통개선) 314
 161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지원 316
 162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318
 16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 320
 164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온라인마케팅역량강화) 321
 165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거래활성화지원) 323
 166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공판장(청과)출하촉진) 324
 167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도매시장출하촉진) 325

4-5 수급안정, 소비촉진 327

• 수급조절

168 산지유통활성화지원(융자) 329
 169 유통협약명령 지원 331
 170 자조금지원 333

• 소비촉진

171 직거래장터 지원 335
 172 직매장 지원 336

축산

5-1 시설·장비지원 341

• 축사시설

173 축사시설개선 343



• **축사부대시설**

174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345
 175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350

• **조사료지원**

17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시설 및 기계장비구입 지원) 351
 17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 생산 지원) 353
 17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 유통 지원) 355

5-2 가축사육, 말산업 357

• **소**

179 종축등록사업지원 359
 180 한우젓소개량 경상지원(자치단체) 360
 181 한우젓소개량 자본지원(자치단체) 361
 182 한우젓소개량지원(민간) 362
 183 한우젓소개량지원(민간자본) 363
 184 축산물수급안정(송아지생산안정) 364
 185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 366

• **가금, 양봉, 기타가축**

186 축사시설개선(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369
 187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자치단체) 371
 188 돼지경제능력검정 지원(민간) 373
 189 돼지능력검정지원(민간자본) 374

5-3 축산환경개선 375

• **환경개선**

190 축산악취개선 377
 19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378
 192 축산환경관리원 운영지원 379

CONTENTS 목차

• 분뇨자원화

193 공동자원화 마을형퇴비저장시설	380
194 공동자원화 개보수	382
195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383
196 공동자원화 바이오연계	384

• 퇴액비활용

197 가축분뇨이용촉진	386
198 자연순환농업활성화	388

→ 5-4 가공, 유통, 수급, 소비 389

• 축산물품질관리

199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391
----------------	-----

• 축산물위생안전

200 축산물HACCP인증관리(축산물HACCP컨설팅지원)	392
201 가축사육제한보상금	393
202 생계 및 소득안정	395

• 축산물유통, 수급관리

203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396
204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계란공판장활성화지원)	398
205 낙농통계관리시스템운영	399
206 오리민간비축	401
207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403
208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405
209 축산물이력제	406
210 축산자조금 운영	408

• 축산물소비촉진

211 축산물수급안정(국산유제품경쟁력강화지원)	409
---------------------------	-----



5-5 가축방역, 위생지원 411

• 방역대응

- 212 축사시설개선(CCTV 등 방역인프라) 413
- 213 가축전염병 소독 지원 415
- 214 말 예방백신 등 지원 416
- 215 방역장비 등 지원(자본) 417
- 216 스마트HACCP지원(현장구축 커스터마이징) 418
- 217 예방약품 등 지원(경상) 419
- 218 지역축협소독차량 교체 지원(민간자본보조) 420
- 219 축산물HACCP운영지원 421
- 220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 422
- 221 살처분등 비용 지원 424

• 동물약품

- 22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융자)(제조시설 신축·개보수) 426
- 223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427

식품

6-1 기반구축 431

• 산업기반

- 224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운영 433
- 225 기능성농식품산업활성화 434
- 226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지자체) 435
- 227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436
- 228 식품기술거래이전지원 437
- 229 식품외식정보분석 438
- 230 국산기능성소재활용지원 439

CONTENTS 목차

6-2 식품안전, 환경, 인증 441

• 식품안전

- 23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443
- 232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445
- 233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447
- 234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449

• 식품인증

- 235 농산물표준규격(우리술 교육훈련 지원사업) 451
- 236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453
- 237 GAP 판로지원 454
- 238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GAP생산여건조성) 455
- 239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지원 456

6-3 식품산업, 외식산업 457

• 식품산업

- 240 김치산업육성(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459
- 241 김치산업육성(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보급) 460
- 242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461
- 243 한국술산업육성(찾아가는양조장) 463
- 244 농산물표준규격(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464
- 245 김치산업육성(김치품평회, 김치페스티벌, 김치의 날, 김치홍보비, 김치자조금, 김치산업실태조사, 김치종균보급) 466
- 246 식품판로지원 467
- 247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469
- 248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471
- 249 식품표준화사업 473
- 250 한국술산업육성(전통주산업진흥) 475



• 외식산업

251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477
 252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479
 253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480

→ 6-4 **식생활, 식품소비** 481

• 식품소비촉진

254 농축산물 할인지원 483
 255 농식품바우처 지원 484
 256 농식품소비기반조성(민간보조)(농축산물소비촉진 식생활교육지원) ··· 486

→ 6-5 **농식품수출** 489

• 농식품수출지원

257 농식품우수기업육성 491
 258 민관합동협의회운영 493
 259 생산기반조성 494
 260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495
 261 신선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496
 262 온라인모바일마케팅 497
 263 외식산업 수출 지원 498
 264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500
 265 판매조직육성 502
 266 해외정보조사·전파 504
 267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506
 268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기자재) 508
 269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시설) 509

• 해외판로

270 검역해소품목 및 전략품목육성 지원 510
 271 뉴미디어마케팅 512

CONTENTS 목차

272	신시장 수요응답형 아젠다 프로젝트	513
273	온라인플랫폼 운영	514
274	우수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515
275	우수농식품 판로개척	517
276	해외 新유통채널 연계 현지시장 진출	519
277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521

농생명산업

7-1 스마트농업 525

• 스마트시설장비

278	권역별현장지원센터(농업농촌교육훈련)	527
279	임대형 스마트팜	529
280	노지스마트농업ICT 융복합확산(스마트기반조성)	531
281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조성	533
282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지원사업(농업)	534

• 스마트팜실증보급

28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535
284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536
285	스마트팜 실증단지	538
286	실증단지 운영 지원(데이터서비스)	540
287	농업AX실증센터구축	541

• 데이터구축및활용

288	ICT융복합확산(농업정보이용활성화)	542
289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544
290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545
291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생태계조성지원	547
292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	548



7-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549

• 종자·묘목

29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551

294 과수 무병묘목(보급종) 생산·공급 지원(무병묘 모수포 조성) 553

295 과수 무병묘목(보급종) 생산·공급 지원(무병화 및 무병묘 검정) 555

296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무병묘목 구입비 지원) 556

297 과수우량묘목(원종)생산 지원 557

298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559

299 디지털육종전환지원 561

300 민간육종가 육성 지원 562

301 원원종 및 원종생산 564

302 종자 구입비 지원 565

303 종자가치 홍보 566

304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567

305 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568

306 첨단정밀육종기반구축 569

• 도시농업

307 도시농업 교육인력양성 지원 570

308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572

7-3 동물복지 573

• 동물복지

309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 575

310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보조) 576

311 동물복지인증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 578

312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자율) 579

313 유실유기동물 관리강화(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581

CONTENTS 목차

• 동물산업

314 One-welfare Valley 조성	583
315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584
316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585
317 수출시장 개척	586
318 시장조사 및 전파	587

• 개식용종식

319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	589
320 개사육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사업	590

→ 7-4 창업, 농산업 인력 591

• 농식품창업

321 농식품벤처육성지원 사업	593
322 농식품기술평가지원	595

• 농산업인력

323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596
--------------------------------	-----

• 농산업지원

324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598
325 농산업체 판로지원	599
326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	600

→ 7-5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601

• 농산업수출

32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603
328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605
329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607
330 GMP 컨설팅 지원	609
331 수출업체 운영지원	611



• 국제개발지원

332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612

333 FAO한국협회 지원사업 613

334 국제통상지원 615

335 국제농업협력(ODA) 617

탄소중립, 기후변화

8-1 친환경농업 621

• 친환경농업

336 유기농업자재지원 623

3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625

338 유기농업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627

339 친환경농산물인증(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628

340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630

341 친환경농산물인증(친환경인증기관 등급제 평가) 631

342 유기식품 생산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633

•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

343 농산물직거래구매자금지원(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635

34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637

8-2 저탄소농축산 639

• 탄소저감

345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641

CONTENTS 목차

임업

346	공공산림관리단	645
347	임업기능인양성	647
348	임산물생산기반조성	649
349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650
350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652
351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	653
35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654
353	임산물 상품화지원 사업	655
354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656
355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	657
356	숲가꾸기	658
357	조림	659
358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660
359	글로벌경쟁력강화	661
360	글로벌기반구축	662
361	글로벌판로개척	663
362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664
363	산림병해충방제	665
364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667
365	양묘시설 현대화(공모)	668
366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669

1



생산기반(공통)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1-1 직불제



1

기본형공익직불

☑ 목 적

-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 사업내용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 법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
-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각각 10%를 감액하여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하나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외 대상**인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

* (기존수혜자)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

※ 상세내용은 농업e지 내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 ☑ '26년 예산 : 2,453,48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26년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의 정보를 활용 일부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신청 안내(1~2월)
- ☑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소농직불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기간 : 3~5월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요건을 자동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9.1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 제출
- ☑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성원우	044-201-2822

2

전략작물직불

☑ 목 적

-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 사업내용

-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울무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밀 100원/㎡, 기타작물 50원/㎡
- 하계작물 : 100~550원/㎡(두류· 가루쌀 200원/㎡, 조사료 550원/㎡, 옥수수·깨 150원/㎡, 수급조절용벼 500원/㎡, 알팔파 250원/㎡, 수수 240원/㎡, 울무 25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6.2.1.~3.31, 하계작물 '26.2.1.~5.31
*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 농가 신청 후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홍현수	044-201-2913

3

친환경농업직불

☑ 목 적

-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1.~금년 10.31.)에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 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 지원 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30ha/농가
 - 지급기한: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시행근거(법령)

- ☑ 세계무역기구 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 사업신청

- ☑ 장소 :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 신청 기간 : 3~4월

☑ 대상자 선정

- ☑ (선정)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한 자로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5월)
- ☑ (확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1.~금년 10.31.)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11월)
 - ①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준수 여부,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일호	044-201-2434

4

친환경축산직불

☑ 목 적

- ☑ 친환경축산 농업경영체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사업내용

- ☑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친환경(유기)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하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로서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고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에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축산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함
 - 동일 농장이나,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가족 등)에도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없다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 960백만원, 유기지속 2,375백만원, 교육·컨설팅 75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공익 직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신청

- ☑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3월)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4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우의양	044-201-2354

5

경관보전직불

☑ 목 적

-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 지원 기준 : (경관, 준경관작물) 국고 50%, 지방비 50%, (준경관초지작물)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 '26년 예산 : 32,850백만원(국비 16,830, 지방비 16,02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농업인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
-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하고, 시·도지사는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작물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을 배정(7월 말)
-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을 배정
- ☑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사업 신청지구에 대해 경관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8월 말)
-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9~10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이진희	044-201-1555

6 농지이양 은퇴직불

☑ 목 적

- ☑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

☑ 사업내용

-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 '25.12월 현재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진행 중(~'26. 1. 21.)

☑ 지원내용 및 예산

- ☑ 만65세이상~만84세 이하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매도 600만원/ha, 임대 480만원/ha)

☑ 시행근거(법령)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사업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www.nongupez.go.kr) 신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김규안	044-201-282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은행	061-338-5912

☑ 목 적

- ☑ FTA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발생한피해분의일정부분을보전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 사업내용

-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직불금 지급 · 추후 선정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금액: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산출기준 : (농업등)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축산업)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 '26년 예산 : 18,000백만원(국비100%)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 **사업신청**

- ☑ 장소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 신청기간 : 추후 별도 통보

☑ **대상자 선정**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 확정, 선정 결과를 신청 농가에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윤희	044-201-1719

생산기반(공통)

1-2 소득안정



☑ 목적

-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사업내용

-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의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70% 국고 지원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 '26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59,065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대상자 선정**

-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김남진	044-201-2840

☑ 목적

-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 사업내용

-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 7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 '26년 예산 : 농기계종합보험 35,971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사업신청**

-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 **대상자 선정**

-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김남진	044-201-2840

☑ **목 적**

-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사업내용**

-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501,741백만원(국비 5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

☑ **사업신청**

- ☑ 가까운 농축협 또는 농협손해보험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임연화	044-201-2832

☑ 목 적

-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업경영정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 '26년 예산 : 119,167백만원(국비 보험료 50% 지원, 자부담 0~50%)
 - *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 지원기준이 달라, 자부담 비율 상이
 -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역농협(축협), 보험 대리점
- ☑ 사업신청방법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김남진	044-201-2840

☑ 목 적

-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 ☑ '26년 예산 : 275,181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 사업신청

- ☑ 장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 대상자 선정

-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김성택	044-201-2837

☑ 목 적

-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보험료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26년 예산: 99,093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재해보험법

☑ 사업신청

- ☑ 해당사항 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사항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임연화	044-201-2832

☑ 목적

-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 사업내용

- ☑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용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 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운용자금(용자) 규모 : 2,946,725백만원
-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각 자금 내용에 따라 시설 또는 개보수 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 (지원조건 등은 자금별 상이)
 - 1. 농축산생산지원(원예축산생산업, 수출및규모화사업,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2. 스마트팜종합자금(스마트팜지원, 수직농장지원, 소규모스마트팜 지원 등)
 - 3. 가공사업 등 지원(농산물가공사업, 꿀녹용가공산업,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 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및 사후관리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
 - 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등

☑ **사업신청**

-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 신청기간 : 연중(세부자금별 자금소진 전까지)

☑ **대상자 선정**

- ☑ 사업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
 - * (대상자 선정 자금: 별도 기관에서 대출대상자 선정)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해당 자금 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등을 통해 선정)
 - ※ 대출대상자 선정·통지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 *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 결정) 대출취급기관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및 지원여부를 결정함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서진(농촌민박)	044-201-1591
	농업금융정책과	방윤미(총괄)	044-201-1759
	스마트농업정책과	양지혜(스마트팜)	044-201-2426
	축산경영과	이현(꿀녹용)	044-201-2335
	식량정책과	한울(쌀가공)	044-201-1820
	전략작물육성팀	한장호(쌀가공)	044-201-1828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기술창업)	044-201-2422
	첨단기자재종자과	홍수빈(농기계)	044-201-1897
		신계완(무기질)	044-201-1893
농촌경제과	김태윤(농촌관광)	044-201-1583	

15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 목적

- ☑ FTA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대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내용

-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
- ☑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 지원자격 및 요건

-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공모 선정과제 사업비
- ☑ 지원 기준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 '26년 예산 : 1,289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

☑ 사업신청

- ☑ 장소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 ☑ 신청시기·방법 : 분기별 공모·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 대상자 선정

-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김윤희	044-201-1719

☑ 목 적

-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로 지원('26년 신규 대출부터 적용)(재해대책 경영자금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 확인방법: 매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에 공지
- ☑ '26년 운용자금(용자) 규모 : 1,200,000백만원
 -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용자로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신청

- ☑ 장소 : 지역 농·축협
-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 대상자 선정

- ☑ 사업 신청 시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홍성욱(재해경영)	044-201-2873
	농업금융정책과	방윤미(농업축산)	044-201-1759

☑ 목적

-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사업내용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郡) 대상 2년간('26~'27년) 시범사업 추진
 - * 대상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시범사업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국비 기준) : 234,075백만원
- ☑ 지원 내용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신안군, 영양군은 월 20만원씩 지급)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신청

-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신청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 관할 읍·면에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면, 읍·면에서 서류·현장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김아림	044-201-1521

18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장 조성

☑ 목적

- ☑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중심 스마트팜 교육체험기회 제공 및 스마트팜 전문경영인 육성

☑ 사업내용

- ☑ 노지환경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노지 스마트팜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

☑ 지원내용 및 예산

- ☑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 기반 조성(1ha 이상)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 '26년 예산 : 국비 4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지자체(시도) 신청

☑ 대상자 선정

- ☑ 평가위원회 평가심의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김상호	044-201-2419

☑ 목적

- ☑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 '26년 운용자금(용자) 규모 : 30,0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농협은행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
-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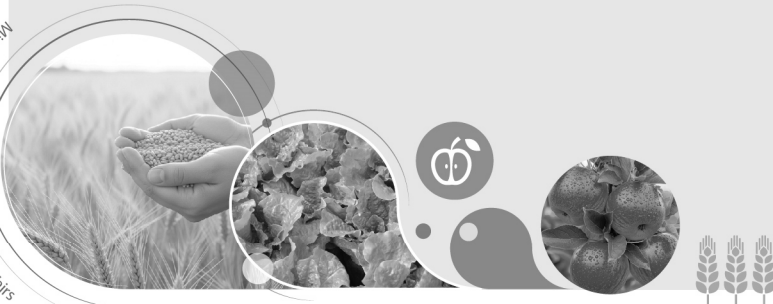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사업 신청 시 농협의 경영평가단 사전평가 및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방윤미	044-201-1759

생산기반(공통)

1-3 농기자재



20 토양개량제 지원

☑ 목적

-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사업내용

-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 (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 '26년 예산(안) : 59,468백만원(세종·제주 계정 포함 예산)

☑ 시행근거(법령)

- ☑ 농지법 제21법

☑ 사업신청

-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는 신청면적, 토양검정에 따른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유혜경	044-201-1898

☑ 목적

-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사업내용

-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 '26년 예산 : 1,5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사업신청

- ☑ 신청장소 : 신청서(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부차지원 실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김용호	044-201-1841

☑ 목 적

-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 실현

☑ 사업내용

- ☑ 노후 경유 농업기계('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미세먼지법 제3조

☑ 사업신청

-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계획 수립에 따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농기계담당	053-803-6522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기계담당	032-440-4366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농기계담당	062-613-3966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농기계담당	042-270-3844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농기계담당	052-229-294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농기계담당	044-300-4334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농기계담당	031-8008-5463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농기계담당	033-249-3718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농기계담당	043-220-3634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농기계담당	041-635-2523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농기계담당	063-280-4632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농기계담당	061-286-6493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농기계담당	054-880-3366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	농기계담당	055-211-6354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농기계담당	064-710-3143

☑ 목 적

- ☑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내용

-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운영비
- ☑ 지원 기준 : 국비 100%(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 '26년 예산 : 262백만원(국비 262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제2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성민	044-861-8776

☑ 목적

-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사업내용

-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및 임대농기계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 (주산지일관기계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지원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 ☑ '26년 예산 : 48,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사업신청

- ☑ 시·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시·군·구는 시·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시·도는 적정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하여 제출

☑ **대상자 선정**

- ☑ 시·군의 사업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시·도에서 사업대상 선정(지특 자율계정)
- ☑ 임대대상 :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 * 임대농기계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김용호	044-201-1841

☑ 목적

- ☑ 농업기계 생산 소요 자재 구입과 농업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기계 적기공급·가격안정 도모, 국내 산업 육성
- ☑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 봉사를 촉진하고,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 예방 및 농업기계 이용률 증진

☑ 사업내용

- ☑ 농업기계 생산지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업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지침 참고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 3,500억원(생산지원 3,300, 보관창고 100, 사후관리 19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2항(자금지원),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 사업신청

- ☑ 용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에 문의

☑ 대상자 선정

- ☑ 용자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용자 시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협은행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59

☑ 목적

- ☑ 농업기계 구입 자금지원으로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 농업인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구입 시 용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 4,500억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자금지원)

☑ 사업신청

- ☑ 농업기계 구입 용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지역농협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지역농협에 문의

☑ 대상자 선정

- ☑ 농업인의 용자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용자 시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협은행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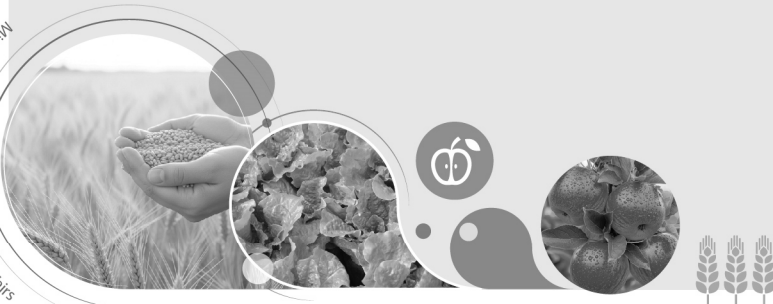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1-4 농지



☑ 목적

-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훼손농지 복구비 포함)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별도 사업안내서 기재)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등

☑ 사업신청

- ☑ 장소
 - 현 장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 온라인 : 농지은행포털(<https://www.fbo.or.kr>)
-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 자격요건 및 매입농지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대상자 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 목 적

-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사업내용

-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 지원 기준
 -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6~11.3만원/m² (지역별 상이),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고정3% 또는 변동요율)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 환매포기농지 : 우선매각 원칙,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임대가 필요할 경우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대 후 매각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 **사업신청**

-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 신청농가의 지원자격 및 매입농지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 목 적

-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지급,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사업내용

-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은퇴직불금 연계 상품: 65세 이상~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

승계형 상품: 지원자격 조건 외 추가로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종신행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통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 수시인출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또는 사망 후 공사에 농지매도를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 (은퇴직불형) (임대) 연금지급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자격 확인 후 가입 가능

- ☑ 월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 '26년 예산 : 276,629백만원(용자 100%)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 사업신청

- ☑ 장 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 신청인의 가입요건 및 담보농지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 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신준호	044-201-1734

☑ 목 적

- ☑ 농지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지자체 농지행정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 농지 관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 농지를 상시 조사·분석하여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농지정책 수립 지원,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및 법률컨설팅을 통해 농지행정 역량 강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 내용·품목
 - (농지상시관리조사) 전국 농지에 대해 취득·소유·이용·전용 현황을 상시조사·분석하여 체계적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활용가능 농지를 조사·발굴하여 농지지원 강화
 -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신규 진입농 및 청년농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자체 교육·법률컨설팅) 농지담당 공무원 대상 농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맞춤형 법률컨설팅 실시
 -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민원인 직접방문 방식을 탈피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대국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농지상시조사분석시스템) 농지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 농지 취득·소유, 이용·전용 등 디지털 기반 농지 종합정보 관리 체계 정립

- (농지은행 제세공과금)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지원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법적 자문기구인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수립 및 중요 농지전용허가·협의 자문

- ☑ 사업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39,308백만원(국비)
- * 민간경상보조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지법」 제31조의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 목 적

-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 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기대

☑ 사업내용

- ☑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 비용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농지은행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경영회생농지매입, 농지연금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당없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 내용·품목 :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경비 등
- ☑ 사업 기준 : 농지은행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관리비(인건비·경비 등) 지원
- ☑ '26년 예산 : 58,812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 목 적

- ☑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홍보

☑ 사업내용

- ☑ 청년농업인 집중 사업홍보, 농지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사업 인지도와 인식을 개선하여 청년농 육성에 기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청년농
- ☑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 내용·품목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영상제작 및 청년농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정책홍보 비용
- ☑ '26년 예산 : 420백만원(국비) * 민간경상보조 100%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손솔아	061-338-5867

☑ 목적

- ☑ 청년농, 중·장년농, 고령농, 경영위기농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 역량 강화
- ☑ 농지은행사업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농지 활용도 제고

☑ 사업내용

- ☑ (농지은행 사이버교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비농 등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농, 중·장년농 등을 대상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함양으로 농업·농촌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향상
- ☑ (환매활성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체계화,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환매 활성화 도모
- ☑ (노후설계컨설팅) 농지연금 사업대상자에게 정책·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고령농가의 원활한 은퇴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지은행 사이버교육) 귀농·귀촌 농업인, 예비농 등
- ☑ (농지이용 및 관리) 청년농, 중·장년농 등
- ☑ (환매활성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가
- ☑ (노후설계컨설팅) 고령농, 은퇴예정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315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및식품기본법 제24조, 제26조
- ☑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 **사업신청**

- ☑ (농지이용 및 관리) 연중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신청
※ 교육시기는 상반기 청년후계농 인터넷 카페, 농지은행포털에 별도공지
- ☑ (환매활성화, 노후설계컨설팅) 거주지 인근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 후 신청
※ 교육시기 및 모집방법 등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개별 안내

☑ **대상자 선정**

- ☑ 농어촌공사에서 청년후계농 및 농지은행사업 대상자 등 교육신청대상자 모집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 목 적

-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농지의 운영·관리,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복구로 안정적 영농활동 기여

☑ 사업내용

- ☑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용·경영회생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증복구가 필요한 농지에 토지복토, 농지평탄화,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매입농지 운영·관리 및 생산성 유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3,234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100%(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사업비의 0.2%)
- ☑ 주요내용 : 훼손농지의 복구, 농어촌공사 소유농지 관리 등
- ☑ 지원범위 및 자금 사용 용도
- 토지복토, 농지 평탄화, 잡목제거, 배수로 정비, 경계복구 등 기타정비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경환	044-201-1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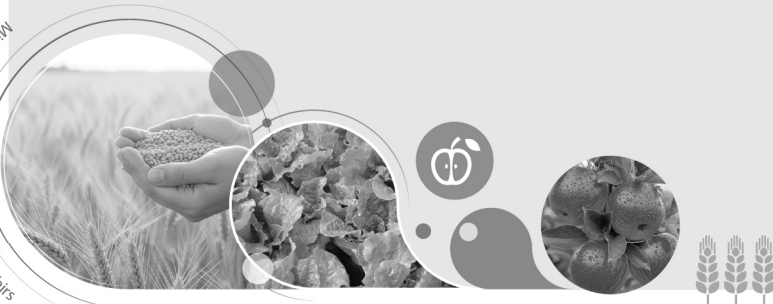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생산기반(공통)

1-5 농촌인력, 일자리



☑ 목 적

-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 사업내용

-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비와 개·보수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물 사업부지가 확보(소유권, 지상권 등)된 지자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대상지 내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조성비를 포함한 시설 건축비 또는 개·보수비

* 부지매입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항,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제2항,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사업신청

- ☑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정진	044-201-1722

☑ 목 적

-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 ☑ 농촌인력증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형 인력증개센터 사업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 1) 독거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구직자) 교통·운송비, 숙박비, 식비, 교육비, 보험료 등
 -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 지원기준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농촌형) 189개소*×70~9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

-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11월)
-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전년도 11~12월)
- ☑ 선정 결과를 시·도,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정진	044-201-1722

☑ 목 적

-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 ☑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필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관리·체류지원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증개* 추진
- * 1) 독거노인, 장애인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 지원기준 :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110개소p×90~14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 사업신청

-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1~12월)
- ☑ 선정 결과를 시·도, 시·군에 통보(전년도 11~12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정진	044-201-1722

2



농촌, 공동체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2-1 농촌복지, 여성농업인



38

농촌정보육서비스지원(농번기돌봄지원-지자체)

☑ 목 적

- ☑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사업신청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9~10월

-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보육기관 등) * 전년도 9~10월

-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관계기관에 홍보
-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대상자 선정

가. 서면실사(희망재단) * 전년도 10월

- ☑ 희망재단은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0월

-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내용에 대한 심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신규 지원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서류 및 희망재단의 서면실사 결과 토대로 심의

다.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이상원	044-201-1797

☑ 목 적

-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사업내용

-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시설비 지원
-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아이돌봄지원

1)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지원받으려는 경우

-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 농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주택단지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어린이집 우선 선발
- ☑ (규모) 전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지원가능
-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2)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는 경우

-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상 신청·접수 기간 내 심의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연도 내에 제출하되, 제출 전까지는 보조금 집행 제한
-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찾아가는 돌봄교실

-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
-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지원내용 및 예산

☐ 농촌아이돌봄지원

-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설계용역비 제외)
-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찾아가는 돌봄교실

-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 예산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60% 이내로 제한
 - 지역여건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범위가 넓거나 틈새보육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가능
 - ※ 시·도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여러 시·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업기관 간 최대 20%까지 조정 가능
 -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사업신청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9~10월

-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 희망재단과 시·도,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9~10월

-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표[붙임5] 등과 “농촌아이 돌봄지원 사업” 선발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를 시·도에 제출

☑ 대상자 선정

가. 서면실사(희망재단) * 전년도 10월

- ☑ 희망재단은 계속지원 시설 및 개보수 신청시설에 대해 서면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0월

-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내용에 대한 심의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신설 한정), 지자체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정

다.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 희망재단) * 전년도 11월

- ☑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과를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 희망재단은 이를 검토 후 농식품부에 보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이상원	044-201-1797

40 농촌형교통모델

☑ 목 적

-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내용

-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제5호 및 제2항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 사업신청

- ☑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신청기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참조

☑ 대상자 선정

- ☑ 군(郡)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후 해당 군(郡)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정승재	044-201-1553

41 농촌형보건의료지원(응급처치인력육성-민간)

☑ 목적

- ☑ 농촌 지역에 화재·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인력 육성 지원

☑ 사업내용

- ☑ 응급처치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농촌주민, 농촌마을 대표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촌 응급처치 인력육성 교육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90%, 자부담 10%
- ☑ '26년 예산 : 162백만원(국비 146, 자부담 16)

☑ 시행근거(법령)

- ☑ 국정과제 : 70-1.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소화, 고령화된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확충)

☑ 사업신청

- ☑ 한국농어촌공사로 교육 신청

☑ 대상자 선정

- ☑ 응급처치 교육 신청자를 교육 대상으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진호	044-201-1528
		이아름	044-201-1576

☑ 목 적

-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내용

-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 농업인의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①~③에 해당될 때에도 지원 가능(2026년 기준 2016.1.1.이후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비율 : 국비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 **사업신청**

-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하며, 자녀로 인한 영농도우미 신청일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소희	044-201-1575
		이현경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준휘	02-2080-5423

☑ **목 적**

- ☑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 **사업내용**

-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구강관리, 검안,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개소당 최대 3,600만원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제54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사업신청**

-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도 및 시·군의 사업 신청(개소별)에 따라 의료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소희	044-201-1575
		이현경	044-201-1574

4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목적

-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사업내용

-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여성농업인 51~80세
-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26년1월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 '26년 예산 : 9,640백만원
 - 검진비 8,6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관리비 1,000백만원 : 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 **사업신청**

- ☑ 신청 : 사업대상인 만51-80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26년은 짝수년 출생만 해당)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및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이상원	044-201-1797

45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목 적

-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 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 지원 기준: 국비 100%
- ☑ '26년 예산 : 71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사업신청

- ☑ 장소 :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
- ☑ 신청기간 : 3~4월, 6~7월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문채원	044-201-1798

46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 목적

- ☑ 농촌특화형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 기반마련, 농촌사회 성평등 인식확산

☑ 사업내용

- ☑ 농업·농촌 분야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활동가, 농촌 관련 연구자 및 성평등 강사 등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 지원 기준: 국고 100%

☑ 시행근거(법령)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 사업신청

- ☑ 해당없음('26년의 경우 신규 전문강사 위촉과정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으며, '25년 위촉평가과정 탈락자에 한하여 신규 위촉과정 진행)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26년의 경우 신규 전문강사 위촉과정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으며, '25년 위촉평가과정 탈락자에 한하여 신규 위촉과정 진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문채원	044-201-1798

☑ 목적

-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정보전달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효율성제고, 여성농업인 농작업여건을 개선하여 노동부담 경감 및 영농능률 향상

☑ 사업내용

- ☑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 부처·지자체별 여성정책개요 및 신청·활용방안 소개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운영기관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장비교육운영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등
- ☑ 교육대상 :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6년 예산: 2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등

☑ 사업신청

-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및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교육 운영기관을 공모 예정

☑ 대상자 선정

- ☑ 교육운영기관 선정 후 마을별 방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정봉재	044-201-1793

48

여성농업인역량강화교육(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

☑ 목 적

-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 사업내용

- ☉ 청년여성의 '농촌정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운영기관 : 청년여성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농촌지역 기관단체 등
- ☉ 교육대상 : 농업·농촌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농촌 정착에 관심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여성 100여명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6년 예산: 175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등

☑ 사업신청

- ☉ 교육운영기관 :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 대상자 선정

- ☉ 교육생 모집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정봉재	044-201-1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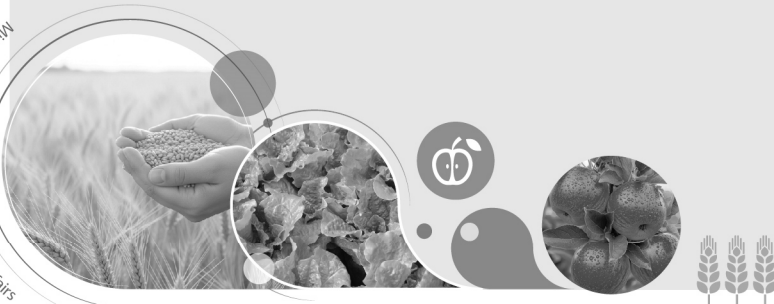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촌, 공동체

2-2 농촌개발, 농촌산업



☑ 목적

-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1,425백만원
-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액 : 1년차 140백만원, 2년차 650백만원, 3년차 635백만원
- ☑ '26년 예산 : 790백만원(국비 553, 지방비 237)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
- ☑ 농어촌정비법 제5조

☑ 사업신청

-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이진희	044-201-1555

☑ 목 적

-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행사를 테마로 기존 농촌 관광상품을 새롭게 콘텐츠화하고 지속적인 여행수요 창출로 농촌관광경영체의 자생력 제고

☑ 사업내용

- ☑ (민간협업) 주민 주도로 육성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예술가·여행사 등과 협업하고,
 - *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6차산업지원센터, 관광두레 등
- (테마상품) 그간 개발된 지역단위 또는 소규모 체류형 여행상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 * 나홀로 여행, 가족 여행, 친구 및 연인과의 여행 등 소규모, 배움, 창의적인 관광으로 전환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관광경영체
 -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농촌민박, 관광농원, 6차산업인증업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관광기업·예술가·여행사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개소당 250백만원 지원(20개소)
- ☑ '26년 예산 : 3,28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촌관광경영체, 농촌관광협의체 등
- ☑ 사업신청방법 : 공모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시·군→시·도)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서진	044-201-1591

☑ 목 적

-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시행근거(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80조, 제81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 **사업신청**

-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 **대상자 선정**

- ☑ 시·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이은진	044-201-1548

☑ 목 적

-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시행근거(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80조, 제81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 **사업신청**

-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 **대상자 선정**

- ☑ 시·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이은진	044-201-1548

☑ 목 적

-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시행근거(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80조, 제81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 **사업신청**

-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 **대상자 선정**

- ☑ 시·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이은진	044-201-1548

☑ 목적

-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 사업내용

-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군

☑ 지원내용 및 예산

-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각호 1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10호 가목 및 사목
- ☑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내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 「농어촌정비법」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사업신청

- ☑ 시장·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절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4.12월)

☑ 대상자 선정

-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인 부부를 의미
 -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 준용
- ☑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만 40세 미만 관내 청년층과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자 포함 가능
- ☑ 입주 대상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것을 권고
 - ① 만 40세 미만 귀농인(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 자녀 양육 가구 우선), ② 만 40세 미만 귀농인(관외출신,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던 비농업 종사자가 영농에 종사하게 된 경우), ③ 만 40세 미만 귀촌인*, ④ 관내 청년층, ⑤ 만 40세 미만이면서 자녀를 1명이상 양육 중인 가정, ⑥ 만 50세 미만 귀농·귀촌인

*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지사근무, 순환보직 등 해당지역 일시적 거주를 위한 귀촌(동→읍·면)인은 선발 지양

- 가구 구성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자,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23년 : 약 3억4천만원), 자동차 가액 5,000만원 이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최형규	044-201-1550

☑ 목적

-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 사업내용

-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 ☑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 시행근거(법령)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제39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106조제2항 준용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공문)으로 공모신청

☑ **대상자 선정**

- ☑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정승재	044-201-1553

☑ 목적

- ☑ 청년 취·창업, 주거·워케이션 공간, 생활인구 체류 공간 등으로 빈집 재생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성공사례 확산

☑ 사업내용

-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장기 체류형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빈집 리모델링,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50%, 민간* 20%
* 상생협력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26년 예산 : 825백만원(국비 248, 지방비 412, 민간 165)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정비법

☑ 사업신청

- ☑ 시장·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시·군 지역 내 빈집이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6.2월)

☑ 대상자 선정

- ☑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최형규	044-201-1550

☑ 목적

- ☑ 도시민의 다양한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통해 지역의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소규모 체류공간, 여가·(영농)체험 프로그램, 관광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체류형 복합단지 기반 조성 및 시설 건축비 등
-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 450백만원, 3개소 1년차 사업비)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내지 제63조, 제68조

☑ 사업신청

- ☑ 광역·기초지자체로 사업 신청 일정 및 방법 별도 통지

☑ 대상자 선정

- ☑ 시·도 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이은진	044-201-1548

☑ 목적

- ☑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 매매 동의 빈집 관리, 정보 고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부동산 관련 조직이 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 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포함한 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촌 빈집 실태조사비, 거래활성화 활동비
-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고50%, 지방비50% (운영관리) 국비 100%
- ☑ '26년 예산 : 1,940백만원(국비 1,030, 지방비 910)
 - 실태조사 360백만원, 거래활성화 67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

☑ 사업신청

-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빈집현황,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보배	044-201-1543

☑ 목 적

-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담기구로 농어촌 자원개발원을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 육성·지원('17~)
- ☑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농어촌공사 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04~)

☑ 사업내용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판로·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센터 관리, 정책 및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 관리·분석 등을 지원
- ☑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서비스·안전·품질향상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지원
-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 '26년 예산 : 3,526백만원(국비 3,526)

☑ 시행근거(법령)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식품부
- ☑ 사업신청방법 : 법령에의해 지정

☑ **대상자 선정**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한지원	044-201-1585

☑ 목 적

-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 사업내용

-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희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장·군수가 “유희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희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유희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군이 발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및 기준 : 유희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 '26년 예산 : 4,540백만원(국비 2,270 지방비 2,27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9조의2, 제48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농어촌정비법

☑ 사업신청

- ☑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 전년도 4월까지)
 -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희시설 및 활용·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도는 적정성 검토
 - * 시·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전년도 3월)

☑ 대상자 선정

- ☑ 시·군에서 시·도로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시·도는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시·군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황보현	044-201-1557

☑ 목적

- ☑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선정하여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 지역 고유 농촌자원과 일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개발·운영, 조직 및 네트워크 정비·운영,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운영경비 등
-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1,190백만원(국비 595, 지방비 595)

☑ 시행근거(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촌관광경영체 및 지자체
- ☑ 사업신청방법 : 공모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시·군→시·도)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태운	044-201-1583

☑ 목적

-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확대 등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활력 및 농외소득 증진 도모

☑ 사업내용

- ☑ 농촌관광 자원개발, 정보제공 지원, 외국인·도시민 유치확대, 농촌관계인구 형성지원, 농어촌민박서비스 품질제고 교육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농촌관광사업등급 및 평가,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도농교류지원센터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등급평가,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등
- ☑ '26년 예산 : 7,39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추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태운	044-201-1583

☑ 목적

- ☑ 향후 농촌을 방문하거나 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계인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 (농촌 워케이션) 농촌형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활동비 지원
* ('25년도) 10개소: 홍천, 강릉, 남원, 정읍, 상주, 영천, 이천, 곡성, 남해, 공주
- ☑ (농촌 일손여행) 농촌 일손돕기와 농촌관광상품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자에게 체험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근로자, 청년기업 및 일반기업·단체, 대학생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워케이션 활동비
- ☑ 지원 조건 : 국고 50~100%, 자부담 50~0%(사업관리비는 국비 100 지원)
- ☑ 사업 방식 : 운영 전문기관 사업 위탁
- ☑ '26년 예산 : 390백만원(농촌 워케이션 200, 농촌 일손여행 190)

☑ 시행근거(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어촌공사
- ☑ 사업신청방법 : 운영 전문기관에서 워케이션 참여기업체(개인) 보조금 집행

☑ 대상자 선정

- ☑ (농촌 위케이션) 기업 및 개인이 웰촌 등 플랫폼을 통해 상품 확인 후 해당 업체에 직접 예약 및 결제, 참가신청서 작성
- ☑ (농촌 일손여행) 다양한 매체(온라인, 학교 협조, SNS등)를 통해 개인이 참가 신청, 운영 전문기관에서 참가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태윤	044-201-1583

☑ 목 적

- ☑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보험료, 운영비
 - (보험료)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의 연간보험료
 - (운영비) 보험가입 지원사업 홍보 및 단체계약을 위한 업무위탁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
 -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지방비 부담 가능)
 - (지원한도) 보험료는 마을당 체험안전·화재보험 각 100만원 이내, 운영비는 보험가입금액의 5%* 이내
- * 보험가입률에 따라 도별 보험운영비 차등 지원(최저 3.0% ~ 최대 5.0%)

☑ 시행근거(법령)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사업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 신청 방법

- (신청사업자) 마을협의회 정관 등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 보험가입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체험활동 추진현황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정증서 등)는 지자체에서 취합

☑ 대상자 선정

- ☑ (시·도) 사업 신청 마을에 대해 예산범위 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선정기준(우선순위 고려조건 등)으로 사업대상 마을사업자 선정

- ☑ (시·군·구) 이전의 보험가입 기간종료 1개월 전, 사업대상 마을 선정, 보험위탁 단체와 보험사간 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우선순위 고려조건 예시(RUCOS 자료 등 활용)〉

- 농촌관광 등급결정 결과, 현재일 기준 등급이 유효한 마을
- 체험활동(방문객 등)이 활발한 마을
- 안전·위생관련 교육이수 실적이 많은 마을
- 기타 지자체 고려사항 포함

* 안전·위생 등이 불량하여 사고 발생 등이 있었던 마을사업자는 후순위 부여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태윤	044-201-1583

☑ 목 적

-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 전용 판매관(안테나숍) 운영 및 판촉전 개최 등
- ☑ 지원 기준 : 지자체경상보조
- ☑ '26년 예산 : 3,830백만원
* 자부담 별도

☑ 시행근거(법령)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장 소 :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11개소)
- ☑ 신청기간 : 수시(시·도별 상이)

☑ 대상자 선정

-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 대상자는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한지원	044-201-1585

☑ 목적

-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사업내용

- ☑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 주체간 연계·협력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구 지정요건) 부존자원의 집적도·집약도, 기 조성된 2·3차 인프라 여건,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등을 구비한 곳
- ☑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 구성
- ☑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등 관련기관, 협회 등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운영조직) 구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지구당 4년간 30억원(총 4개소)
- ☑ 지원 기준 : 국비50%, 지방비·자부담50%

☑ 시행근거(법령)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이승철	044-201-1594

☑ 목적

- ☑ 선도기업 중심의 농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제조·가공-유통 등 전후방 산업간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사업내용

- ☑ 지역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후방산업 기업 간 집단화·공동화·협업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창업지원·네트워킹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 내 민간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자체(시·군)
* 선도기업 1개소 및 참여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개소당 4년간 40억원
* 1년차 10%, 2년차 30%, 3년차 40%, 4년차 20%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 사업신청

- ☑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신청기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참조

☑ 대상자 선정

- ☑ 군(郡)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및 선정 후 해당 군(郡) 및 농림축산식품부로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이승철	044-201-1594

☑ 목적

-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선도모델을 발굴, 확산하여 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내용

- ☑ 농촌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아이디어 모집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한 선도모델 확산,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창업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개소당 1억원)
-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재해석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 및 상금 수여
- ☑ (농촌산업 혁신지원) 농촌혁신 창업가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 및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450백만원
-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225백만원
- ☑ (농촌산업 혁신 지원) 300백만원
- ☑ '26년 예산 : 975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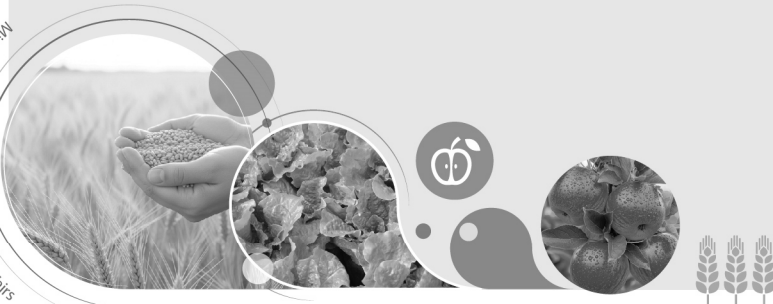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발표 평가 등)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한지원	044-201-1585

농촌, 공동체

2-3 농촌공동체, 환경



☑ 목 적

- ☑ 고령화 및 인구감소, 소득격차 등으로 활력이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 개인·기관/기업·단체가 가진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 재능나눔 단체가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 비용 : 소모성 직접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운영비 (활동에 필요한 교육, 회의 등 총사업비의 5%이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기업체 등 활동 참여희망 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공모사업]

- 일반단체 : 농촌재능나눔 활동의 핵심조직으로 고유 재능을 보유한 민간(단체)의 참여 독려를 통해 농촌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
- 지역단체 : 지역 내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및 노인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계 활동 추진
- 상시단체 : 수해 및 태풍피해 지원, 농한기활동 등 수요자 상시 맞춤형 재능활동 체계 구축

[협약사업]

-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 대학생 사회봉사 전문기관인 한국대학사회봉사 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 및 대학 봉사동아리가 보유한 다양한 재능 활용

- ✔ 지원 기준 : 국고 90~100%, 자부담 0~10%
 - (일반단체) 단체별 최대 20백만 원 한도
 - (지역단체) 단체별 최대 30백만 원 한도
 - (상시단체) 단체별 최대 20백만 원 한도
- ✔ '26년 예산 : 1,873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사업신청방법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를 통해 공모신청

✔ 대상자 선정

- ✔ 농촌맞춤형봉사활동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윤언정	044-201-1579

☑ 목 적

- ☑ 마을공동체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유형 확대

☑ 사업내용

-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제품 기획 컨설팅 및 직거래 활성화 마케팅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8개소 × 18백만원 × 100%)
- ☑ '26년 예산 : 164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공고 방법 : 각 지자체 및 aT 홈페이지 등
-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별도 표시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혜빈	044-201-2297

☑ 목적

-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 사업내용

-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마을(행정리)
 -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신청 가능(다만, 선정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마을만 선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1개소당 국비 16.5억원 내외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39조

☑ 사업신청

- ☑ 시·군·구가 사업 전년도 3월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사업 전년도 6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최형규	044-201-1550

☑ 목적

-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 '26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사업신청**

-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동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 집수리 가구 : 봉사단체가 집수리 신청 가구 현장실사 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봉사활동 계획서를 전문기관의 검토 용역 후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정
- ☑ 봉사단체 : 선정기준에 따라 재단에서 봉사단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최형규	044-201-1550

☑ 목 적

-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 '26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사업신청**

-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동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 집수리 가구 : 봉사단체가 집수리 신청 가구 현장실사 후 봉사활동 계획서제출
→ 봉사활동 계획서를 전문기관의 검토 용역 후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정
- ☑ 봉사단체 : 선정기준에 따라 재단에서 봉사단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김보배	044-201-1543

74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목적

-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사업내용

-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0,350원) 지원('26년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초과: 50,350원 정액
-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사업신청**

-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자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정아	044-201-1573

75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목 적

- ☉ 농촌·준농어촌 거주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6,650원) 지원('26년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액 380,920원이상~528,970원 미만 : 정액지원(건강보험료 380,920원의 28%)
 - 건강보험료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3조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사업신청

-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정아	044-201-1573

☑ 목적

-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업내용

-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거점농장) 전담 인력 인건비,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신규 개소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및 자문, 모니터링, 권역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농업 신규모델 발굴, 고향사랑기부금·민간 ESG 등 재원 발굴, 정책사업 연계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79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개소당 총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0백만원
- ☑ '26년 예산 : 10,110백만원(국비 7,077, 지방비 3,033)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10~12월중)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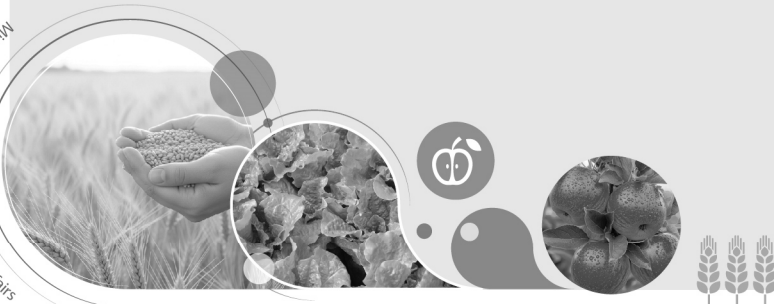
-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지자체)·현장심사(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거점농장)를 거쳐 최종 선정(농식품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정아	044-201-1573
		최혜림	044-201-1572

농촌, 공동체

2-4 지역먹거리



☑ 목 적

- ☑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제로 공공형 조직 운영

☑ 사업내용

-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안전·물류·배송·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수립중 포함*)하여 추진 중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사업기간 1년차('26년)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25년말)

☞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6,000백만원(국비 2,400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 (2개년 사업)
- ☑ 지원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 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운영비 제외)
 - * 1년차 :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 '26년 예산 : 6,0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3,60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식품기본법」 제23조의3,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제14조·제15조·제1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

☑ 사업신청

-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공모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지
- ☑ 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신규공모 없음

☑ 대상자 선정

- ☑ 공모·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항목 : 사업추진 여건, 경영능력 및 운영전략, 부지 및 건축·시설 여건, 설치 및 운영자금 활용, 의무이행계획, 가치실현 등 6개 항목 8개 기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용	044-201-2295

농촌, 공동체

2-5 귀농귀촌, 인력육성



78 귀농귀촌 교육

☑ 목적

-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 영농기술, 창업교육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 (귀농귀촌 교육)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숙박·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기관)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가능한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제외)
- ☑ (교육생) 귀농귀촌 희망자(청년귀농 장기교육은 만 40세 미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국비 70~90%, 교육생 자부담 10~30%)
- ☑ '26년 예산(안) : 6,082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농정원에서 선정한 교육기관
- ☑ 사업신청방법: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 신청

* (교육기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 (교육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기관별 신청

대상자 선정

- ☑ (교육기관) 교육기관 공모·선정 / (교육생) 교육기관별 선정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은총	044-201-1540

☑ **목 적**

- ☑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 **사업내용**

-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정책, 주거·농지, 일자리 등 관련 정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당없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안) : 1,940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은총	044-201-1540

☑ **목 적**

- ☑ 귀농귀촌 실태 상세조사를 통한 통계 보완 및 정책 참고자료 활용

☑ **사업내용**

- ☑ (조사기관) 조사 전문기관(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선정)
- ☑ (조사방식) 직접방문조사
- ☑ (조사대상)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각 3,000가구
- ☑ (표본설계) 귀농어·귀촌인 통계(6월 발표, 통계청 합동) DB 활용,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조사표본 설계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당없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안) : 450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은총	044-201-1540

81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 목적

- ☑ 귀농귀촌 관련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귀농귀촌 실행 지원

☑ 사업내용

-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챗봇 등 상담센터 상시 운영
 - 주요 박람회, 방문교육 등 활용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 중앙-지자체 통합 상담시스템 고도화, 전용시스템 확대 운영
 - '그린대로'와 상담시스템 이력 통합관리 및 상담 DB 공유
- ☑ 그린대로 AI 챗봇 DB 및 표준 FAQ 등 상담지식 관리
 - 챗봇 미식별 질의답변 작성·관리, 표준 FAQ 및 챗봇 상담DB 업데이트 등
- ☑ 통합상담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종합상담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예비)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귀농귀촌 정보·상담 제공 및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운영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안) : 700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대상자 선정

해당없음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은총	044-201-1540

☑ 목적

-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사업내용

-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세
- ☑ 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 '26년 2차 신청이 가능한 자: '23.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등
- ☑ 지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시행근거(법령)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 **사업신청**

- ☑ 장 소 : 농업e지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수연	044-201-1597

☑ 목적

- ☑ 우리 대학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영어 정착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영어 기반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영농·영어 창업 및 기반 없는 졸업생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과제
- ☑ 농어업 현장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어업 영향력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인 자 또는 당해 연도 졸업 예정자(2월)
* 기 수혜자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가 자본 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제외), 농기계구입, 영농·영어를 위한 각종 농어업 시설 구축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개소당 국고 70%(26백만원), 자부담 30%(11백만원)
- ☑ 2026년 예산 : 187백만원(국비 131, 자부담 56)

☑ 시행근거(법령)

- ☑ 한국농수산대학교설치법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신청

- ☑ 한국농수산대학교 누리집 및 e-나라도움 공고 신청서를 다운 받아 e-나라도움 신청

☑ 신청기간 :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학과	윤치훈	063-238-9613

☑ 목적

- ☑ 교육생 유형(수준·품목 등)에 맞춘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 사업내용

- ☑ 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스마트팜 분야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 교육생 유형에 따라 기본교육·심화교육·선진지 견학·학습조직 운영
- ☑ 교육과정에 대한 품목별 교육성과 측정 및 성과공유, 교육생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스마트팜 확산 촉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팜 농가 및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교육수준별로 자가진단 후 교육 신청 권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일부
- ☑ 지원기준
 - (직접교육비) 국고 70%, 교육생 자부담 30%
-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사업신청

-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 이메일(추후 공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정보 : 교육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대상자 선정

- ☑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
 - * 1개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신청 미달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가능
 - 필수 신청 정보 누락 여부 검토
 - 최종 선정 결과는 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교육비 납부 등 관련 내용 안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 적**

- ☑ 졸업 후 농식품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식품 분야 우수 후계인력 육성

☑ **사업내용**

-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대학 3학년 이상, 만 40세 미만,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인삶의질법

☑ **사업신청**

-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 검증(대학교, 희망재단), 서류 및 정성심사(심사팀)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윤언정	044-201-1579

☑ 목적

- ☑ 실험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확충, 개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실습교육 강화

☑ 사업내용

- ☑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농업계 대학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계 대학교(공모)
- ☑ 농대* 32개교(전국농업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
 - * 단, '24·'25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제한 학교 제외
 - '24년 실습장 지원학교 중 선정심사일(현장평가일) 기준 미완공 시 '26년 사업 참여 불가
 - '25년 실습장 지원학교 중 선정심사일(현장평가일) 기준 착공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학교는 '26년 사업 참여 불가
 - 축사 신축의 경우 인·허가 주체의 사전검토 결과 및 인근 주민의견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시설·장비 지원
- ☑ 지원 기준 : (시설비) 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한도액 : 학교당 600백만원이내 지원
- ☑ 사업예산('26~'27:2년차 사업) : '26년 1,386백만원, '27년 714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26년 사업 신청(학교) 및 지원 대상을 농식품부로 추천
- ☑ 신청기간 : 2025.9.15.~2025.10.1.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단계별 심사(서면평가→현장평가→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농고·농대별 지원학교 선정 및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 사업내용

- ☑ 현장실습, 진로탐색, 취·창업 동아리, 국외연수,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융복합 과정 운영 학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융복합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 직접교육비 : 현장실습비, 강사수당, 강사여비, 숙박비, 식비 등
 - 간접교육비 : 인건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교육홍보비, 회의비 등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2,389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농정원으로부터 학교에 안내된 공문을 근거로 농정원에 개산급 교부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25.1~12월)
 -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

☑ 대상자 선정

- ☑ 신규 지원학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예산 확정

* 평가기준에 적합한 학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및 재평가 가능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적

- ☑ 농업계 학교에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 전문농업인 육성
- ☑ 실험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확충, 개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실습교육 강화

☑ 사업내용

- ☑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고* 73개교(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고등학교)
 - '24년 실습장 지원학교 중 선정심사일(현장평가일) 기준 미완공 시 '26년 사업 참여 불가
 - '25년 실습장 지원학교 중 선정심사일(현장평가일) 기준 착공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학교는 '26년 사업 참여 불가
 - 축사 신축의 경우 인·허가 주체의 사전검토 결과 및 인근 주민의견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품목 : 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시설·장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학교당 500백만원이내 지원)
- ☑ 사업예산('26~'27년, 2년차 사업) : '26년 1,500백만원, '27년 1,5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25년 사업 신청(학교) 및 지원 대상을 농식품부로 추천
- ☑ 신청기간 : 2025.9.15. ~ 2025.10.1.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단계별 심사(서면평가→현장평가→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학교 선정 및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 사업내용

- ☑ 농업마이스터 과정, 청년농CEO 과정 운영,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2년 4학기 32학점(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
 - (청년농CEO 과정) 1년 2학기 12학점 이상(180시간 이상)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1년 2학기 100시간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마이스터 과정)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졸업자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6년 예산 : 5,125백만원
 -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은 별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되, 국외연수비는 국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사업신청

- ☑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과정별 모집 정원에 따라 교육생 선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 등 자격을 충족하는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졸업자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대상자 선정

- ☑ 서류(60점, 품목경력 증빙서류, 자기학습계획서 등), 면접(40점, 품목 전문성, 교육 참여의지 등), 가산점(10점 이내, 관련 공인자격증 및 표창장 등)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교육생)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기존 농대에 현장실습이 강화된 영농창업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농 육성

☑ 사업내용

- ☑ 영농창업 특별과정 운영, 교육운영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등 영농창업 특성화대학 선정·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자 : 농업계 대학(공모)
 - *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국립·공립·사립대학 중 농업과 관련한 학과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
 - * (기선정) 연암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경상대
- ☑ 지원대상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1~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습 학년제 등 현장실습 지원
 -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특성화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1,006.6백만원 지원
 - * (직접교육비) 교재개발비, 교육과정 운영비(강사비, 실습재료비 등)
 - * (간접교육비) 교육운영지원비(회의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인건비(사업참여인력의 급여 및 수당 등)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6,99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사업 신청학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학교 선정('16년), 2개교 추가 선정('24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한 체계적 농업교육을 통해 영농창업역량을 갖춘 농업 전문 인력 육성

☑ 사업내용

- ☑ 정규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운영지원비에 소요되는 경비 등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 선정·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계 고등학교(공모)
 - * (기선정) 흥천농고,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 ☑ 미래농업선도고교 : 흥천농고,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 ☑ 미래농업선도고교 1~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실습 학년제 등 현장실습 지원
 -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특성화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 * (직접교육비) 교육과정 개편비(교육과정 개발, 교재개발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강사비, 실습재료비, 숙박비, 식비, 시설 및 차량임차비 등), 학생 및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 * (간접교육비) 교육운영지원비(신입생 모집 홍보, 성과관리, 산학협력체운영, 회의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인건비(사업참여인력의 급여 및 수당 등)
 - (농정원) 참여 학생들의 영농창업 준비도 점검,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미래농고 2~3학년 국외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3,51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사업 신청학교는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학교 선정('16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농고·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

☑ 사업내용

- ☑ 현장실습, 진로탐색, 취·창업 동아리, 국외연수, 산학협력 학교지원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계열 학과가 개설된 학교(고교)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계 고등학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고 산업연계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 직접교육비 : 현장실습비, 강사수당, 강사여비, 숙박비, 식비 등
 - 간접교육비 : 인건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교육홍보비, 회의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1,53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정원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농정원 서류접수시스템) 제출 또는 방문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 신규 지원학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예산 확정

* 평가기준에 적합한 학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및 재평가 가능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 사업내용

-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분야 탐색·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 농촌에서의 삶·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여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시행근거(법령)

-

☑ 사업신청

- ☑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통해 교육운영기관 별 프로그램 신청

☑ 대상자 선정

- ☑ 자격여건 검증 및 지원 필요성 등 고려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정봉재	044-201-1793

☑ 목 적

-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체험마을 운영진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 (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 교육기관, 현장체험, 멘토-멘티) 체험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교육 및 현장체험, 마을간 멘토-멘티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받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교육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체험휴양마을 운영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 및 사무장 등 대상 전문교육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사업신청방법 : 공문 요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태운	044-201-1583

☑ 목적

-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양, 개량, 경영, 유통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과 운영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3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축산관련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의 교육 기획 및 운영을 지원
- ☑ 지원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17호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 사육업)
-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임성호	044-201-2326

☑ 목 적

- ☑ 한-뉴 농업 협력을 토대로 농업·농촌 인적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증진

☑ 사업내용

- ☑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연수, 농축산계열 전문가 훈련

☑ 지원자격 및 요건

- ☑ (청소년 어학연수) 농촌지역 농업인 중·고등학생 자녀(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 ☑ (농축산업 훈련연수) 농축산계열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후 2년 이내)
- ☑ (농축산업 전문가 훈련, 연구협력) 검역탐지견 및 국경검역시스템, 질병위험 분석, 산림연구 전문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한-뉴 FTA 농업협력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6년 예산 : 1,29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한·뉴 FTA 협력 챕터 14.3.2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농정원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농정원 서류접수시스템) 제출 또는 방문신청서 제출
- ☑ 프로그램별 모집 자격에 따라 연수생 선정
- (청소년 어학연수) 거주지, 농업인 자녀 유무, 어학요건 등 (1차)서류심사 및 (2차)추첨전형 실시

- (농축산업 훈련연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 (1차)서류평가, (2차)면접평가 실시
- (농축산업 전문가 훈련, 연구협력)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

-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교육생)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적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사업내용

-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 2021년 및 그 이전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선정자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대출 실행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 '25년 선정자 '26.12.31까지, '26년 선정자 '27.12.31까지 대출 가능
 -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영농경영 등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 * 농식품부 정책방향,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재무회계 등), 미래농업트렌드, 유통마케팅, 서면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 ** 우수후계농 교육 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은 농정원에서 주관하되 자금 집행 및 기타 처리사항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추진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 **사업신청**

-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자격요건 및 조건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시·군·구에 추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수연	044-201-1597

☑ 목 적

-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사업내용

-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49세
-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17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미해당자 신청 불가)
-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대출실행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 '26년 선정자는 '30.12.31까지 대출 가능
- ☑ 대출한도 : 1세대 당 최대 5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결정됨-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 대출금리 : 연리 1.5%(고정금리)
- ☑ 사용용도
 - ☑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 시행근거(법령)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 사업신청

- ☑ 농업e지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후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수연	044-201-1597

☑ 목적

- ☑ 품목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 및 선도농 양성·활용 교육을 통해 성장단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지원

☑ 사업내용

- ☑ 역량진단센터를 통한 수준 진단 후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청년농업인, 농업인, 미래농(멘토링 한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임차비, 교재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 '26년 예산 : 4,032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업삶의질법

☑ 사업신청

- ☑ 교육신청 : 농업교육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 ☑ 교육생이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신청, 역량진단 후 품목 및 역량수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과 매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 목 적

-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 창업 및 정착, 법인 설립,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컨설팅 유형(품목, 투자형태)에 따라 컨설팅 팀(경영+기술)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맞춰 종합 컨설팅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법인경영체

(공통)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및 예산**

-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70%)를 지원
 - 지원단가 : 개소당 9,200천원(국고 70%, 자부담 30%)
 - * 국고지원 6,440천원 + 경영체 자부담 2,760천원
 - 지원횟수 : 총 12회 컨설팅 추진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농정원)에 이메일 신청
- ☑ (신청기간) 컨설턴트 ~25.11.25.(완료), 컨설팅 수요자 ~25.11.19.(완료)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개별 또는 법인 경영체를 모집 후, 서면평가, 사전진단, 최종선발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허서영	044-201-1534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 농업인력지원실	김슬기	044-861-8836

☑ 목적

- ☑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농고·농대생, 후계농 등 청년농업인과 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창업 역량강화와 소득증대

☑ 사업내용

- ☑ 선도농업인의 품목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전달하는 현장실습교육 운영
 -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현장실습교육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 WPL 119개소(학교·기관 10, 농업인 109)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26개소
- ☑ 자격요건 : 농업인 실습교육장,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 * (농업인 실습교육장) 품목재배기술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강의역량과 교육장을 갖춘 농가 단위의 실습장
 - * (학교·기관 실습교육장) 농업계 대학교, 농업 분야 교육기관 등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상시 교육운영이 가능한 실습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 현장실습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등
 - (간접교육비) 교육기관운영경비(일반관리비), 실습보조강사비, 임차비, 교재비, 원고료, 보험료
- ☑ '26년 예산 : 3,729백만원(WPL 2,626 및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103)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사업신청

- ☑ 현장실습교육 및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교육 사업 수요 조사 및 교육 배정(~'26.10.)

☑ 대상자 선정

- ☑ 추가지정 공고를 통해 신규 실습장 지정
 - '26년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농업인)
 - 실습교육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이론·실습교육 인프라를 구비 또는 활용가능한 자(농업인, 학교·기관)
 - 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후발농업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의 전수 의지와 실습교육 역량을 갖춘 자(농업인, 학교·기관)
- ☑ (교육대상) 실습장별 교육생 모집
 - 농업인,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농고교사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고은정	044-201-153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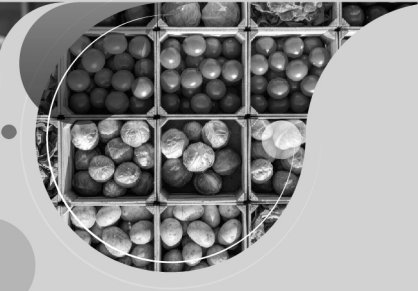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3



식량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량

3-1 공동경영체



☑ 목적

- ☑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확립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30ha 이상 가루쌀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①농협조직, ②농업법인, ③농업기술센터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③ '25년 시범단지
참여한 단지중 법인설립일이 1년 미만인 곳만 지원 가능('27년부터는 참여 불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규모 : 140개소 내외, 4,200백만원(국비 2,100백만원)
-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3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 ☑ 신청(~11.30) → 지자체 심사(~12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26.1월)

☑ 대상자 선정

- ☑ 평가지표에 따른 서면평가(정량) 실시(~'26.1.), 아그릭스 등 시스템 자료와 제출 서류 확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도연	044-201-2918

☑ 목적

- ☑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가루쌀 공동영농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30ha 이상 가루쌀 공동영농을 할 수 있는 ①농협조직 또는 ②농업법인
 - * ①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②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업규모 : 4개소 내외, 2,0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 ☑ 지원기준 : 경영체 당 50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 ☑ 신청(~11.30) → 지자체 심사(~12월) →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26.1월)

☑ 대상자 선정

- ☑ 시설장비 지원자 중 정량평가 상위 1.5배 내외 대상 발표평가 실시
- ☑ 정량평가 70% + 정성평가 30%로 최종 사업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도연	044-201-2918

☑ 목적

-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사업내용

-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 '25 예산 :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203항, 제42조 및 제43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민정	044-201-2914

☑ 목적

-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사업내용

-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세조파 파종기, 범용콤바인, 건조기 등 시설·장비 지원
-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총 3회까지 지원(10년 내)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제 4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경영체 역량, 지원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민정	044-201-2914

☑ 목적

-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 (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 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 제3항, 제42조 및 제4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박혜란	044-201-2916

☑ 목적

-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 는 가공시설 및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가능(1~2년차)
 - * 단년차 사업 : 기존 시설 개보수할 경우 단년 사업 가능
 - ** 다년차 사업 : 신규 설치시 1년차에는 설계도 인허가, 교육컨설팅, 계약 등 지원, 2년차에는 건축 시설 및 장비, 홍보,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제 4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박혜란	044-201-2916

☑ 목적

- ☑ 국산 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블렌딩(교반)이 가능한 전용시설 지원

☑ 사업내용

-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블렌딩시설(RPC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 지원자격 및 요건

- ☑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법인 등
 -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 200ha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자체 취급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 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블렌딩 시설은 기존시설(RPC사일로)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한 경영체에 우선 지원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건조·저장·블렌딩(교반)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및 시설 등
-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건조·저장·블렌딩(교반)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8억 이내
 - 시설개보수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2억 이내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제 4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세부 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 부지선정, 자금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산·학·연 전문심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김민정	044-201-2914

☑ 목적

-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수료 중 및 완료한 전략작물산업화경영체(단, 농식품부 인정하는 교육 이수*시 포함)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주체별 차등 지원

* 농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22~'23년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 교육 과정(자체적인 교육은 인정 안함)

- ① 논타작물 단지 : 소규모의 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최대 3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 ② 들녘경영체 : 대규모 들녘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8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운영주체(논 타작물 단지, 들녘경영체)에 따른 공동영농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가능하며, 운영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제 4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

- ☑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박혜란	044-201-2916

110 공동영농확산지원

☑ 목 적

- ☑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 사업내용

- ☑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자 요건)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지원품목 모든 품목)
 -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총사업비 :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1년차 8억, 2년차 12억원)
 - * 공동영농 면적·참여 농가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조정) 가능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부율 : 1년차 40%, 2년차 6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 공모(신청) 기간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대상자 선정

- ☑ 서면·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세부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허서영	044-201-153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이 실	061-338-5874

식량

3-2 기반조성



☑ 목 적

- ☑ 가뭄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용수개발 및 급수대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뭄피해 예방 및 최소화

☑ 사업내용

- ☑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 급수(저류), 저수지 준설(시·군 관리) 등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였거나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

☑ 지원내용 및 예산

- ☑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 급수(저류), 저수지 준설 등 가뭄을 대비한 용수개발 사업비
- ☑ 지원 기준 : 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 ☑ 지자체에서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 후 지원 요청(수시)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에서 제출한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지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심영건	044-201-1863

☑ 목적

- ☑ 수리시설을 현장 수동조작에서 원격 전동조작으로 개선하여 용수 절약, 재해대응력 강화 및 농업인 서비스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에 원격단말장치 (RemoteTerminalUnit), CCTV, 수위계 등 원격 계측/제어 장치 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주요 수리시설에 원격 계측/제어 장치 설치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2,0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시·도)

☑ 대상자 선정

- ☑ 기 선정된 지구에 대한 계속사업비 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임정근	044-201-1881

☑ 목적

-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시·군관리 호소 수질개선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

☑ 대상자 선정

-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임정근	044-201-1881

☑ 목적

-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와 호내 오염물질* 제거
 - * 호내 고사(枯死)되어 수질에 영향을 주는 식생, 장기간 퇴적된 유기오니층, 용존성 유기물 및 영양염류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지원
- ☑ 지원 기준 : 공사관리 호소 국비 100%/지자체관리 호소 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

-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임정근	044-201-1881

☑ 목적

- ☑ 농업용 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하고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사업내용

-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 년 7회 수질조사 실시
 - 현장조사 : 투명도, 수온, pH, DO, EC 등 5개 항목
 - 실내분석 : TOC, COD, SS, T-N, T-P, Chl-a, Cu, Pb, Cd, As, Hg, CN, Cr6+, Cl- 등 14개 항목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업용수 수질 조사비 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시행계획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수립(상반기)

☑ 대상자 선정

- ☑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저수지가 대상으로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임정근	044-201-1881

☑ 목적

- ☑ 가뭄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 논에 재배하는 벼 외의 시설원예작물(채소, 특작, 화훼 등)에 양질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논외의 범용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먹거리 안정성 확보 도모
 -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 사업내용

-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급수 등에 필요한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 수원공(양수장 등), 정수시설, 관수로 등을 설치하여 논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로 하는 사계절 안정적인 양질의 맞춤형 용수 공급체계 구축
 -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다만,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은 관할 지자체(시·군)로 함
- ☑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가뭄상습지역으로서, 수리시설을 설치(개선)하여 농촌용수 확보공급이 가능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편의 영농에 기여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
 -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재배단지로서 농업용수의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경우 농업생산성 향상 및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사업효과 달성이 가능한 지역

* 논범용화농촌용수공급체계구축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 213,445백만원(국비)
- ☑ 기본조사비, 사업비(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 국고 100%
- ☑ 사업비(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신청

- ☑ 기본조사 대상지
 - (시·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시행여건 및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 조사 결과 제출
- ☑ 신규착수(세부설계) 대상지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한 지구에 대하여 농업진흥 지역 비율, 주민호응도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지 제출
- ☑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시행자) 시행중인 지구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도에 제출
 - (시·도) 사업시행자의 예산 신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예산요구
- ☑ 신청시기·방법 : 매년 상반기, 공문시행

☑ 대상자 선정

- ☑ 사업의 타당성, 사업제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구 선정
- ☑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도의 예정지 조사 결과 및 시·도 수리불안전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 신규착수(세부설계)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 수리불안전담 규모, 시·도가 제출한 사업우선순위, 주민호응도,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도 예산요구와 지구별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김윤희	044-201-1859

☑ 목적

- ☑ 용배수로 및 수혜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효율적인 용수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 용배수로 좌표 및 상세제원(연장·폭·높이), 수로별 수혜구역 면적 및 토지이용 현황(논·밭·과수·시설) 조사
- ☑ 조사 결과 DB화 및 용배수 계통도 작성
- ☑ 저수지별 농업용수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용·배수 현황 조사 및데이터 디지털화, 농업용수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지원

☑ 사업신청

-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

-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임정근	044-201-1881

118 지하수 자원관리

☑ 목적

- ☑ 농업용수 주요 수자원인 농촌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도모

☑ 사업내용

- ☑ 농촌용수구역별(457개) 지하수 관련 행정·현장 조사 및 농촌지하수 관측망(1,371개소) 설치·운영
- ☑ 도서·해안지역에 해수침투 관측망(388개소) 설치·운영
- ☑ 지하수 함양사업 대상지 기본조사(2개소) 및 세부설계(2개소)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촌 지하수 조사 및 관측망 설치·운영 지원

☑ 사업신청

- ☑ 예산 편성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심영건	044-201-1863

☑ 목 적

- ☑ 기후·영농환경 변화 및 재해 증가에 대비하고 최신 규정 및 기준 등을 반영한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고도화로 효율적인 건설기준 마련

☑ 사업내용

-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개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설계기준(2종), 표준시방서(2종)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정(안) 작성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1,4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 ☑ 농어촌정비법 제18조2

☑ 사업신청

-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

- ☑ 해당사항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최수웅	044-201-1856

☑ 목적

-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 사업내용

-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정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26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
-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수혜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시행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643,622백만원

☑ 사업신청

- ☑ 기본조사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ha 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 제출
 - * 사업시행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 ☑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시행중인 지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연도 소요 예산을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지구당 50ha 이상 사업예정지 조사 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 ☑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강혁수	044-201-1875

☑ 목적

- ☑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

☑ 사업내용

- ☑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저수지 준설, 정밀안전진단, 양수장 시설개선, 배수장 성능개선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 지원내용 및 예산

- ☑ 수리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108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조 및 제21조 등

☑ 사업신청

- ☑ 시·도가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현지답사 후 시·도에 예정지 조사 신청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정현수	044-201-1877

☑ 목적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를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 사업내용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476천ha에 대한 농업용수 급수 및 배수관리
-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물 14천여개소, 용·배수로 10만km 유지관리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고 100%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 14천여 개소, 수로 10만km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업신청

- ☑ 한국농어촌공사

☑ 대상자 선정

- ☑ 해당사항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김경선	044-201-1873

☑ 목 적

- ☑ 노후화 등으로 지진·태풍·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

☑ 사업내용

-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등 교체·보수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관리중인 방조제로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및 품목 : 방조제개보수사업비
- ☑ 지원기준 : 국가관리방조제 국고 100%, 지방관리방조제 국고 50%
- ☑ '26년 예산 : 76,538백만원(국비)

☑ 사업신청

-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후 개보수 대상지구 신청
- ☑ 신청기간 : 연말(~'25.11.30까지)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항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도등이 최우선
- ☑ 안전진단결과 및 지구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선정('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김선웅	044-201-1882

☑ 목적

- ☑ 강수량·저수율 등 가뭄상황 모니터링, 저수율 전망 등을 통해 가뭄 우려 사전 탐지 및 가뭄 피해 최소화

☑ 사업내용

- ☑ (가뭄 예·경보)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분석을 통해 범부처 가뭄 예·경보제 (매월) 운영 지원
- ☑ (가뭄 정보조사) 가뭄 우려 지역 현장조사, 중점관리 등을 통해 가뭄상황판단 및 대책 지원
- ☑ (가뭄 평가·분석) 가뭄상황에 대한 대응평가 등 사후분석을 통한 개선점 분석·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가뭄 예·경보, 정보조사, 평가·분석 지원

☑ 사업신청

- ☑ 예산 편성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심영건	044-201-1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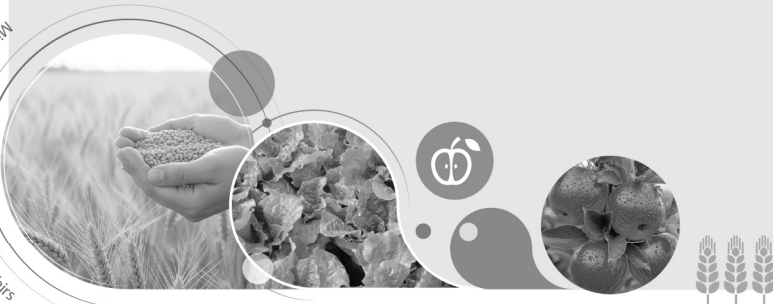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량

3-3 수매, 가공, 소비



☑ 목적

- ☑ 국산 콩 산업화 성공사례의 확산을 통해 국산 콩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금률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 권역별 대규모 저장시설 및 산업화와 연계할 수 있는 가공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권역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한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원료공급단지 1개소, 가공설비 1개소
- ☑ 지원 기간(연부율) : 3년(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
 - (원료공급단지) 2개소(신규 1년차, 계속 1년차)×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가공시설) 2개소(신규 1년차, 계속 1년차)×10,000백만원×국비40%×지방비40×자부담20%×연부율 40%
- ☑ '26년 예산 : 16,000백만원 [국비 40%(신규 1년차 3,200, 계속 1년차 3,200), 지방비 40%(신규 1년차 3,200, 계속 1년차 3,200), 자부담 20%(신규 1년차 1,600, 계속 1년차 1,600)]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39조 제3항, 제42조 및 제4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의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 **사업신청**

- ☑ 장 소 : 지방자치단체
- ☑ 신청기간 : '25년 10월말~

☑ **대상자 선정**

- ☑ 공동영농 활성화 및 발전 정도, 생산 이후 소비, 판로 확보 정도, 비축 및 가공 계획이 충실한 들녘경영체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박혜란 주무관	044-201-2916

☑ 목적

- ☑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대학원생)에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지원

* 2023년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24년 발표): (6~11세) 16.6%, (12~18세) 45.5%, (19~29) 57.2, (30~49) 41.3, (50~64) 20.8, (65~) 6.3

☑ 사업내용

- ☑ 학교 및 정부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1인(1식) 기준 : 정부 보조금 2천원 + 학생 부담금 1천원 + 대학교 부담금(자율)

* 학교재원 외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 4년제 대학, 전문대 등 전국 모든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식수인원(학생) 1식당 2천원 지원, 지원금은 쌀 및 쌀 가공식품 구입비, 인건비 등 지원

* 1인 2천원 내 포함사항 : 쌀·쌀 가공품 구입비, 인건비·기타 식재료비 등 포함

☑ 시행근거(법령)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사업신청

- ☑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 대학에서 신청한 식수는 가급적 모두 반영하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식수 가·감 적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한장호	044-201-1828

☑ 목적

- ☑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을 지원하여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여 점심 외식비 부담 경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 및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 * 총예산 60억원(사업비 50억원, 운영비 10억원)
- ☑ '26년 예산 : 6,000백만원
 - [사업비(5,000): 5만명×4만원×5개월×50%(국비보조율)]
 - [운영비(1,000):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700)+행정비용(100)+사업성과분석 및 연구용역비용(200)×100%(국비보조율)]

☑ 시행근거(법령)

- ☑ 외식산업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 지원)

☑ **사업신청**

- ☑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지급

☑ **대상자 선정**

-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박소영	044-201-2158

☑ 목적

- ☑ 산업단지 근로자에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하여 밥값 부담완화,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 유도

☑ 사업내용

- ☑ 정부 및 기업 부담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

* (예시) 1식 5,000원 기준: 정부 2천원 + 지자체 1천원 + 기업 1천원 + 근로자 1천원

* 기업부담금, 지자체 지원, 기부금 등 추가 예산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국산 밀·콩을 활용한 식단 포함 가능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단체형) 등의 조직 또는 개별 입주기업(개별형)

- ①입주기업 협의회 등의 조직을 통한 산단 내 다수 기업 지원(단체형)
- ②개별기업 지원(개별형) 2가지 유형 모두 지원하되, 선정 시 단체형 우대

* (단체형) 공동식당 등을 통해 다수 기업에 조식을 제공하는 법인 형태의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조직, (개별형) 조식 운영,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가능한 개별 입주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1식당 천원의 아침밥 지원 금액 기준(예시): 정부 2천원 + 근로자 1천원 + 기업 부담금(지자체 등 외부 지원금 추가 가능) 쌀 메뉴 개발·운영(쌀·쌀가공품 구입비 등), 식재료비, 조리인력 및 운영보조 인건비 등 지원 범위 내 탄력적으로 운영

- 쌀 또는 쌀 가공품을 활용한 식단 필수, 국산 쌀을 활용한 간편식(김밥, 컵밥, 덮밥, 쌀 시리얼 등)도 가능

- 국산 쌀이 들어가지 않은 메뉴(밀가루 빵, 면, 일반 시리얼, 샐러드, 샌드위치* 등)는 지원 불가

* 쌀 빵, 국산 밀·콩 등을 활용한 샌드위치(간편식)은 허용

☑ 시행근거(법령)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사업신청

- ☑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 대상자 선정

- ☑ 중소기업 유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유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식단의 다양성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한장호	044-201-1828

4

원예작물,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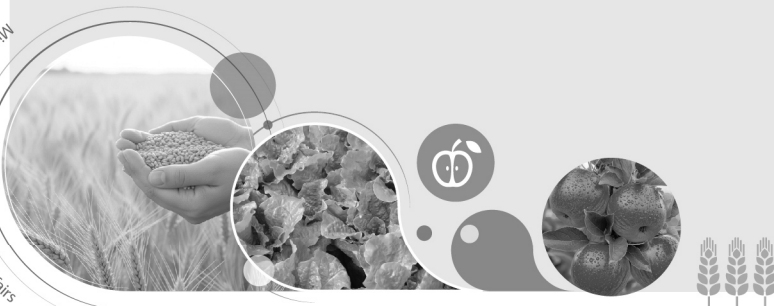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원예작물,유통

4-1 생산기반(시설,장비)



☑ 목적

- ☑ 시설원에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 사업내용

- ☑ 시설원에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 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 지원 기준: 국비 25%, 지방비 30%, 용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15,47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장원웅	044-201-2259

☑ 목적

-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사업내용

-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주요 설비·장비 포함)
-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이내, 자부담 20%
-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2,4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6~7월경(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장원웅	044-201-2259

☑ 목 적

-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 사업내용

-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노후 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
-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4,83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
-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장원웅	044-201-2259

☑ 목적

-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 지원자격 및 요건

-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구
-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용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국비 12,819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별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장원웅	044-201-2259

☑ 목적

- ☑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 사업내용

- ☑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집단화된 원예단지(온실면적 4ha 이상)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
-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4,018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사업신청

-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 신청
-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공고문 참고)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장원웅	044-201-2259

☑ 목적

-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 사업내용

-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18개 사업
-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 사업신청

-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산자)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 각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①생산유통 통합조직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우선·우대 지원하는 사업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아	044-201-2224

원예작물,유통

4-2 채소(노지,시설)



☑ 목적

-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사업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33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차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 '26년 예산 : 9,000백만원(국비 1,800, 융자(이차보전) 300, 지방비 2,700, 자부담 4,200)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 신청시기·방법 : '25.3월('26년 예비사업대상자), '25.9월('26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시·군)
-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전은태	044-201-2237

☑ 목적

- ☑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사업내용

- ☑ 발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규모 : 사업시행주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 지원형태(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 지원 세부내용
 - ① 역량강화 : 생산농가 교육·컨설팅,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 ② 생산관리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공동육묘장 등
- ③ 상품성 제고 : 저장·유통,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 사업신청

- ☑ 사업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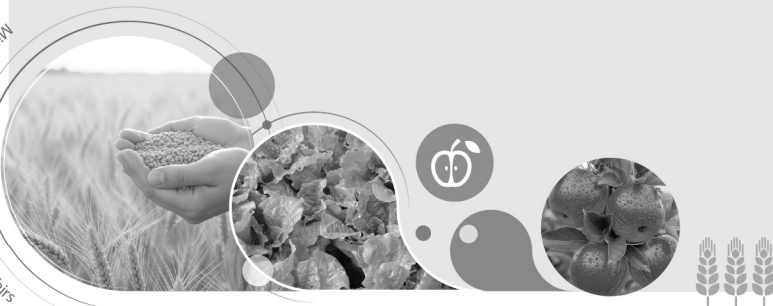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등 전문가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김대영	044-201-2235

원예작물,유통

4-3 과수, 화훼, 특작



☑ 목적

-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26년 예산 : 155,626백만원(국비 31,125, 지방비 46,688, 자부담 77,813)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 신청기간 : '26. 1월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주체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추천하고, 지방정부는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 완료 및 신청농가에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 적

- ☑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은 200백만원
- ☑ '26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300, 자부담 500)

☑ 시행근거(법령)

-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 사업신청

- ☑ 장소 : 해당 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 신청기간 : '25.3월(전년도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적

- ☑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용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등
-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과원매매 : 제곱미터(m²)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 ☑ '26년 예산 : 29,928백만원(국고(용자) 27,277, 국고(관리) 2,651)

☑ 시행근거(법령)

-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 사업신청

- ☑ 장소 : 과원매도신청서, 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적

- ☑ 수입 개방 등에 대응하여 우수한 국산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과수 생산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 (전국공동브랜드)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 (지역공동브랜드)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국공동브랜드)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 (지역공동브랜드)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 ☑ 지원기준 : (전국) 국비 70%, 자부담 30% (지역)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역농협 등 사업시행주체
-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제출)

☑ 대상자 선정

- ☑ 증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시·군 예비심사, 시·도 자체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실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민구	044-201-2253

☑ 목적

-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 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 사업내용

-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조사설계비 : 547천원/ha(국고 100%)
- ☑ 기반조성사업비 : 46,991천원/ha(국고 80%, 지방비 20)
- ☑ '26년 예산 : 23,857백만원(국비 19,148, 지방비 4,708)

☑ 시행근거(법령)

- ☑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업등의 경쟁력 제고)

☑ 사업신청

- ☑ 장소 : 신청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 신청기간 : '25.3월(전년도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 현지조사 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142 과실지정출하 지원사업

☑ 목적

- ☑ 과실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유도 및 조기 안정화 도모
- ☑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 사업내용

-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 ☑ 일정 수준의 원물매입·저장·선별·출하 능력을 갖춘 과수 취급 APC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저장, 선별·출하, 출하장려금, 감모에 따른 원물손실보전, 가격차보전 등 소요비용 지원
* 원물매입은 APC의 운용가능 자금(계약재배 사업비, 산지유통종합자금 등)을 우선 활용, 부족시 계약재배 자금을 APC에 무이자 융자
- ☑ '26년 예산 : 25,332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 사업신청

-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문의

☑ 대상자 선정

- ☑ 거점APC 또는 일반APC의 원물매입·저장·선별·출하 등 사업능력·의지, 배정량 등을 확인 후 약정 체결(농협경제지주)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윤근영	044-201-2262

☑ 목적

-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과실의 품종을 다변화하여 생육시기, 수확기를 분산하고, 재해예방시설, ICT 시설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은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생산기반 정비, 신품종 전환, 공동농기계, 교육·마케팅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집단화된 과실생산 단지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반조성 및 과원정비: 총사업비 230백만원/ha(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그 중, 이차보전 30%))(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은 필요 시 지방비로 대체 가능

- ☑ 교육·홍보: 100백만원/20ha(국비 70%, 지방비 50%)(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 '26년 예산: 신규 16개소(개소당 20ha 기준) (국비 6,960, 지방비 6,768, 자부담 8,832(그 중, 이차보전 6,624))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 신청기간 : '25.12월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주체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하고, 지자체는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 완료 및 신청농가에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적

- ☑ 과수 재배 기술 전환 및 저온·일소 등 내재해형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이상 기상 빈발에 따른 과수 수급 불안 해소

☑ 사업내용

- ☑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시설재배 모델 및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과수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하우스 시설, 지주, 관·배수 시설, 신품종 묘목 식재, 재해예방시설,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 등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지방정부)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 대상자 선정

- ☑ 서면 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선정
 - 지방정부의 지방비 확보 계획과 실집행률 등을 반영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농업경영체·법인·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적

-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25년도에 직파했거나 20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향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 2026년 예산 : 3,970백만원(국비 1,110, 지방비 1,650, 용자(이차보전) 120, 자부담 1,110)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윤미현	044-201-2239
스마트농산과	스마트농산과	권은미	043-220-364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김혜경	031-8008-5457
식량원예과	식량원예과	박선희	061-286-6492
스마트농업혁신과	스마트농업혁신과	박지예	054-880-3384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	이 랑	033-249-2623

146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사업

☑ 목 적

-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 지원 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용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 용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팡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 '26년 예산 : 6,360백만원(국비 1,272, 지방비 1,908, 용자규모 180, 자부담 등 3,000)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신청

-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윤지원	044-201-2242

147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

☑ 목적

- ☑ 고품질 절화류 생산유도 및 유통과정의 신선도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 ☑ 절화류 습식유통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화훼포장망, 습식용기 전용 절화 결속기, 절화 포장용 필름

☑ 지원자격 및 요건

-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에서 공판장으로 출하물량에 한함
 - * 지원제외 대상자: 화훼(절화, 백합, 자생란) 의무자조금 거출금 미납자(의무거출금 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절화류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부가세 사업자부담)
- ☑ '26년 사업비 : 6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신청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로 「습식유통사업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증빙서류 : 습식유통사업 지원신청서(출하계획서 및 습식지원품목 기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정관, 통장사본, 절화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 대상자 선정

- ☑ aT화훼센터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저온습식유통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 사업자 모집결과 국고보조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습식유통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의결
 - 직전년도 습식출하실적, 소비자 선호도 등 기준으로 심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화훼센터	절화부	조지원	02-570-1840
		김은수	02-570-1835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이형석	044-201-2261

148 특용작물계열화사업

☑ 목 적

- ☑ 특용작물 재배·수매·가공·유통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사업내용

- ☑ 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융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 지원조건
 - 계약재배 :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 수매자금 :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및 예산

- ☑ 2026년 예산: 이차보전(융자규모) 600백만원, 자부담 150백만원
- ☑ 지원내용
 - 계약재배 단가 :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수매단체(업체)와 계약대상자(농가)가 협의하여 결정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사업신청

-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제출(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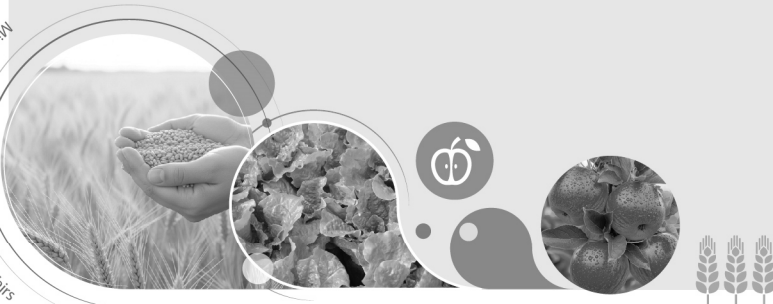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박수현	044-201-2240
		윤지원	044-201-2242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윤훈노	02-2079-8247
		김주연	02-2079-8226

원예작물,유통

4-4 유통, 가공 효율화



☑ 목적

-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사업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거점 스마트 APC 구축 및 광역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자체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APC 구축 계획을 포함

- ☑ 사업부지 미확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규모**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8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 시설의 경우 최소 5~80억원 내외

☑ 지원내용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등 AP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26년 예산 : 국고 12,000백만원(국고 36,000, 지방비 36,000, 자부담 48,000)

☑ **사업신청**

- ☑ 장소 : APC 위치한 시·군·구에 예비신청서, 기본요건 점검표를 첨부하여 신청
- ☑ 신청기간 : 예비신청(전년도 2월), 본 신청(전년도 7월)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 등 전문가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아	044-201-2224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사업신청

-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 대상자 선정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9월)
 -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10월)
 -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10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황현정	044-201-2294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 사업)

☑ **사업신청**

-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자체(시·군·구)
- ☑ 신청 기간 : '26년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시

☑ **대상자 선정**

- ☑ 선정 방법 : 지자체 심의위원회(시·도)에서 최종 추천한 사업대상자 중 공개발표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함재현	044-201-2233

☑ 목 적

- ☑ 인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사업내용

-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 보완시설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시설
 -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농업인 주주) 10명 이상인 법인
- ☑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원내용 및 예산

1) 지원내용

-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2) 기준사업비

-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 단, 보완시설은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비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3) 2026년 예산 : 6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신청

- ☑ 시장·군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전년도)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윤미현	044-201-2239

☑ **목 적**

- ☑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사업내용**

- ☑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 보완, 전처리·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한도 : 700백만원 내외/개소
-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26년 예산 : 3,700백만원(국비 1,110, 지방비 1,110, 자부담 1,480)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신청조직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 신청기간 : '25.3월(전년도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도지사가 자체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농식품부 주관으로 세부 심사·평가 실시 통해 최종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박정호	044-201-2255

☑ 목적

-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과 가공처리장,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의 신축
- ☑ 재원조달방식
 - 중앙도매시장 : 국비보조 30%, 용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지방도매시장 : 국비보조 20%, 용자 5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 용자 : (금리)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 '26년 예산 : 15,2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 사업신청방법 : 공모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 가능성, 지자체의지 및 시설현대화와 연계한개선 방안 등 선정기준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수미	044-201-2229

☑ 목적

-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인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 ☑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 '26년 용자한도: 150,0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사업신청

- ☑ 신청 접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신청시기 : 상·하반기 2회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미정)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미정)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박은총	044-201-1540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조성아	02-2080-758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목적

-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상물일치 거래,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해결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 효율성 제고 등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혁신 실현

☑ 사업내용

- ☑ 시·공간의 및 거래 주체의 제약이 없는 전국 단위 공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시장운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시장참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의 농수산물 판매사 또는 구매사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시장운영(1,178백만원) : 사무실 및 상황실 운영, 관련 위원회 운영, 플랫폼 이용자 교육 등 사업 운영 지원
- ☑ 바우처(18,562백만원) : 이용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판촉, 물류 등 개별 항목을 바우처로 지원
- ☑ 공동집하장(5,850백만원) : 공동집하장 조성/운영 및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
 - * 공동집하장 설치 및 운영 : 3,900백만원 = 1,300백만원 × 3개소 × 국비 100% /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 : 1,950백만원
- ☑ 산지팸투어(800백만원) : 비대면 도매거래 확대를 위한 구매자 산지방문 운영
- ☑ 산지컨설팅(400백만원) : 온라인도매시장 활용전략 등 이용자 맞춤형 컨설팅

- ✔ CS센터, 연구/홍보비(580백만원) : 시장 이용자 지원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수행
- ✔ 통합플랫폼 구축지원(3,017백만원) : 플랫폼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운영

✔ 시행근거(법령)

-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023-19호)
* 근거 법령 제정 중

✔ 사업신청

- ✔ 신청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at.or.kr)
* 온라인도매시장 홈페이지(kafb2b.at.or.kr) 통해 공고, 담당자 메일 등 활용하여 접수
* 각 세부 지원사업별 모집 시기, 신청 기한 등 상이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 절차는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요망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 이용자 대상 지원사업(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 시스템 개발 등 영역은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유영민 주무관	044-201-221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이규호 차장	061-931-0536
농림축산식품부		김종빈 차장(aT)	044-201-2227

☑ 목적

- ☞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 사업내용

-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단,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시행하여 별도 지원
-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지원내용 및 예산

-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 '26년 예산 : 국비 5,270백만원

☑ 사업신청

- ☞ 장소 :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시행, (전년도 12월~1월) 사업대상 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전년도 공동선별 실적(물량) 고려 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아	044-201-2224

☑ 목 적

-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 사업내용

- ☑ 화훼농가의 공판장 출하유치를 위한 출하 선도금 및 출하 유치자금, 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결제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출하선도금 및 출하유치자금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 지원제외 대상자 : 화훼(절화, 백합 자생란) 의무자조금 거출금 미납자
- ☑ 결제자금
 -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단, 중도매인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선도·출하유치자금,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
-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 대 상
 - 화훼농가(출하선도금, 출하유치)
 -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목적

- ☑ 도서지역 농산물의 해상운송 등 추가 부담에 따른 시장 출하 여건 개선을 위해 온라인·산지경매 등을 통해 내륙 권역별 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소비지 직배송 체계 구축으로 물류 효율화 제고

☑ 사업내용

-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합물류로 출하는 경우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와 소비지간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도서지역 내 통합물류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도서지역 원예농산물(과수, 채소류 등)을 온라인, 산지경매 등을 통해 통합물류로 출하하는 경우 내륙 지선 물류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 지원 기준 : 지역별 팻릿당 계약단가(운영비 등 부대비용 포함)
 - 공모 및 지정을 통한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 선정 후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권역별 계약단가 산출 적용
- ☑ '26년 총사업비 : 3,750백만원(국비 1,90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물류비 지원 : 3,700백만원(국비 1,850, 지방비 1,480, 자부담 370)
 - 행정경비 : 50백만원(국비 50)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신청방법 : 지정기관이 사업 수행하여 별도 신청 불가

☑ 대상자 선정

- ☑ 지역농협에서 영농도우미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영농도우미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중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아	044-201-2224

☑ 목 적

- ☑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팻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 ☑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 ☑ 지원요건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주문-입고-출고-출하처확인-정산이 완료된 사업 물량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기준 : 본예산과 유보액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본예산) 사업자별 신청 물량(전년도 집행실적 등 참조)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
 - * 온라인도매시장 등 출하 사업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 인센티브 지급
 - (유보액) 신규 신청 사업자,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지자체, 인센티브 등 예산 반영
 - ※ 본예산 및 유보액 배정계획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며, 배정 예산은 사업 신청 수요 및 전수배 조사('25. 7월, 10월)에 따라 조정 예정

☑ **목 적**

-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비자 구매접근성 향상

☑ **사업내용**

- ☑ 온라인직거래를 희망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상품 개발 등 마케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유기·무농약,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사업 참여 기간 내 유효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식품 생산자조직(농가) 및 가공식품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가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콘텐츠 제작지원, 유명 온라인몰 입점지원, 주요 SNS 홍보, 프로모션, 기획전 실시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143백만원(국비100)

☑ **시행근거(법령)**

- ☑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장 소 : aT 홈페이지, 관계기관(농관원, 지자체 등) 협조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의 사업참여 의지, 온라인 판매 여건, 작물 출하시기 및 출하량, 상품패키지 준비, 배송·CS역량 등 종합 평가하여 12개소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혜빈	044-201-2297

☑ 목적

- ☑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의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 및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확산기반을 위한 마케터 육성

☑ 사업내용

- ☑ (aT스튜디오) 제품사진, 동영상, 상세기술서 등 온라인 거래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 ☑ (온라인마케터 육성)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축산물 거래 참여 전문교육 및 거래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취급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거래 전문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할인쿠폰, 홍보관측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 ☑ '26년 예산 : 2,11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장 소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 홈페이지 통한 접수

☑ 대상자 선정

- ☑ 생산자: aTmall, farmdb 사이트에 등록된 대상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등 확대

* APC, 도매시장, 직매장, 장터 등 관련 유통중사자들도 최대한 마케터 교육 참여 유인

- ☑ 유통·소비자: 기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해 온 셀러 또는 온라인 거래 마케터로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주부 포함

* 대학생, 청년 및 기존 셀러 대상 농식품 품질관리 및 유통 관련 교육 지원(민간플랫폼사 협업)(추후 세부사업시행지침 개정 완료 후 변동될 수 있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혜빈	044-201-2297

☑ **목적**

- ☑ 직거래 지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사업내용**

-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등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장터·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직거래 유통실태조사비, 직거래 교육 및 홍보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교육·홍보 300백만원, 직거래유통실태조사 120백만원
- ☑ '26년 예산 : 420백만원(국비100)

☑ **시행근거(법령)**

- ☑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해당 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혜빈	044-201-2297

☑ 목적

-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 사업내용

-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 80억원
- ☑ 지원 한도 : 30억원/개소
 - 선급금 :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3 이내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 신청기간·방법 : 3월중,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공판장에서 제출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신청금액·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따라 대상 선정 및 금액 배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송태흥	044-201-2222

☑ 목적

- ☑ 도매시장 유통관계자에 선도금,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 사업내용

-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에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국고용자 100%
 - 선도금 : 전년도 선도금 지급 실적의 125% 한도 내 배정비율 산출하여 지원
 -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상장거래 1회전 거래액을 배정비율 산출하여 지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전년도 업체별 정가·수의매매 1회전 거래액을 배정비율 산출하여 지원
- ☑ '26년 예산 : 31,0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 사업신청

- ☑ 신청서 작성 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역본부)에 신청
- ☑ 신청시기·방법 : 2~3월,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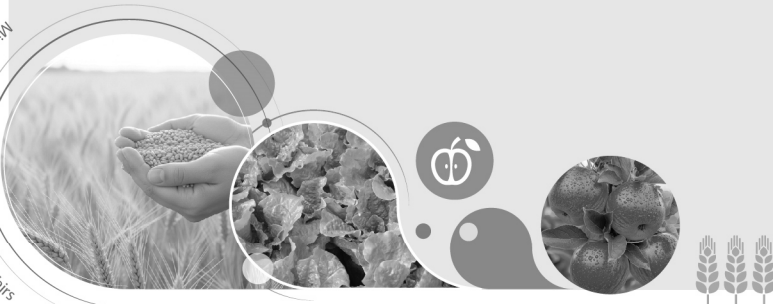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각 신청사업자별 적정성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송태흥	044-201-2222

원예작물,유통

4-5 수급안정, 소비촉진



☑ 목적

-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용자 지원
-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 자격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 지원기준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실적으로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용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이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연리 0~3%(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 '26년 지원예산 : 320,000백만원(국비 100%, 이차보전)

☑ 사업신청

-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 및 사업실적 등록
 - * 매년 1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공지
-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입력(1월), 사업실적 입력(2월)

☑ 대상자 선정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을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제출(3월중순)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연차평가 및 등록내용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3월 하순까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아	044-201-2224

☑ 목적

- ☑ 유통협약 및 명령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유통협약·명령에 참여하는 생산자 등
 - * 농산물 중 자조금 단체를 구성한 품목 또는 생산지가 전문화되고 생산 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
- ☑ (추진요건) 유통협약 및 명령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운영 경비 및 부대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유통협약·명령 운영비 및 이행을 위한 부대비용
 - * (운영비) 유통협약 위반자 단속 등 유통협약·명령 운영을 위한 필수적 비용(부대비용) 저급품 선별·격리 및 산지폐기 비용, 상·하차비, 운송비, 출하 지원비 등
- ☑ 지원 방식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 '26년 예산 : 360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서) 유통명령요청서 또는 유통협약서, 세부 시행계획, 예산안, 재원 조달(자부담 포함) 및 관리 계획 등을 제출
- ☑ (신청기한) 유통협약·명령 절차 중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단계” 종료 전까지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금 집행이 가능한 사무국 등 조직 구성
 - * 사무국 구성과 자금 관리, 정산 및 내부 감사 절차 등 자금 집행·관리 능력 입증 필요
-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추진 전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지원대상품목 및 내용

- (유통협약) 유통협약이 체결된 품목 중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로 자조금 단체, 주산지 협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을 갖춘 품목
- (유통명령) 유통조절명령 대상 품목
- (지원 내용)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필수적인 경비 및 부대비용
 - * (운영비) 유통협약 위반자 단속 등 유통협약·명령 기능을 위한 필수적 비용에 한하며, 유통협약 내용에 따라 구성된 추진단체 또는 유통명령이행추진단의 운영 경비 및 보수 등은 지원 제외(부대비용) 저급품 선별·격리 및 산지폐기 비용, 상·하차비, 운송비, 출하 지원비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봉영근	044-201-2258

☑ 목적

-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 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자조금단체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 '26년 총사업비 : 31,090백만원(국비 16,045, 자부담 15,045)
 - 자조금단체 지원 : 30,090백만원(국비 15,045, 자부담 15,045)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자조금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별도 신청

☑ 사업대상자

- ☑ 품목별 자조금단체 및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김대영	044-201-2235

☑ **목 적**

- ☑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영세농가의 판로 지원

☑ **사업내용**

-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비
- ☑ 지원 기준 : (바로마켓) 국비 100%
 - (대표장터) 국비 70%, 자부담 30%
 - (정례장터)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
- ☑ '26년 예산 : 1,470백만원
(추후 세부사업시행지침 개정 완료 후 변동될 수 있음)

☑ **시행근거(법령)**

- ☑ 직거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 부지 적정성, 농가 조직화 정도, 품질관리 방안 등 평가
- ☑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26.1~2월)
(추후 세부사업시행지침 개정 완료 후 변동될 수 있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혜빈	044-201-2296

☑ 목적

- ☑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등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설 농산물 직거래 공간을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 확산

☑ 사업내용

- ☑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하며, 직매장 신축인 경우 2년차사업으로 의무 추진(1년차 설계·인허가 등 → 2년차 매장 건축)
-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농협(산립)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자체가 설치·운영할 경우 자부담은 지방비에 포함

☑ 지원 한도

- 일반직매장(최대3억)

* 신축: 2년차 사업(1년차: 인허가, 설계, 2년차: 건축 등) *리모델링(개보수): 1년차 사업

- 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여야 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26년 예산 : 750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225, 자부담 300)

☑ 시행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 사업신청

☑ 장소 :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공모없음

☑ 대상자 선정

☑ 부지(입지)여건, 시설 구성계획, 농가 조직화 정도, 사업비확보계획 등 평가

☑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

(추후 세부사업시행지침 개정 완료 후 변동될 수 있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용	044-201-229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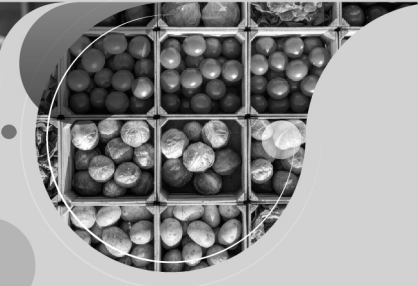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5



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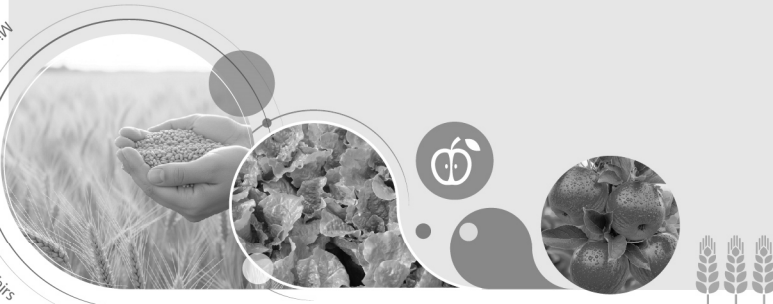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축산

5-1 시설·장비지원



173 축사시설개선

☑ 목적

-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사업내용

-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약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용자* 80%, 자부담 20%
 -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사업신청**

-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1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2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박소영	044-201-2328

☑ 목적

-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약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사업내용

-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약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 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약취·방역) 약취감지 센서, 약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약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대상자

-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애, 쌍별귀뚜라미)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제공 의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 지원〉

-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6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 지원내용 및 예산

〈지원 대상 ICT 장비〉

-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 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 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절한 설치나 효율적 운영에 불가피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
 - * 환기시스템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축사 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스마트장비 설치와 무관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불가)
 - ☑ 축산농가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축사 온·습도 감지 센서와 이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환풍기·안개분무기·냉각패드를 연계 신청한 경우 관련 패키지 함께 보급 가능(농가 주도형 패키지 구성)
-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ICT축산장비 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용자 50%, 자부담 20%
 - 용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용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지원 기준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²), 양봉(200군)을

☑ 시행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①항제7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지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자(축산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시청, 군청)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대상자 선정

- ☑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관할 광역자치단체 (시청, 도청)으로 신청내역을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자 최종선정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본사업자를 선발함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유호선 주무관	044-201-2321

☑ 목적

- ☑ 유휴 산지·농지·기타토지를 활용한 초지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628백만원
 - 초지조성 148백만원, 울타리설치 300, 경영지원 80, 교육 등 100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 전년도 4월, 수시(예산신청 없이 지정농장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우의양	044-201-2354

☑ 목 적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기계·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 부담 완화, 국내산 조사료 소비처 및 유통 확대

☑ 사업내용

-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가공·유통시설 신규·보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계·장비)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계근장비 등
- ☑ (가공·유통시설) 공장,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시설 설비 등
- ☑ (예산) '26년 국비보조 5,250백만원, 융자 525백만원
- ☑ (지원기준) 국비 10~30%, 지방비 30%, 융자 30~100%, 자부담 10~4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등

☑ 사업신청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거주지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 (기계·장비)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 ☑ 시·군은 사업자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 (가공·유통시설) 시·군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평가결과 등을 시·도로 제출
 - 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최종 검토·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희도	044-201-2356

☑ 목 적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 사업내용

-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품질검사 비용, 전문단지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침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품질검사 비용, 품질등급제, 전문단지(상기 지원 외 퇴·액비, 입모중파종 등 추가지원)
- ☑ (예산) '26년 국비보조 80,989백만원
- ☑ (지원기준)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제1항, 「초지법」 제13조 제1항 등

☑ 사업신청

- ☑ 거주지 시·군(시·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 (신청기간) 전년도 7월내(거주지 시·군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 시·군은 사업자선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말까지)
- ☑ (전문단지) 시·군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평가결과 등을 시·도로 제출
 - 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최종 검토·심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희도	044-201-2356

☑ 목적

-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처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 소비·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 생산지와 소비지 간 조사료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이용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이용촉진비, 교육·홍보비
- ☑ (예산) '26년 국비보조 1,769백만원
- ☑ (지원 기준) 국비보조 40%~100%, 자부담 0~6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제1항, 「초지법」 제13조 제1항 등

☑ **사업신청**

-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사료 공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제(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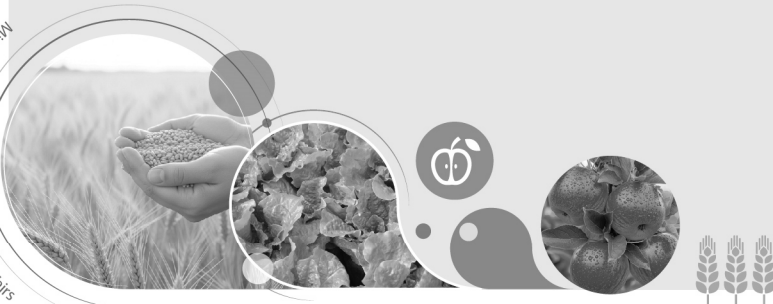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사업시행주체는 수요·공급량,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 확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김희도	044-201-2356

축산

5-2 가축사육, 말산업



☑ 목적

-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 개량방향 제시 및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사업내용

- ☑ 우량 가축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체형형질 심사, 종축능력평가 대회, 토종가축인정업무를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종축등록사업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정액보조
 - 종축능력평가대회 1식, 한우선형심사비용(토종가축인정 비용 포함) 등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 단, 한우선형심사비용(토종가축인정비용)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지원요강에 따라 신청 후 개별 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적

-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한우젓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3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고능력씨암소축군 400두 조성(4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8개소)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적

-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한우젓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5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1개소)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적

- ☑ 한우 및 젓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

☑ 사업내용

- ☑ 한우 및 젓소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한우젓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정액보조
 - 한우 보증씨수소 30두 선발, 암소검정 240천두, 고능력씨암소축군 100두 조성, 젓소 보증씨수소 7두 선발·도입, 유우군능력검정 110천두 사업 등 수행비용 지원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대상자 선정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 적**

- ☑ 한우 및 젓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

☑ **사업내용**

- ☑ 젓소개량과 관련하여 유성분 분석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유성분 분석기에 대한 취득비용 보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유성분분석기 취득에 소요하는 비용 등
- ☑ 지원 기준 : 유성분분석기 300백만원/1식 이내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대상자 선정**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적

-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 사업내용

-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이하
- ☑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90만 마리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 90~10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30
 - 100~11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10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2조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대상자 선정

- ☑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농가와 귀표번호를 확인 후 정상 등록된 때에만 계약 체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겨레	044-201-2333

☑ 목적

- ☑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유가공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저지종) 도입

☑ 사업내용

-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등록한 사육농가
-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성감별 수정란(저지종) 및 이식비용
 - 총 715백만원 : 3,250천원/개(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
 - *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업무),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사업신청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사)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 ☑ (사)낙농진흥회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사업 안내
- ☑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 *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보급계획 수립
 - *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 ☑ (사)낙농진흥회
 -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사)낙농진흥회
 - 접수된 사업신청서 검토(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신청액 등)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평가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실시
 - 평가결과(종합 의견서) 및 관련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서 등 다음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서, 사업자 현황, (사)낙농진흥회 의견서 등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도입수량,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시행기관에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도입수량, 지원액 등) 확정 통보
- ☑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
 - 유전자원 도입·보급계획 및 보조금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재호	044-201-2341
		박일수	044-201-2340

☑ 목적

- ☑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사업내용

-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5년 납입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해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 '26년 예산 : 100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양봉산업법

☑ 사업신청

-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 현	044-201-2335

☑ 목적

- ☑ 돼지 개량기반을 구축하여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도입 및 활용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정액등처리업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돼지능력검정지원에 소요하는 사업비 등
- ☑ 지원 기준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가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여 개량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두당 300~1,200천원 지원
- ☑ '26년 예산 : 1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단위개량지원(지자체경상) 144백만원 국비 정액지원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지원대상자(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 세부지원 대상자는 시도 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세종, 대구)에서 선정 후 지원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

☑ 대상자 선정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지원대상자(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 세부지원 대상자는 시도 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세종, 대구)에서 선정 후 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 적

-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 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보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 지원 기준 : 돼지능력검정 62천두,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수행기관 등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 목적

-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 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보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 지원 기준 : 육질검사초음파검정기, 사료효율측정기, 등지방측정기, 돈형기 취득시 국고 50% 지원

☑ 사업신청

-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044-201-2342

축산

5-3 축산환경개선



☑ 목적

-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적

-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참여 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 적**

-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

☑ **사업내용**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업무수행, 깨끗한 축산환경 컨설팅, 공동자원화 평가, 자원화 조직체 평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평가)축산환경관리원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축산환경관리원 운영비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적

-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사업내용

-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규 :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연계 :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지원내용 및 예산

-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사업신청

-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 대상자 선정

-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확정
- ※ 사업대상자 심사, 평가, 검토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 적**

- ☑ 자원화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처리효율 개선 및 악취저감

☑ **사업내용**

- ☑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증축 :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
- ☑ 개보수 :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금액 : 증축(30억원 이내/개소), 개보수(15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용자 30%
 - 사업기간 : 단년도

☑ **사업신청**

- ☑ 시·도, 시·군·구는 사업주체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지원대상, 선정시기 및 절차 등 별도 선정계획 통보

☑ **대상자 선정**

- ☑ 유형별 지원한도 적용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최종 사업자 선정
- ☑ 심사 평가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 적

-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사업내용

-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받거나 등록을 한 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적

-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사업내용

-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민간형 : 기존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공공형 :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민간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 공공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적

-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전문조직
-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 사업신청

- ☑ 사업 주관기관 : 시·군·구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퇴액비살포비)
 - 1순위 :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살포 외) 농·축협, 비료생산업 등록 법인
 - 2순위 : (퇴액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살포 외) 비료생산업 등록 농가
 - 3순위 :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 목적

-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사업내용

-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용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 농협중앙회 추천*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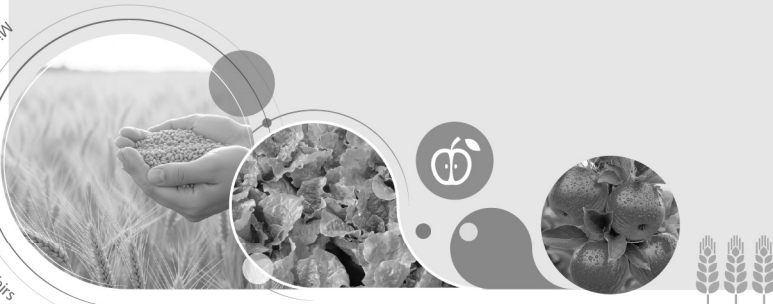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추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신민경	044-201-2363

축산

5-4 가공, 유통, 수급, 소비



☑ 목 적

- ☑ ‘개별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및 산하 각 기관별로 관리 중인 축산농장 관련 정보 연계·통합·활용으로 축산정책·가축방역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 ‘개별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축산농장 관련 정보 연계·통합·활용을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6조 및 제47조

☑ 사업신청

- ☑ 해당 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이래은	044-201-234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민아	044-410-7143

☑ 목적

-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 사업내용

-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도축업·집유업·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26년 예산 : 640백만원(국비 256, 지방비 192, 용자 -, 자부담 192)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해당 시·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044-201-2976

☑ 목적

-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 사업내용

-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

-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오리사육제한 :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최종 확정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 종란폐기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 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 사업기간 : '24년~(계속)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1조제6항

✔ 사업신청

- ✔ '26.1~2월, '26.11.1.~'27.2.28.
* 매년 동절기 4개월 간(11.1.~2.28.) 사업 추진

✔ 대상자 선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고병원성 AI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위험도 평가에 따라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 자체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변성환	044-201-2559

202 생계 및 소득안정

☑ 목적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 사업내용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비용과 소득안정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 (생계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 (소득안정비용)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 및 입식 지연 등 농가에 발생한 피해 일부 지원
- ☑ 지원 기준 : 생계안정비용(국비 70%, 지방비 30%), 소득안정비용(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 사업신청

- ☑ 해당 농가는 농가 소재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 신청
- ☑ 시·도는 신청내역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자금 교부 요청
- ☑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도에 자금 배정 및 집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강정우	044-201-2521

☑ 목적

-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를 이력관리하여 민간의 미경산우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비육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사업내용

-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로서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받고, 시술확인서를 이력제에 등록한 한우 암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장 소 : 농장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 ☑ 신청기간 : 별도 안내

☑ 대상자 선정

-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이력제에 등록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5.12.~'26.12. 동안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인 개체
- ☑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배정 물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이겨레	044-201-2333

☑ 목적

- ☑ 투명한 계란 거래기준가격 형성을 위해 도입한 계란공판장에 공판장 경우 시 발생 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출하 및 구매자를 유인하여 거래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계란 공판장 개설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및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70% + 지방비 30%
- ☑ '26년 예산 : 4,456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업신청

- ☑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 신청

☑ 대상자 선정

- ☑ 계란공판장활성화자금(보조)을 신청하려는 공판장 개설자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자금 신청
-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검토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자금 지원 신청
- ☑ 농식품부(축산유통팀)는 공판장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관할 시·도에 지원금액을 배정·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이지윤	044-201-2372

☑ 목적

- ☑ 우유수급 상황의 정확한 분석·예측을 통한 원유수급조절기능 강화
- ☑ 원유·유제품의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통계를 조사·분석·관리하여 원유·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우유급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사업내용

- ☑ 낙농통계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통한 원유수급의 안정적 유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낙농진흥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시스템(낙농통계*, 학교우유급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안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개발비용
 - 시스템 운영, 통계자료 관리 및 분석 업무 등을 위한 인건비
 - 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훈련 등을 위한 비용
 - * 낙농통계관리시스템 :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 실적, 전국 원유 생산쿼터관리, 유제품 가공·유통·수출입·소비·국제통계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 ** 학교우유급식 통합관리시스템 : 학교우유급식 계약·공급·정산 등 집행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지원시스템
- ☑ 낙농통계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
 - 통계자료 구입 및 자료 분석비
 -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조사비, 연구개발비 및 제반경비 등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6조(업무),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사업신청**

- ☑ (사)낙농진흥회 직접 수행

☑ **대상자 선정**

- ☑ 낙농진흥회가 사업 대상이므로 별도 선정 절차 불필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재호	044-201-2341
		박일수	044-201-2340

☑ 목적

-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 지원 기준 : 용자 100%(0~1.5%)
 - 용자기간 : 2년 이내

* ('25년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양호 0%, 보통 1%, 미흡 1.5%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신청기간 : 1~2월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항목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한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실적(우수·양호·보통·미흡 등급)이 있는 업체 중 사업 의무량 달성 능력, 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지원제외는 대상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시장공급 억제 및 비축물량 방출 등 사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오리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24. 3월 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주영	044-201-2339

☑ 목적

-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비대면 경매시스템 조기 구축
 - 부분육 거래, 선도거래 도입 등 유통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

☑ 사업내용

- ☑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비용, 도매시장 내 영상장비 및 경매시설 구축 비용의 일부 지원
- ☑ 지원기준: (시스템 구축) 100%, (도매시장 장비 등) 70%
- ☑ '26년 예산: 8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법」 제35조(축산물품질평가원), 「농안법」 제35조

☑ 사업신청

- ☑ 계획에 명시한 일자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 도축장(원격지상장)
- ☑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 계획에 따라 1,2차 평가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이지윤	044-201-2372

☑ 목적

-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비 지원

☑ 사업내용

-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시도)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검사장비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 ☑ '26년 예산 : 3,643백만원(국비1,457, 지방비2,186, 융자 -, 자부담 -)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시·도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

☑ 대상자 선정

- ☑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에 사업비 교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044-201-2976

☑ 목적

- ☑ 국내산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사업내용

-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중축개량협회)의 이력관리 운영 및 장비 등 구입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귀표 구입 및 부착,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DNA검사 등에 필요한 경비
- ☑ 지원 기준 : 민간(경상·자본)보조 100%, 지자체(경상·자본)보조 50%
- ☑ '26년 예산 : 32,483백만원(국비)

☑ 시행근거(법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사업신청

- ☑ 해당 없음

☑ 대상자 선정

☑ 해당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이래은	044-201-234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박경동	044-410-7061
농협경제지주	농협경제지주	김판수	02-2080-6584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송치은	02-588-9310

210 축산자조금 운영

☑ 목 적

-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사업내용

-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설치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 정부보조금 매칭 지원

☑ 사업신청

- ☑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연간 자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실시

☑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7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2개)을 설치·운영 중인 축산단체로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음
※ 내내역사업 : 한우·한돈·우유·육우·닭고기·계란·오리·양봉·사슴 자조금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미선	044-201-2337

☑ 목적

- ☑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가공유)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사업내용

-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1. 사업대상자**

- ☑ 낙농진흥회와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이하 “원유수요자”)
-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 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 ※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 지원단가 : (음용유) 566원/ℓ (가공유) 265원/ℓ
-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 ☑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낙농진흥법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낙농진흥법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 사업신청

- ☑ (사)낙농진흥회 직접수행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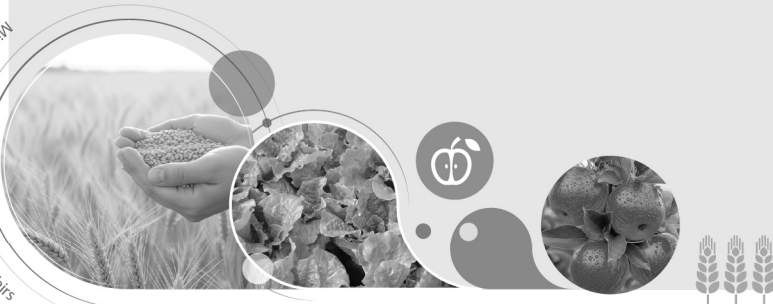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수수료 등 사업 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
 - 사업희망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의 용도별 원유
사용량과 수요량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용도별 차등가격제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용도별 원유
사용량과 수요량을 근거로 지원물량(총량)을 결정
※ 낙농진흥회는 수급안정을 위해 연간 용도별 물량(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간 원유 전환
조치 가능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업 수수료 산정
(사업자 부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재호	044-201-2341
		박일수	044-201-2340

축산

5-5 가축방역, 위생지원



☑ 목적

-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사업내용

-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염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단, 소 농가는 최대 12.25백만원, 염소 농가 6.5백만원)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허용)
 - * 기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상향(70백만원→100백만원, 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 시행근거(법령)

-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신청

-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월)
- ☑ (시·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사업시행년도 1월)

- ☑ (시·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전년도 9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조은정	02-2133-7654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김규범	033-249-2682
충청북도	충청북도	김아영	043-220-3583
충청남도	충청남도	최영환	041-635-255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형배	063-280-2757
전라남도	전라남도	송정아	061-286-6563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현창	054-880-3447
경상남도	경상남도	강래철	055-211-65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김문용	064-710-2152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정홍석	051-888-512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김건우	053-803-342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안은정	032-440-433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심소연	062-613-469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성선혜	042-270-384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경미	052-229-293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이세원	044-300-7634
경기도	경기도	이재은	031-8030-3522

213 가축전염병 소독 지원

☑ 목적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내용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럽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소독자원 임차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소독자원 임차 투입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소독 실시를 위한 광역방제기, 방역차, 살수차 등 민간 보유 소독자원 임차 비용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지원 예산 : 4,279백만원

☑ 사업신청

- ☑ 지자체는 투입이 필요한 소독장비 항목·대수를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소독자원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투입 규모를 결정 후 농협에 통보
- ☑ 농협경제지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소독자원을 임차하여 지자체에 배정
- ☑ 지자체는 소독자원 운용을 위한 사전준비(소독제, 물 공급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등), 소독자원 운전자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소독 실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제창욱	044-201-2536

214 말 예방백신 등 지원

☑ 목적

- ☑ 가축백신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국내 말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 우려
 - 따라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수 공통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 필요

☑ 사업내용

- ☑ 말 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마사회, 지자체등에 지원하여 방역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말 사육 농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예방약(백신),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약물·투약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한국마사회
- ☑ 사업신청방법 : 말방역수의사에 신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제창욱	044-201-2536

215 방역장비 등 지원(자본)

☑ 목적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인프라 강화 도모

☑ 사업내용

- ☑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차량, 소독차량, 시험소 검사장비, 거점 세척·소독 시설, 가축 질병(BL3) 검사실 구입 및 건축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방역장비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예산 : 6,995백만원(국비 기준)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신청

- ☑ 시·도에서 시험소 및 시·군·구의 수요를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지자체별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부액 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강정우	044-201-2521

☑ 목적

- ☑ 생산단계(농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및 보급·확산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업내용

- ☑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현장 구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도축장(포유류), 집유장 영업자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사업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044-201-2976

☑ **목적**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내용**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구입 비용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 예방약품, 검진약품, 방제약품 대한 약품 구입 비용
 -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에 대한 시설 유지비용 및 인건비 일부
 - 통제초소 운영 비용 및 시료 채취비용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25~100%, 지방비 0~70%, 자부담 0~50%
- ☑ '26년 예산 : 156,946백만원(국비 78,73백만원, 지방비 78,473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신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 내용을 농식품부에 요청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사업 여건·수요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부액 결정 후 지자체에 통보 및 교부
- ☑ 농식품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집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강정우	044-201-2521

☑ **목 적**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내용**

- ☑ 민간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가축 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축협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소독차량 교체 비용
-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소독차량 5대 교체 비용(대당 국비 20백만원)
- ☑ 지원 예산 : 100백만원(국비)

☑ **사업신청**

- ☑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시달 후 농협경제지주는 지역축협의 수요조사 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 후 사업 시행

☑ **대상자 선정**

- ☑ 농협경제지주는 내구연한 경과 정도, 지역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협을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 검토 후 승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강정우	044-201-2521

☑ 목 적

-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일관된 축산물HACCP 적용 식품망(food-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지원

☑ 사업내용

- ☑ (축산물 위생, 생산단계, HACCP, 현장기술 지도) 기존 인증 농장 및 집유장, 도축장 중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

☑ 지원내용 및 예산

- ☑ HACCP 운용이 미흡하고 현장기술지원이 요구되는 농장 대상 맞춤형 기술지도, 집유장·도축장 자체안전관리인증 조사평가, 컨설팅 수행업체 교육·평가 등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

☑ 대상자 선정

-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 농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044-201-2976

☑ 목적

- ☑ 가축전염병 매개곤충 채집·검사 등으로 병원체의 국내 잔존 여부 및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의 유입 여부를 감시

☑ 사업내용

- ☑ 거점센터 운영 , 공중포집기 설치 운영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거점센터 운영 : 928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기·강원·충남·전북은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소(牛) 농가 대상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 등
 - ※ 필요 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원 검사 추진
- ☑ 공중포집기 설치 : 90백만원(국비 100%)
 - 서해안 및 접경 지역을 통한 림피스킨 등의 유입·전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1개소), 강원(2개소)에서 공중포집기 설치
- ☑ 공중포집기 운영 : 97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는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중포집기(18개소)를 통해 채집한 매개곤충 채집·분류·검사 등
 - * ①농촌진흥청 운영 포집기(15개소) : 경기(양주·연천·화성·김포), 강원(철원), 충남(서산·태안), 전북(군산·부안·고창), 전남(영광·진도·해남·무안), ②인천·강원 설치 포집기 3개소
 - ※ 필요 시,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원 검사 추진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사업신청**

- ☑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시달 후 지방정부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 기관 선정

☑ **대상자 선정**

- ☑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역축협을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 검토 후 승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제창욱	044-201-2536

☑ 목적

-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가축 비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등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지자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오염물건 폐기(매몰지 잔존물 및 퇴비 처리비용은 제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 지원 기준
 - 시·군·구에서 사육하는 해당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한 비율 지원
 -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최소 5%이상)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 ☑ '26년 예산 : 2,841백만원(국비 20~50%, 지방비 50~80%)

☑ 시행근거(법령)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사업신청

- ☑ 각 시도에서 각 시군구가 지원조건 충족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수요 제출

☑ 대상자 선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군구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유민형	044-201-2544

☑ **목 적**

-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우수제조시설을 갖춘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자금 용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 **시행근거(법령)**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사업신청**

-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 신청기간 : '26.1.1.~'26.1.9.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채진욱	044-201-2553

☑ 목적

- ☑ 국내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시드로트 : 백신시드, 세포주

☑ 사업내용

-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가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필수 품질시험 비용(직접 또는 위탁)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 백신 위탁제조판매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단위로 수행하는 필수 시험비용(직접 또는 위탁)
-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자체 30%, 자부담 40%
 - 지원 단가 : 1개 시드로트 당 90백만원(국비 30%(27백만원))
 - 지원 물량 : 총 80개 시드로트 지원
 - 지원 한도 : 제조업체 당 국비 49백만원 한도
- ☑ '26년 예산 : 720백만원(국비216, 지방비216, 자부담288)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26.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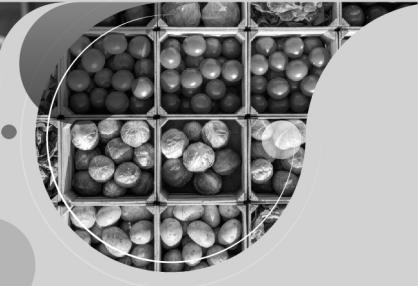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채진욱	044-201-2553

6



식품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품

6-1 기반구축



☑ 목적

- ☑ 농산업 분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활성화 서비스 발굴

☑ 사업내용

- ☑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co.kr) 운영,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 기반의 융합 서비스 생산·개발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및 데이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개선, 클라우드 이용료, 기관 운영비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1,352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박해인	044-201-1414

☑ **목 적**

- ☑ 국내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합DB 운영을 통한 기능성 농식품산업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 ☑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국산 기능성소재 사용실태 및 기능성표시식품 산업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산업 동향 정보 제공
- ☑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기관별 산재된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포털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주체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능성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유주영	044-201-2138

☑ 목적

- ☑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신용거래 등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 사업내용

-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산농산물을 생산 이용하는 생산자단체 및 중소 식품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 예산 : 3,065백만원(연계지원 2,100백만원, 연계관리 965백만원)
- ☑ 농업, 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 운영 지원 등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 사업신청

- ☑ 지자체(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대상자 선정

- ☑ 국산 농산물 이용 실적 등 지자체별 선정기준 참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박다음	044-201-2118

☑ 목적

-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사업내용

-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 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 등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인체적용前시험, 인체적용시험, 준비·등록단계 비용
- ☑ 지원 기준 : 국비 40~50%, 자부담 50~6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60%)
- 품목당 지원규모 40~120백만원(국비 20~6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신청

- ☑ 연구개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에 우편·이메일·방문신청
- ☑ 신청기간 : 사업 공고 후 4주('26.1월)

☑ 대상자 선정

- ☑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26.1분기)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유주영	044-201-2138

☑ 목적

- ☑ 식품 기술거래·이전 및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우수 R&D 기술성과 확산으로 식품 기술개발 활동 및 산업계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 (내용)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 기술(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등)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
 - (인프라 강화) 식품 기술이전협의체 운영, 식품기술 거래정보 통합관리, 식품 트렌드 뉴스레터 발간
 - (거래 활성화) 기술 매칭 및 이전 알선을 위한 식품기술 거래기관 운영, 세미나, 설명회 개최를 통한 식품 우수기술 파트너링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이전 업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식품기술거래기관,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식품 기술을 이전 받은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술이전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킹, 기술거래 매칭 및 전략 컨설팅,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사업신청

- ☑ 신청기간은 내내역 세부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 내내역사업 : 기술거래 인프라 강화,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기술 사업화 촉진

☑ 대상자 선정

- ☑ (사업화 촉진)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지원 대상자 선정(4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송하나	044-201-2122

☑ 목적

- ☑ 식품산업 통계,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식품 외식업계 마케팅 전략 수립, 정부정책 수립 등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사업내용

- ☑ 국내외 식품산업통계 생산기관의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식품산업 통계 DB 구축(국제 원자재 선물가격,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등)
- ☑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배포(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가공식품소비자태도 조사,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외식업경영실태조사)
- ☑ 가공식품 품목별 세분시장 현황 조사 및 식품산업 트렌드 분석
- ☑ 식품산업통계정보(FIS) 운영을 통한 정보 이용환경 조성 및 정보 전파
- ☑ 식품외식 산업전망 행사 등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식품산업 통계, 정보 수집 및 가공, 분석 수행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김선이	044-201-2117

☑ 목적

- ☑ 국산 기능성소재 기반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화 촉진 및 국산 기능성소재 시장 저변 확대

☑ 사업내용

-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 원료 및 기능성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인허가 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희망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기업 제품유형에 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원료 ①추천·공급 ②시제품개발·평가 ③기능성표시식품 인허가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60%, 자부담 40%
 - (지원 기준)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지원 물량) 총30개 기업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사업신청

- ☑ 장 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사업 공고 후 약 30일('26년 1분기)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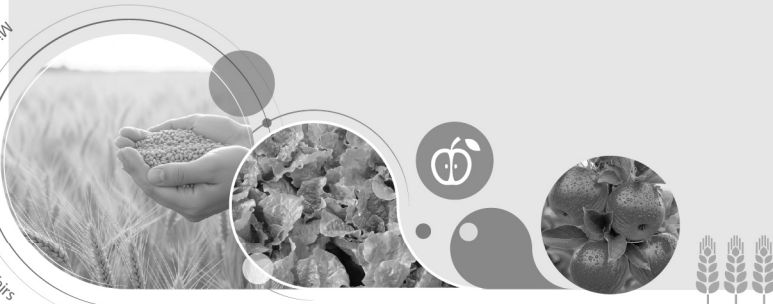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선정기준 항목은 사업 수행 타당성, 수행 방법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등이며, 우선사항은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이며, 감점사항은 사업중단, 사업불량 및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임
- ☑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유주영	044-201-2138

식품

6-2 식품안전, 환경, 인증



23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 목적

-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사업내용

- ☑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분석비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5,086백만원(국비 2,543백만원, 지방비 2,543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110조(자금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 신청기간 : (토양용수 분석)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6.12월말

☑ 대상자 선정

- ☑ 토양용수 분석 : 지자체별 공고에 의해 대상자(업체)를 선정
-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업인이 GAP인증을 위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성은혜	044-201-2974

☑ 목적

-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사업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 ☑ 지원 기준 : 300백만원 이내(국비+지방비)/개소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3,730백만원(국비 1,119, 지방비 746, 자부담 1,865)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0조(자금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거주지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의지, 준비상황, GAP확대 기여도, 사후관리 계획 등
- ☑ 선정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성은혜	044-201-2974

☑ 목적

- ☑ 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농업 생산·환경기반 조성

☑ 사업내용

- ☑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주변을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 실시
- ☑ 산업·농공단지, 매립지, 시멘트공장, 철도역사,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공항, 고속도로, 저수지 등 주변 농경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당해연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경지 중금속 오염지구 선정 및 분석 시료채취, 중금속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1,638백만원(국비 1,638)

☑ 사업신청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 중금속 조사 계획을 제출 받아 조사 지구, 규모 등을 검토 후 조사 대상 선정('26.1월말)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목적 타당성, 효과성, 필요성 등) 항목으로 농업기반시설(농경지 포함)을 종합적으로 관리(토양오염 조사·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가능 기관 선정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경지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계획 제출·적정 판단 및 선정
 - * (관련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등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 중금속 조사계획을 제출 받아 조사 지구, 규모 등을 검토 후 조사 대상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김형우	054-429-4138

☑ 목적

- ☑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 강화

☑ 사업내용

- ☑ 명예감시원 소속 단체의 원산지표시 지도 활동 지원을 통한 명예 감시원의 감시·신고 등 감시역량 제고 및 운영 활성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산물 명예감시원 소속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중 명예감시원이 30명 이상인 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명예감시원 지도활동 참가수당
- ☑ 지원 기준 : 국비 100% (50,000원/1일 4시간 이상)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신청

- ☑ 농관원 각 지원에서 「사업자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자 통지 및 사업 계획 안내

* 배정기준 : 명예감시원 수, 사업실적, 활동실적, 부정유통신고실적 등

- ☑ 사업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내에서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관원 각 지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하여 사업 계획 확정 후 사업자에게 통지

*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비의 적정 여부 검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추미진	054-429-4154

☑ 목적

- ☑ 일반인의 전통주에 대한 소양교육 및 제조방법 교육 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 증대

☑ 사업내용

- ☑ 전통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18개소, '25.12월 기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교육기관에 교육비의 70%를 국고금으로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20.
 - 지원 한도: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계약서) 상의 국고금 지원기준
- ☑ '26년 예산 : 232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사업신청

-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전통주 등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70점 이상)

* 정량평가 20(교육실적 등), 정성평가 80(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계획, 프로그램, 교육비 산정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비 차등 지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윤소열	054-429-4123

☑ 목적

- ☑ 농산물과 농업환경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GAP인증제도의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대상 교육지원을 통한 GAP인증 활성화

☑ 사업내용

- ☑ 내부심사자 등 GAP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대상 교육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GAP 내부심사자, GAP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지자체, 농업인, 유통·급식 소비자 등 교육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 '26년 예산 : 30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

☑ 사업신청

- ☑ 장 소 : 사업추진기관(지원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등)
- ☑ 신청기간 : 수시(사업기간 내 상시 모집)

☑ 대상자 선정

- ☑ 사업추진기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이주하	054-429-4178

237 GAP 판로지원

☑ 목적

-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한 GAP 농산물 판매촉진과 소비자 인식 제고로 GAP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GAP 인증 농산물 마케팅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GAP 농산물 취급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부문별(교육·홍보·판매) 수행 전문업체와의 매칭을 통한 사업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8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

☑ 사업신청

- ☑ 장소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대상자 선정

- ☑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성은혜	044-201-2974

☑ 목적

- ☑ GAP인증 기반 확대를 위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활성화를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내부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 지원자격 및 요건

-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내부심사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GAP 신규 인증 농업인 현장 컨설팅, 내부심사자 활동지원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 '26년 예산 : 35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

☑ 사업신청

- ☑ 장 소 : 사업추진기관(지원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등)
- ☑ 신청기간 : 수시(사업 기간 내 상시모집)

☑ 대상자 선정

- ☑ 사업추진기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에 따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이주하	054-429-4178

☑ **목 적**

-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소비자·유통자·생산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GAP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 및 이력추적관리 홍보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 계약일 ~ 2026.12.
- ☑ '26년 예산 : 556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

☑ **사업신청**

-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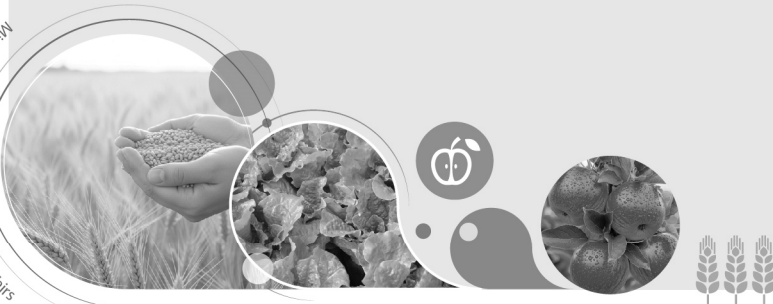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공모 및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 80%(사업 이해도, 전문성, 수행능력 등)+입찰가격평가 20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26.1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변다연	054-429-4149

식품

6-3 식품산업, 외식산업



☑ **목적**

- ☑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 및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안정적인 원료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 저장시설 및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 김치 원료 공급단지 건립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충북 괴산, 전남 해남, 전북 고창 선정 완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설계비, 시설 건축 및 생산설비·장비 등 구축 비용

☑ **사업신청**

- ☑ 「김치산업 진흥법」제6조(경영개선 지원) 등

☑ **대상자 선정**

- ☑ 전남 해남, 충북 괴산('22년), 전북 고창('24년) 선정 완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정미선	044-201-2133

☑ **목 적**

- ☑ 최근 천일염 품귀, 가격상승 등에 대한 원가 절감을 통해 수입 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 도모 등 중소 김치 제조업체 및 절임배추 제조업체 대상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 김치 또는 절임배추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보조사업자의 공장 내 절임염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 일체의 구축 비용을 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지원(부지대입비 제외, 부가가치세 10% 포함)

☑ **시행근거(법령)**

- ☑ 「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경영개선 지원) 등

☑ **사업신청**

- ☑ 장 소 : 각 지자체
- ☑ 신청기간 : 각 지자체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 **대상자 선정**

- ☑ 선정 기준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지자체 문의 필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정미선	044-201-2133

☑ 목적

- ☑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수급 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내용

-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 한도 : 개소당 1,500백만원(국비 기준 450백만원)
- ☑ 사업 기간 : 2년(1년차 예산 20%, 2년차 예산 80%)으로 추진
- ☑ '26년 예산 : 4,355백만원(국비 1,306, 지방비 1,306, 자부담 1,743)
 - 총사업비 : 7,854백만원(국비 2,356, 지방비 2,356, 자부담 3,142)
 - * 국비 기준(1,306백만원 → (1년차) 193백만원, (2년차) 1,113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마련)

☑ 사업신청

- ☑ 장 소 :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신청기간 : 전년도 8월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 타당성, 시설·장비 적합성, 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6.9월)

* 서면평가 60% + 발표평가 40%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김기표	044-201-2125

☑ 목적

-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관광 문화공간으로 육성

☑ 사업내용

-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전통주 등 생산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양조장 환경개선,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
- ☑ 사업 예산 : 양조장 심사 및 컨설팅(민경 280백만원)
양조장 지원(615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등

☑ 사업신청

- ☑ 방법 : 지자체 주관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 추진(지특회계)
- ☑ 신청기간 : 사업 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양조장을 추천하고, 추천 양조장 대상 서류·현장평가 실시하여 양조장 신규 선정, 선정기준 항목은 역사성, 사업의지, 계획성, 지역관광 연계성 등임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유태선	044-201-2136

☑ 목적

-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 사업내용

-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5개소, '25.12월 기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교육기관에 교육비의 70%를 국고금으로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지원 기간 : 계약일 ~ 2026.12.18.
 - 지원 한도 :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계약서) 상의 국고금 지원기준
- ☑ '26년 예산 : 123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사업신청

-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70점 이상)

* 정량평가 20(교육실적 등), 정성평가 80(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계획, 프로그램, 교육비 산정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비 차등 지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윤소열	054-429-4123

김치산업육성(김치품평회, 김치페스티벌, 김치의 날, 김치홍보비, 김치자조금, 김치산업실태조사, 김치종균보급)

☑ 목적

- ☑ 국산 김치의 우수 브랜드 선발 및 김치 축제 등 추진으로 한국 김치 소비 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
- ☑ 국산 김치로 사용되는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 김치 원료의 수급 조절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자조금, 종균 보급 사업, 우수 김치 선발·홍보를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품평회 및 페스티벌 김치의 날 행사 지원 등 홍보사업, 김치산업 실태조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품평회 및 페스티벌 개최, 김치 자조금, 김치산업 실태조사, 김치의 날 행사 및 홍보, 종균 보급 사업, 김치요리경연대회 등

☑ 시행근거(법령)

- ☑ 「김치산업 진흥법」 제6조, 제8조~제12조, 제15조~제17조, 제19조, 제20조
 - * 김치제조업체 경영개선,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통계조사, 연구시험사업 추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세계화 촉진, 자조금 적립지원,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 ☑ 연초(사업별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김치종균보급사업, 김치품평회 등) 사업별 내부 기준에 따라 공모·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정미선	044-201-2133

☑ 목적

-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증진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사업내용

- ☑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신규 지정 희망업체

※ 신규지정 신청자격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공산품 제조업체 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공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개척 지원(전용판매관 입점, 바이어상담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등)
(단, 박람회 및 기타사업 참가시 자부담 일부 발생)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 사업신청

- ☑ (신규지정) www.at.or.kr,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 ☑ (판로개척) 농공상기업 지정업체 대상 전체 이메일, 문자 안내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 대상자 선정

- ☑ (신규지정) 1차 서류평가(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사업계획서 검토) → 2차 현장평가(서류평가 60점 이상인 기업) → 3차 평가위원회 심의(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통한 최종 선정
- ☑ (판로개척) 지원사업별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김기표	044-201-2125

☑ 목적

-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분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단기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한 단기 과제 해결
- ☑ (심층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컨설팅사를 통한 심층 과제 해결,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및 기업 인턴십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 ※ 국산원료 범위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국산”으로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분야) 위생안전(3개), 품질개선(3개), 자유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
 - (단기) 국고 100%, 컨설팅 전 사전자문 지원
 - (심층) 국고 60%, 자부담 40%
 - ※ 과제한도 20백만원중 지원한도 12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 사업신청

- ☑ (단기·심층과제 해결) 온라인 접수, 공고일(사업연도 1분기 내)로부터 1개월 이내

※ 모집공고 : www.at.or.kr,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 대상자 선정

- ☑ (지원업체) 지원자격(국산 농산물 사용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 (전문위원·컨설팅사) 서류평가,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 수행계획의 적정성, 지원신청서와의 연계성, 적극성, 전문성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김기표	044-201-2125

☑ 목적

- ☑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산·관·학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신기술 실증 및 적용 모델 구축

☑ 사업내용

- ☑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지원, 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해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 10,500백만원/개소×국비 50%
- ☑ '26년 예산: 14,476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취합·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 신청기간: 해당 없음('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 대상자 선정

- ☑ 평가항목은 사업부지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이며, 정책 및 산업 전문가 8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 자체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①서류·발표 평가(100%), ②현장 심사(가부 결정)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이하영	044-201-2124

☑ 목적

-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을 통한 규격화 지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

☑ 사업내용

- ☑ 국내·외 식품표준 제·개정 대응 등을 통해 가공식품 관련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규격화 등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 ☑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책기반 강화, 기업성장 지원 및 소비저변 확대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춘 기관
 - * 사업시행기관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한국식품연구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1,200백만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284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산업표준화법 제40조

☑ 사업신청

- ☑ 사업 신청 기간 등은 내내역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별도 공고
 - ※ 내내역사업 : 가공식품KS 및 국제표준 대응,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대상자 선정

해당없음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유주영	044-201-2138
	푸드테크정책과	송하나	044-201-2122

☑ 목적

-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 사업내용

-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정책연구) 제조업체·소비자 조사를 통해 업계의 원료 사용 및 판매 현황 등 주류산업 실태 파악
- ☑ (발효제 보급지원) 전통주 등 제조업체 대상 품질 고급화 및 미생물 자원 확보
- ☑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양조장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 (전통주 산업발전 학술연구) 전통주 산업체 활용 가능 기술 연구
- ☑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및 전통주 갤러리 운영 등 전통주 육성 및 소비 촉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도 예산: 2,489백만원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정책연구) 110백만원
각 조사 항목별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및 배포 지원
 - (발효제 보급지원) 140백만원
발효제 연구 추진 및 신종 발효제 개발 지원
 - (양조장 역량 강화 컨설팅) 160백만원
컨설팅 대상 양조장 방문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 (전통주 산업발전 학술연구) 100백만원
발효, 양조, 유통기술 및 품질 개선 등 기술 연구 지원
-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1,979백만원
판로 확대 지원 및 유통·소비 프로모션

☑ 시행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경영개선 지원), 제7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제9조(통계조사),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품평회 개최),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건강한 술 문화 조성 등), 제22조(품질인증),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상반기(사업별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내부 기준에 따라 공모·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허창각	044-201-2136

☑ 목적

- ☑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질적 제고, 경영안정 등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

☑ 사업내용

-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체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소금 등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입에 소요되는 조직화 제반 비용 지원
-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별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 지원내용 및 예산

- ☑ '26년도 예산 : 1,375백만원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450백만원, 보조율 50%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925백만원, 보조율 50%
-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대상 법인·조직 등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인센티브)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5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배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 대상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
 -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4분기(지자체)

☑ **대상자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정
 - 동일 권역 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과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우선하여 배정
- ☑ 지자체는 배정 금액 내에서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 결과 보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박소영	044-201-2158

☑ 목적

- ☑ 식품외식분야 청년 취업희망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계약학과 운영, 구직자-기업 간 인력 미스매칭 해소

☑ 사업내용

- ☑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전통식품 기술사업화 교육 운영
- ☑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미래혁신식품 계약학과 운영 지원
- ☑ 청년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식품분야 교육과정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학교) 및 단체
- ☑ 식품외식기업 및 식품외식산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교육과정 운영비, 인턴 연수비, 계약학과 교육생 등록금 등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

☑ 사업신청

- ☑ 1~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FIS 홈페이지, 메일 등 신청

☑ 대상자 선정

- ☑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및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박다움	044-201-2118

☑ 목 적

- ☑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 사업내용

-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 비용 지원
-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 시설 확보·개보수 자금 등
- ☑ 지원 기준 : 용자 80%, 자부담 20%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사업신청

- ☑ 장소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 신청기간 : 정기(전년 12월~당해 4월)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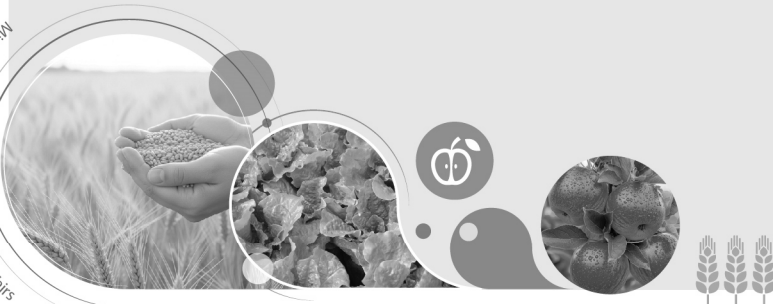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대상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김기표	044-201-2125

식품

6-4 식생활, 식품소비



☑ 목 적

- ☑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 사업내용

-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20%,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온라인 : 민간업체·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 오프라인 :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비용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사업신청

- ☑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유통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
- ☑ 신청기간 : 당해 사업시행 년도 1월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26.1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이지은	044-201-2686

☑ 목적

-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

-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신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아동) 2008.1.1. 이후 출생자
 - (청년) 1992.1.1~2007.12.31. 출생자
-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 ☑ 지원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 지원 금액 :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월 10만원/4인 가구)
- ☑ 지원 기준 : 국비 50%(서울 30%), 지방비 50%(서울 70%)
- ☑ '26년 예산 : 국비 73,991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홈페이지, ARS
- ☑ 신청기간 : '25.12.22~'26.12.11

☑ 대상자 선정

- ☑ 지원대상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결정 후 농식품 바우처 지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고은지	044-201-2275

☑ 목적

- ☑ 바른 식문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국민 대상 식생활 교육 지원

☑ 사업내용

- ☑ (인프라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우수체험공간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 (맞춤형 교육)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학생)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이론 및 텃밭·농촌 체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조리 실습 교육, 교구·교재 개발 등 지원
 - (군인·1인가구·고령자) 군 장병·1인 가구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한 식생활 실천 유도,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교육 제공
 - (교육인력) 학교 영양(교)사, 보육교사 등 전문가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가치확산) 식생활교육 주간(9.11) 운영,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맞춤형 식생활교육 사업비, 인프라 구축 사업비, 홍보비 등
- ☑ 지원 기준 : (민간)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 ☑ '26년 예산 : 3,175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사업신청

- ☑ 2026년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1월 중 기초지자체 공모 접수 예정으로 공모 기한 내에 사업 추진계획서를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 공문 접수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역량, 집행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색을 갖춘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초지자체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김 현	044-201-2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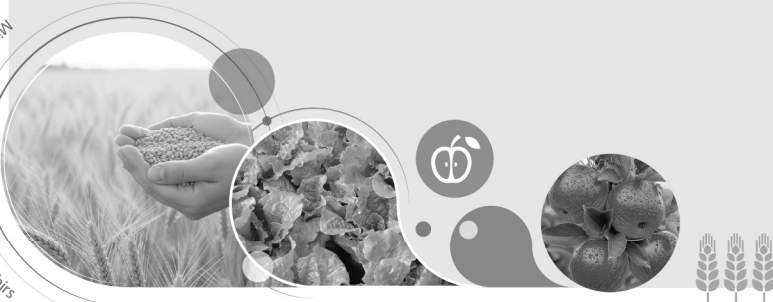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식품

6-5 농식품수출



☑ 목적

- ☑ 농식품 수출 쏠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 사업내용

- ☑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 쏠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사업(보험, 인증,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현지화) 농식품 수출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수입등록·검사, 라벨링 현지화 등 지원
- ☑ (상품개발)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수출업체별 수요에 따라 배정예산 및 지원기준 내에서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사용
-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 지원비율, 한도 등 사업별상이

☑ 사업신청

- ☑ 장 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적

- ☑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안내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 ☑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환경 변화 즉각 대응, 수출 애로사항 수집·해소 창구 운영 등 직접 수행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정책홍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 지원내용 및 예산

- ☑ 민관합동협의회운영 : 협의회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지원사업 정책 홍보 등 지원
- ☑ '26년 예산 : 315백만원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시행기관(aT) 직접 수행
- ☑ 운영기간 : 협의회·위원회 등 상시 운영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강태원	044-201-2172
		정다빈	044-201-2175

☑ 목적

- ☑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수입국 검역관 초청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 CSA 협정에 따른 지정기관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단지 소속 수출농가에 대해 조직화 및 생산관리 지원
 - 안전성 관리 :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등) 등 지원
 - 검역관 초청 : 對미 배·사과 현지 검역을 위한 검역관 초청비 등 지원

☑ 사업신청

- ☑ 장 소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 별도 선정절차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적

- ☑ 수출전략형 유망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확대 여건을 조성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

☑ 사업내용

-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수출선도기업의 현지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및 현지마케팅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현지 바이어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현지 시장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제품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수출상담회, 수출 품목 품평회 등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하경	044-201-2169

☑ 목적

-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 사업내용

- ☑ 저온저장시설 임차 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 가공식품 수출업체 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 국산 신선농산물 및 주원료가 국산인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저장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 시행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 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조직화 및 수출확대 가능성,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며, 신선품목을 우대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정영락	044-201-2177

☑ 목적

- ☑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 및 디지털 인력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수출 확대

☑ 사업내용

- ☑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온라인 전문인력 채용, 콘텐츠 제작 등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사업신청

-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정영락	044-201-2177

☑ 목 적

-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및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우수 외식브랜드 홍보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사업내용

- ☑ 박람회 참가, 바이어 알선 등 진출 지원,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제공, 맞춤형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외식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 ☑ '26년 예산 : 1,111백만원
 -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672백만원, 6개국 지원, 보조율 80%)
 -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360백만원, 15개사 지원, 보조율 80%)
 - 해외진출 활성화 워크숍(39백만원, 1회, 보조율 100%) 및 외식수출지원사업운영 및 정보조사(40백만원, 1회, 보조율 100%)

☑ 시행근거(법령)

- ☑ 외식산업 진흥법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aT 외식산업지원시스템(atfis.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외식산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건실성, 성장성, 해외진출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함

* 각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이 상이하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요망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박소영	044-201-2158

☑ 목적

- ☑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유통환경 구축지원

☑ 사업내용

-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 ① CA저장고(신규시설, 개보수)
 - ② CA질소발생기(고정식, 이동식)
 - ③ 저온저장고(신규시설)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 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2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 지원내용 및 예산

- ☑ CA 등 저온유통환경 구축 위한 신규시설 및 개보수 공사, 설비 설치비용 등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사업신청

-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항목은 사업계획 적정성, 조직화 및 수출확대 가능성,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원물 확보 여건, 사업규모 적정성, 상생협력 계획, 시설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며, 신선품목을 우대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정영락	044-201-2177

☑ 목적

- ☑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수출전문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수출업체 및 농가 등
 -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품질 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 마케팅협의회 운영 :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 마케팅사업비 등 지원
 - 전문인력육성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방정부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등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적

- ☑ 통상환경 변화, 해외 비관세장벽 강화 등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등에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시장정보를 조사하고, 수출업체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파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해외정보조사) : 수출시장 현안 및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KATI(농식품수출정보) 사이트 운영 지원
- ☑ (수출홍보사이트) : 우리 농식품 및 수출사업의 상설 해외 홍보 및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사이트(k-foodtrade.or.kr) 운영 지원
- ☑ '26년 예산 : 4,280백만원

☑ 사업신청

- ☑ 장소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 내내역사업 : 해외정보조사·전파,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강태원	044-201-2172
		정다빈	044-201-2175

☑ 목적

-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수출사업자(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용 도 : (운영자금)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시설자금) 수출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 ☑ 지원금리 : (운영자금)고정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 ☑ 지원비율 : (운영자금)국비 용자 80-90%, (시설자금)국비 용자 80%
- ☑ 지원기간 : (운영자금)1년, (시설자금)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시행근거(법령)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 사업신청

- ☑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 신청시기·방법 : 정기(1월), 온라인·우편·방문

☑ 대상자 선정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사업대상, 수출, 구매실적 및 계획, 신청제한 대상 등 사업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선정('25.3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 적

- ☑ 수입국의 비관세장벽(검역, 안전성 등)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국가·품목별 맞춤형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 사업내용

- ☑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내용)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재해(폭우, 폭염, 냉해, 가뭄 등) 피해 경감 및 검역요건 충족 등에 필요한 농기자재 보급 지원
- ☑ ('26년 예산) 1,400백만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로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실적, 사업적정성, 기술적정성,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사업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적

- ☑ 수입국의 비관세장벽(검역, 안전성 등)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국가·품목별 맞춤형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 사업내용

- ☑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내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한 온실(육묘장 등 포함) 신·개축 지원
- ☑ ('26년 예산) 1,500백만원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로 공문 제출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실적, 사업적정성, 기술적정성, 성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사업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박건우	044-201-2176
		임성현	044-201-2173

☑ 목적

- ☑ 검역협상 타결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된 국가·품목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및 국가별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사업내용

- ☑ 국가별 검역해소품목과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유망품목 선정,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검역해소품목)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
- ☑ (전략품목육성) 수출 전략품목 제조·수출업체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검역협상이 타결된 품목의 상품개선(포장, 라벨디자인 개발 등), 국가별 수출시장에 맞는 전략·유망품목 발굴, 해외 마케팅 등 지원
- ☑ '26년 예산 : 3,786백만원

☑ 사업신청

-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또는 aT 해외지사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품목 적절성, 효과성,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044-201-2174
		이초은	044-201-2180

☑ 목적

- ☑ 온라인·모바일 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안전성·우수성 등 긍정적 이미지 구축으로 수출확대 저변 마련

☑ 사업내용

- ☑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뉴미디어 매체(동영상 플랫폼, SNS 등)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콘텐츠 제작·송출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SNS 채널, 모바일 어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콘텐츠 제작비, 광고 송출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사업신청

-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하경	044-201-2169

☑ 목적

- ☑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을 다변화하여 대외적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출 성장세 지속 도모

☑ 사업내용

- ☑ 신흥시장별 맞춤형 개척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 눈높이 마케팅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현지 바이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현지 시장 분석,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미디어 홍보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

☑ 사업신청

- ☑ 장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24 사이트(www.kotra.or.kr)
* KOTRA 무역투자24에 공고,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하경	044-201-2169

☑ 목적

- ☑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구축하여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수시 홍보·판촉,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 ☑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식품관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식품관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해외 유력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구축을 통한 신규 입점 및 상시 홍보·판촉 등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사업신청

- ☑ 장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정영락	044-201-2177

☑ 목적

- ☑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고, 냉동·저온 등 유통지원,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수출 농식품의 신선 향상, 품질 유지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수출 농식품의 해외 현지물류(보관, 운송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현지 유통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료, 냉장·냉동 운송비 등 지원
- ☑ '26년 예산 : 10,740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044-201-2174
		이초은	044-201-2180

☑ 목적

- ☑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 사업내용

- ☑ 수출경영체에 신규거래선 발굴 기회 및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 등
 -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K-Food Fair,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 판촉 비용 등 지원
- ☑ '26년 예산 : 38,036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044-201-2174
		이초은	044-201-2180

☑ 목적

- ☑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내 식품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 커뮤니케이션 구축 및 동반성장 지원

☑ 사업내용

- ☑ 해외진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진출 식품기업(현지법인 등) 및 국내 수출희망 중소기업
 - * 세부사항은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 확인 필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 공동디자인 개발, 해외판촉 등 공동마케팅
- ☑ '26년 예산 : 445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의 공동진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사업비 조정 등)
 - * 공동진출 사업계획서 선정 이후 사업에 참여할 신규 중소 수출기업 별도 모집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남주	044-201-2174
		이초은	044-201-2180

☑ 목적

- ☑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에 필요한 식품성분 분석, 국내외 할랄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지원, 국제 공인 할랄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중동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

☑ 사업내용

- ☑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新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식품성분 분석, 수출애로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인력양성 등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등
 -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식품성분 분석, 가공·공정기술, 시제품 개발, 감각평가, 인증 컨설팅 등 지원
- ☑ '26년 예산 : 1,309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 신청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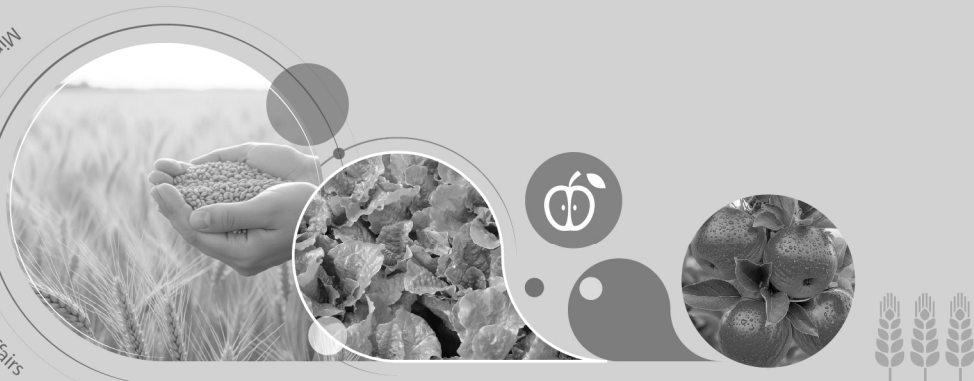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고려함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김태규	044-201-217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7



농생명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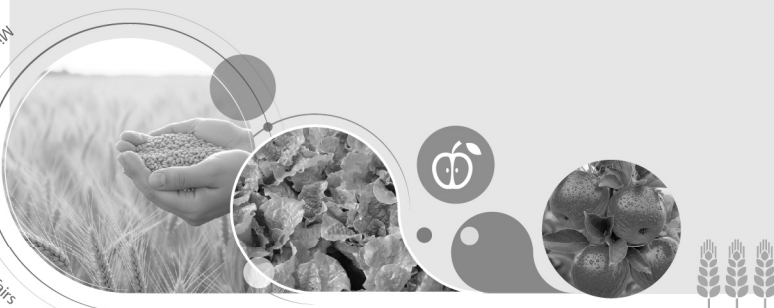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생명산업

7-1 스마트농업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적

-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사업내용

-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 국비 지원 금액 : 지자체당 7~61백만원

* 권역별 사업특성, 사업규모,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 '26년 예산 : 총 사업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사업신청**

- ☑ 시·도지사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월까지)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신청)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김상호	044-201-2419

☑ 목적

- ☑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여 청년의 스마트팜 진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 청년의 스마트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적정대상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개소당 부지 5ha 이상 및 온실 4ha 이상
- ☑ '26년 예산 : 25,5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신청

- ☑ 지원 자격 : '25년도까지 해당 사업에 선정된 시·도(시·군)

* 선정 시·군 : ('20) 평창, 제천 ('22) 양구, 영천, 장수, 신안 ('23) 삼척, 김제, 밀양 ('24) 서산, 영암, 예천, 영동 ('25) 양양, 제주

- ☑ 지원 요건

- 입지 인허가,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에 적합하여야만 지원

☑ 대상자 선정

- ☑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최윤종	044-201-2427

☑ 목적

- ☑ 주요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으로 대규모 노지 스마트 전환과 가공·유통 등 전·후방산업과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단위 노지 스마트농산업 확산 거점 및 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 ☑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과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작물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구축, 기술역량 제고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시·군 단위 컨소시엄 (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등)으로 관할 시·도에서 적합 후보지로 인정하는 컨소시엄
 - 지방정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도 계획」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시·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 생산자단체: 생산지구 내 참여 농업인(지구 내 농지 소유, 임대, 출자 등)으로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로, 원칙적으로 법인 형태로 하되, 신규(예정) 조직의 경우 법인화 계획 제출 및 이행 의무
 - 솔루션기업: 생산지구에 도입하기로 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기술 및 대규모 보급역량을 보유한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AI 관련 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생산면적 기준 500ha 내외 규모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조성, 기술역량 제고 등 비용 지원
 - * 재배농가 밀집도가 높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500ha 내외까지 단계적 확대가능
- ☑ 지원기준
 - 95억원/개소당(3년간) : 스마트기반조성(16억원), 솔루션도입(76억원), 기술역량제고(3억원)

* 부담률(%) : 스마트기반조성(국비60/지방비40/자부담0), 솔루션도입(50/30/20), 기술역량 제고(50/30/20)

- 연부율(3년간): (솔루션·기술역량) 1년차 40%, 2년차 30%, 3년차 30% (기반조성) 1년차 50%, 2년차 50%

* 예산규모와 지원률은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시·도 및 시·군) 및 자부담(생산자단체(농업인) 및 솔루션 기업 등)의 부담 비율은 사업 신청 전 컨소시엄 내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확보

☑ '26년 사업비(안): 10,300백만원(5개소)

☑ 사업신청

☑ 사업신청

- 생산자단체·지방정부는 솔루션 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장비 등 해당 주산지의 품목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고,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업체 등)을 구성

* 일부 솔루션별 적용 대상 품목, 솔루션 설명 및 효과 등의 정보는 농진원 홈페이지 (www.koat.or.kr)를 통해 확인 가능(게재를 희망하는 솔루션 기업도 요청 가능)

- 컨소시엄은 현장여건 및 농가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시·도)에 제출하고, 지방정부(시·도)는 기본계획을 검토 후 적합 후보지를 농식품부에 신청

* 복수의 후보지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순위까지만 제출하도록 함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스마트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서면 또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최윤종	044-201-2427

☑ 목적

- ☑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사업내용

- ☑ 집적화된 과학기술(ICT, AI)산업과 농업의 융복합으로 농업의 첨단산업화 도모 및 스마트농산업 혁신기반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연구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2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법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사업신청

- ☑ 공고예정

☑ 대상자 선정

- ☑ 연구용역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엄재희	

☑ **목적**

- ☑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분야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및 산업고도화를 촉진, 국민체감형 스마트 농업 제품의 보급 확산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 2년 이내 농식품 분야 제품 · 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AI 기반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대상을 타입별로 구분하여 지원 (타입1 : 1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제품·서비스 / 타입2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제품·서비스)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법 제3조, 제11조 등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등 마련 중

☑ **대상자 선정**

- ☑ 신청방법 등 마련 중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 목적

-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현장·경영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영농 정착 도모

☑ 사업내용

-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자체 보육센터
 - *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여 교육 운영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사업신청

-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 교육생 모집 신청 안내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별도 공지(4월 예정)

☑ 대상자 선정

-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 교육생 선발은 적격심사,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7월 예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산을 통해 품질향상 및 호환성 증대와 농산업체 제품 경쟁력 제고, 기술인력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 스마트팜 농산업체 표준적용 제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및 제품개선·실증 지원, 검정비용 바우처 지원, ICT기자재 표준화 요소 도출, 표준화 동향분석 및 표준 관리, 스마트팜 ICT기자재업체 재직자 전문교육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 ‘스마트팜코리아(smartfarmkorea.net)’에 등록된 업체 또는 본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가 국가표준을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품 개선 및 시제품 제작·실증, 국가표준을 적용한 제품의 검정(바우처) 등 지원(이하 ‘표준적용 등 지원’)
 - 표준화지원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 국가표준 적용 지원대상 농산업체 모집·선발 및 표준적용 지원 사업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하도록 지원
 - 스마트팜 ICT기자재 농산업체 재직자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지원(이하 ‘재직자 전문교육’)

☑ 사업신청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별도 공지(1분기 예정)

☑ 대상자 선정

- ☑ 표준적용 지원내용에 따라 선정 시기 상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 (www.koat.or.kr) 및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공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 검증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

☑ 사업내용

- ☑ 스마트팜 기자재·생육 실증 등을 위한 전문실증서비스 및 혁신밸리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실증하는 기업의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 (1차지역) 전북(김제), 경북(상주) / (2차지역) 전남(고흥), 경남(밀양)
 - * (입주대상)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연구조직, 농업인
 - * 단,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실증단지 운영기관의 운영규칙(편람) 등에 따름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실증단지 운영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위탁사업비 등) 지원
 - (실증기업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청년농 기술 지원)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
- ☑ '26년 예산 : 6,610백만원

☑ 사업신청

- ☑ 실증단지 내 공실이 발생하였거나 모집이 가능한 여건이 되었을 경우,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실증단지 운영기관)은 입주대상 모집 실시
- ☑ 실증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기한 내 신청서 제출(실증단지 운영기관 공고 참고)

* 단, 입주대상 세부선정 기준 및 절차는 각 실증단지 운영기관의 운영규칙(편람) 등에 따름

☑ 대상자 선정

- ☑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 연구조직, 농업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최윤종	044-201-2427

☑ **목적**

- ☑ 스마트팜 단지, 테스트베드 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 **사업내용**

-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행주체) 지방정부

☑ **지원내용 및 예산**

- ☑ 1,124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업신청**

- ☑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엄재희	

☑ **목적**

- ☑ 작물, 재배방식, 규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실제 영농환경과 동일한 시험·시연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신청**

- ☑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사업시행지침 수립 시 변경 가능)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엄재희	

☑ 목적

- ☑ 스마트농업 도입 능가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업혁신 가속화

☑ 사업내용

- ☑ (홍보, 교육) 대국민 홍보를 통한 스마트농업 관심 및 참여도 제고, 상담센터, 교육 운영 등 현장문제 해소 및 농업인 역량 강화
- ☑ (산업육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민간중심 정책 제도 발굴
- ☑ (실태조사) 산업계 조사를 통한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정책적 환류 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 공고 시 지원 자격 및 요건 상세 안내 예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스마트농업 홍보·교육, 실태조사·성과분석, 스마트팜 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 등 지원
- ☑ 지원기준 : 국비 100% (민간경상보조)
- ☑ '26년 예산 : 국비 967백만원
-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

☑ **사업신청**

- ☑ 신청방법/신청기간 : 농진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기관(농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및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김상호	044-201-2419

☑ 목적

-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및 농업인, 농산업 기업 등의 농식품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분석데이터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 농식품 데이터 수집·연계 확대를 통한 농업인·농지기반 분석정보, 공간정보(GIS) 제공 및 표준 데이터 관리 지원체계 구축
- ☑ 데이터 안심구역 활성화 및 분석 데이터셋 개방
- ☑ 농업인, 농산업 기업 등에 농식품 데이터 융복합·가공 서비스(API)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교육·홍보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2,523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서 사업시행기관 규정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박해인	044-201-1414

☑ 목적

- ☑ 농업인, 기업 등이 수집하는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 농업인·기업·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제공,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AI 솔루션 개발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스마트농업 서비스(솔루션) 보유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 나라장터, 조달청,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건전성, 사회적 의무 이행, 기술력 등에 문제없는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스마트팜코리아(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제공,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개발 기업 지원 등
- ☑ '26년 예산 : 4,219백만원(국비 100%)
- ☑ 지원기준 :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 상이(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 스마트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및 농업 모델 알고리즘 개발 등
-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법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나라장터(용역)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공모)를 통해 신청
- ☑ 신청기간 :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 또는 농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사업시행자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및 보조사업자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
 - 사업이해도, 능력, 추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등 지표에 대하여 심사
 - 재무 안정성, 사업능력,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박윤희	044-201-1427

☑ 목적

- ☑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AI 모델 개발·실증 등을 통해 민간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영농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개최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행주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1,194백만원
-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팀별로 스마트농업 AI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모델로 원격재배·실증을 통해 모델 검증 및 데이터 수집(추후 사업시행지침 마련 후 변경될 수 있음)

☑ 시행근거(법령)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신청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접수

☑ 대상자 선정

- ☑ 만19세 이상으로 구성된 최소 3인~최대 10명의 팀 구성
- ☑ 예선과 본선을 거쳐 시상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엄재희	044-201-2421

☑ 목적

- ☑ 농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생산성, 비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하고 솔루션 고도화 지원

☑ 사업내용

- ☑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 적용 및 ②고도화(1단계 한정)
 - 스마트팜 기업, 데이터·AI 관련 기업 등 민간에서 상용화(제품화)가 완료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을 농가에 적용 지원
 - 데이터 기반 서비스·솔루션의 기능 개선 및 추가 등 고도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솔루션, AI 등 스마트농업 기업과 다수 농가가 구성한 컨소시엄(세부시행지침 확정 후 변경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 5,552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 사업신청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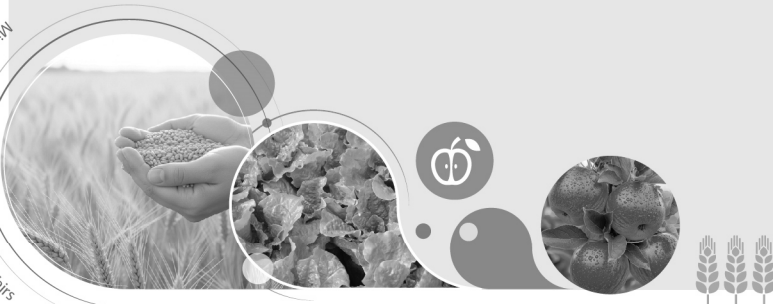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시장성 등을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엄재희	

농생명산업

7-2 종자, 곤충, 미생물, 도시농업



☑ 목적

-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 사업내용

-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등)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국내채종계약 등),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온실, 수직농장,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 생강종구, 차나무, 뽕나무 등
- ☑ 지원 기준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 ☑ '26년 예산 : 3,825백만원(사업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결정)
* 사업기간은 1~2년, 총사업비 기준 최소 3억~최대 20억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사업신청

- ☑ 장소 : 사업장 해당 지자체
-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 대상자 선정

-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적

- ☑ 종자업체에게 무병 모수 보존·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무병묘 생산 확대 유도

☑ 사업내용

- ☑ 종자업체에게 5대 과수* 무병 모수 보존·유지 및 무병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가림시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유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 지원자격 및 요건

- ☑ 5과종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병 모수를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단체(농협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비가림하우스, 묘목재배 베드, 환풍기 및 관수·소독 등에 필요한 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지원
-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사업신청

- ☑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모 참여

☑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신청 서류를 평가하여 선정
 - 선정기준항목: 신청 작물, 모수 모유 여부, 업체 규모, 시설설치 규모, 사업계획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안진석	054-912-0232
종자검정연구센터		박원관	054-912-0240

☑ 목적

- ☑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따라 품종 무병화 추진, 모수 및 보급묘 바이러스 검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 사업내용

- ☑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 ☑ 지원기준 :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농업법인 또는 공공기관(국비 100%), 지자체(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사업신청

- ☑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 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

☑ 대상자 선정

- ☑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기준(안)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안진석	054-912-0232
종자검정연구센터		박원관	054-912-0240

☑ 목적

- ☑ 과수 재배농가의 무병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 확대 유도

☑ 사업내용

-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 지원자격 및 요건

- ☑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입한 농업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5대 과수 무병묘 구입 비용 일부(일반묘와의 차액) 지원
 - 5대 과수(사과,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무병묘 1,500원/주
* 해당연도 공급량에 지원금 신청률 95%를 적용한 수량에 균일 지원
 -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당 최대 10천주까지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사업신청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업체에 신청(서식 1)

☑ 대상자 선정

- ☑ 무병묘 생산업체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토대로 국립종자원에서 적정여부(종자업체의 무병묘목 생산 등)을 확인하여 선정 지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안진석	054-912-0232
종자검정연구센터		박원관	054-912-0240

☑ 목적

- ☑ 과수 무병묘 생산을 위한 우량묘목(원종·모수) 생산·공급 기반 조성을 통해 무병 재료(접수, 대목) 생산 확대와 무병묘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 과수 무병묘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병 원종·모수 확보와 무병재료(접수, 대목) 생산 및 기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 관련근거 :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FTA기금)」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05)

☑ 지원내용 및 예산

- ☑ 무병 원종·모수, 무병재료 생산 및 기반조성 비용 등 지원
- ☑ 지원 기준
 - 생산지원(민간경상보조) : 국고 60%, 자부담 40%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 국고 100%
- ☑ '26년 사업비 : 1,800백만원
 - 생산지원(민간경상보조) : 1,500백만원(국비 900, 자부담 600)
 -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 300백만원(국비 30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사업신청

- ☑ 해당 없음

☑ 대상자 선정

☑ 해당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안진석	054-912-0232
종자검정연구센터		박원관	054-912-0240

☑ 목적

- ☑ 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을 예방·방지

☑ 사업내용

- ☑ ①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구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②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대상 : 채소 전 작물(옥수수, 들깨, 참깨, 강낭콩, 땅콩, 작두콩 포함),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만 해당(종구 생산은 제외)
- ☑ 2026년 예산 : 6,000백만원(국비 6,0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같은 법 제11조(중소 종자업체 및 중소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사업신청

- ☑ 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30.(금)

☑ 대상자 선정

-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신청요건, 구비서류, 사업비(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26.4~5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정명재	054-912-0162

☑ 목적

- ☑ 국내 종자기업의 부족한 디지털육종 역량을 신속히 보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으로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 디지털육종 컨설팅 및 분석 비용 지원 및 디지털육종 활용플랫폼 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종자기업, 종자산업진흥센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디지털육종에 대한 컨설팅 및 맞춤형 전문 분석 비용, 디지털육종 H/W, S/W 등 플랫폼 구축·운영
-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국고 10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장 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신청기간 : 당해연도 1~2월

☑ 대상자 선정

-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적

- ☑ 신제품 개발 및 상업화(수출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육성품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 민간 육성품종 지원
 - 신제품 육성개발 시험 분석, 농가실증시험, 원종증식, 정선가공, 품질검사, 홍보마케팅 등 소요 비용의 최대 70% 지원
- ☑ 해외박람회 지원
 - 해외박람회 출품 시 박람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자) 중소기업 및 개인육종가
- ☑ (지원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동법 제37조의2에 따라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한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예산) 394백만원
- ☑ 지원내용
 - 민간 육성품종 지원: 신제품 육성개발 시험 분석, 농가실증시험, 원종증식, 정선가공, 품질검사, 홍보마케팅 등 소요 비용의 최대 70% 지원
 - 해외박람회 지원: 해외박람회 출품 시 박람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 사업신청

- ☑ 별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립종자원에 제출
- ☑ 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사업지침 참고)
- ☑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30.(금)

☑ 대상자 선정

-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사업추진역량, 중복·편중 지원 여부, 업체의 종자산업 발전 기여도, 관계 법령 위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구지윤	054-912-0163

☑ 목적

- ☑ 벼, 콩, 보리, 밀, 호밀 등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상위단계 종자 직접생산비(인건비,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급종 생산 기반 조성

☑ 사업내용

- ☑ 벼, 콩, 보리, 밀, 호밀 등 보급종 상위단계 종자인 원원종 및 원종의 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비(인건비, 재료비)를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상위단계종자(원원종·원종)를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상위단계 종자 생산에 필요한 직접생산비(인건비, 재료비)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6,328백만원(국비 6,328백만원)

☑ 사업신청

- ☑ 별도의 사업신청 없음

☑ 대상자 선정

- ☑ 별도의 대상자 선정 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종자과	권동의	054-912-0189

302 종자 구입비 지원

☑ 목적

- ☑ 국산 밀 품질 향상을 통한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보급종 구입비 지원

☑ 사업내용

- ☑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품종 순도가 높은 밀 정부 보급종 구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6년~'27년 농식품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사업」 참여 업체
- ☑ 국립종자원으로부터 '26년산 밀 보급종을 우선적으로 신청·공급 받은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계약 면적에 파종할 밀 보급종 구입비의 약 50%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국립종자원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에 따라 결정된 밀 보급종 공급가격의 약 50% 지원
- ☑ '26년 예산 : 1,663백만원(2,469톤×1,347천원×50%)

☑ 사업신청

- ☑ 지정형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음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 ☑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
- ☑ 사업부서는 사업대상자가 등록한 사업내용 검토 후 최종 승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종자과	양성철	054-912-0184

☑ **목적**

- ☑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종자 관련 학술행사, 간담회 등을 통한 종자수출 확대 등 판로개척지원과 종자산업 정책 방향 및 정보 교류 지원

☑ **사업내용**

- ☑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및 종자산업 관련 정책홍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온라인 국제종자박람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박람회 기간 전시포 조성 및 운영, 종자정책 홍보 심포지움 연사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적

- ☑ 종자 생산·유통을 체계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문화된 종자 가공·처리 시설 구축

☑ 사업내용

- ☑ 종자기업 공동 활용형 종자 가공·처리시설 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김제시)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충실한 종자를 선별하고 전처리를 통하여 코팅, 펠렛팅 하여 종자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기업 공동·활용형 종자 가공·처리 시설 구축(1개소)
-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적**

- ☑ 민간기업의 육종연구 기술지원, 수출 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등 종자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및 종자기업 육종 관련 전문분석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종자산업진흥센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10조(재정 및 금융지원 등), 동법 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 적**

- ☑ 국내 종자기업의 스마트농업 맞춤형 품종 개발·실증을 위한 지능형온실 구축

☑ **사업내용**

- ☑ 종자기업 공동활용형 첨단지능형온실 구축(1식)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방자치단체(김제시)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스마트농업 맞춤형 종자 개발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기존 유리온실을 환경조절이 가능한 공동활용형 지능형 온실로 개선을 통한 종자기업 공동활용형 첨단지능형온실 구축
- ☑ '26년 예산 : 500백만원(국비 50%)

☑ **시행근거(법령)**

-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고대영	044-201-2482

☑ 목적

- ☑ 도시농업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민들의 교육 접근성 강화 및 민간 활성화 유도,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 ☑ 도시농업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도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할 지도·교수요원 양성 교육과정 지원
 - 운영비, 교재 구입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지원
- ☑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체험지원
 - 미래세대 대상 도시농업 체험·교육 및 텃밭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농업 관리사 학교텃밭 파견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민영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교육과정 운영비 등
- ☑ 지원 기준 : 국비 50%~100%, 교육기관 자부담 50~0%
- ☑ '26 예산 : 671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공모사업으로 도시농업교육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메일, 방문신청('25.12월)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항목은 교육과정 구성, 예산편성 기준의 타당성 등 교육과정 사업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성원	044-201-2460
		박원배	044-201-2418

☑ **목 적**

- ☑ 도시농업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농업 및 연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내용**

- ☑ 도시농업 종합정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도시농업 및 연관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자체 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 '26년 예산 : 248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

-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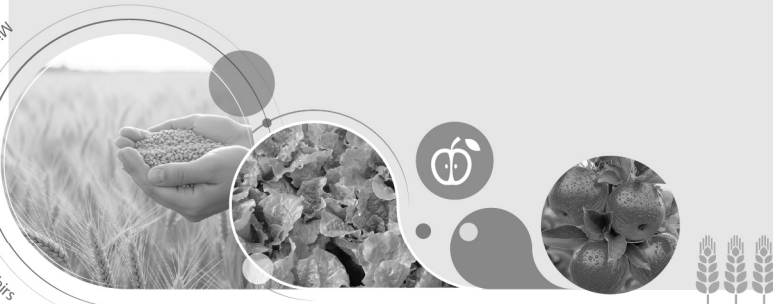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성원	044-201-2460
		박원배	044-201-2418

농생명산업

7-3 동물복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적

-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컨설팅 자문비의 일부
- ☑ 지원 기준 : 국비 40%(4백만원), 지방비 40%(4백만원), 자부담 20%(2백만원)
- ☑ '26년 예산 : 120백만원(국비 48, 지방비 48, 자부담 24)

☑ 시행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64조제1항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 ☑ 신청기간 : '26년 1월~2월(접수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 관련 서류 및 수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수행계획서와 지원자격 및 요건, 우선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경영체를 심사하고, 최종 선정된 경영체에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한지웅	044-201-2636

☑ 목적

-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 사업내용

-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 지원자격 및 요건

-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약취 방지시설,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37조제7항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 사업신청

-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월)
- ☑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시·군, 2~3월)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2~3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 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 ①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대상자 선정

- ☑ 전년도 기제출된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농림축산식품부, 1월)
 - 시·도는 시·군·구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
-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 자격·요건, 사업내용,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시·군·구, 3~4월)
-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도, 5월)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신준표	044-201-2292

☑ 목적

- ☑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윤리적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및 농장 동물의 복지수준 향상 유도

☑ 사업내용

- ☑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행사, FESTA 개최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판촉 및 교육·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및 홍보캠페인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 '26년 예산 : 국비 1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64조제1항
 -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사업신청

- ☑ 장 소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추진
- ☑ 신청기간 : '26년 3월 ~ 4월

☑ 대상자 선정

- ☑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선정심의회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5인 이내) 구성하여 평가, 최종 사업대상자 1개소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지웅	044-201-2636

☑ 목적

- ☑ 지자체 직영(시설위탁 포함)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지원으로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기반 확충

☑ 사업내용

- ☑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지자체 직영(시설위탁 포함) 동물 보호센터 건립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 지원내용 및 예산

-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한「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
 - 지자체 직영(시설위탁 포함)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
 - *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 ** 도심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입양실 리모델링 지원 가능
- ☑ 지원한도 : (광역) 총사업비 40억원 기준 최대 16억원까지 지원(국비40%)
(일반) 총사업비 20억원 기준 최대 6억원까지 지원(국비30%)
 - 유휴시설 활용한 입양실 리모델링 시 총사업비 5억원, 국비 2억원(국비 40%)까지 지원
 - *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초과분은 해당 지자체 부담

☑ 시행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5조(동물보호 센터의 설치·지정 등)

☑ 사업신청

-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시·군·구에 신속한 사업홍보 및 사업선정계획 실시
-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의 선정일정(시·군·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3월 중)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도는 자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관할 지역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 주민반대로 인한 부지 재선정 등 민원방지 및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시·도에서는 아래 요건을 필수적으로 포함**,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사업 부지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동의 여부, 유지보수 및 시설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필수요건) ①부지확보, ②사업기본계획수립(지자체장 결재), ③신축(기존 보호시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지역의 마을주민총회 등 (찬성의결), ④공유재산심의회, ⑤영향평가, ⑥지방재정투자심사, ⑦법적 제한사항 검토(행위허가 제한사항, 토지 관련 법률(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신준표	044-201-2292

313 유실유기동물 관리강화(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 목적

- ☞ 유실 유기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을 통한 개체 수 조절

☑ 사업내용

-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시·군·구)

☑ 지원내용 및 예산

- ☞ 마리당 20만원 (암수 평균 단가)
- ☞ 국비 20%
- ☞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 및 필요시 평균 단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암수 차등 지급 가능

☑ 시행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 사업신청

-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 사업신청방법 : 지자체가 공문 등으로 신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대상자 선정

- ☑ 각 지자체장은 관련 법령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희진	044-201-2627

314 One-welfare Valley 조성

☑ 목적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대상 개발 제품에 대한 기호·상품성 실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 사업내용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한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One-welfare Valley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충청남도 기 선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One-welfare Valley 조성 건축공사비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50~100%, 지방비 0~50%
- ☑ '26년 예산 : 7,1150백만원(국비)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시·도시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신청기간 :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사업공모(공문) 확인 필요
* 기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완료

☑ 대상자 선정

- ☑ 실증 종합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노금성	044-201-2657

☑ 목적

- ☑ 반려견 안전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맹견 및 사고견에 대한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 기질평가 발전협의회 운영
- ☑ 행동지도 훈련 프로그램 개발
-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광주광역시(2년차 사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질평가발전협의회 운영 및 행동지도 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480백만원
- ☑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294백만원
* 총사업비 980백만원(국비 294, 지방비 686)

☑ 시행근거(법령)

- ☑ 동물보호법

☑ 사업신청

- ☑ 신청대상 없음(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2년차 사업)

☑ 대상자 선정

- ☑ 신청대상 없음(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행동지도시설 설치 지원 2년차 사업)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조승열	044-201-2626

316 수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목적

- ☑ 온라인 플랫폼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사업내용

-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Chewy.com 등) 입점 및 해외 진출 공동 대응체계 마련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50백만원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신청기간 :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노금성	044-201-2657

317 수출시장 개척

☑ 목적

-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사업내용

-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사업신청

-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대상자 선정

-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노금성	044-201-2657

☑ 목적

- ☑ 유망시장 발굴, 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 사업내용

-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및 K-Pet 수출박람회 개최, 상품화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수출 유망국 시장조사, K-Pet 수출박람회 개최 및 상품 연구·개발 등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 ☑ 민간경상보조 70~100%
- ☑ 지원한도액 및 기준, 범위 등 사업별 상이

☑ 시행근거(법령)

-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의2(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5호(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 등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선정기준 항목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사업타당성, 제품경쟁력, 수행능력, 수출확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조원경	044-201-2657

319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

☑ 목적

-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생계안정 등을 위해 전·폐업 지원

☑ 사업내용

- ☑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임차농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철거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신청

- ☑ 장 소 : 시·군·구 개사육농장주 지원 담당 부서
- ☑ 신청기간 : '26.1.1.~'26.12.31.(구간별 지원단가 상이)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 개사육농장주 담당 부서에서 농장주 신청자료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 ☞ 시·도 검토 ☞ 농식품부 검토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백제헌	044-201-2281

☑ 목적

-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식용 목적 도축업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하여 시설가액 등 지원

☑ 사업내용

- ☑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도축상인(시설 소유주)

☑ 지원내용 및 예산

- ☑ 시설물잔존가액, 철거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신청

- ☑ 장 소 : 시·군·구 개식용도축상인 지원 담당 부서
- ☑ 신청기간 : '26.1.1.~'26.12.31.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 개식용도축상인 담당 부서에서 농장주 신청자료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 ☞ 시·도 검토 ☞ 농식품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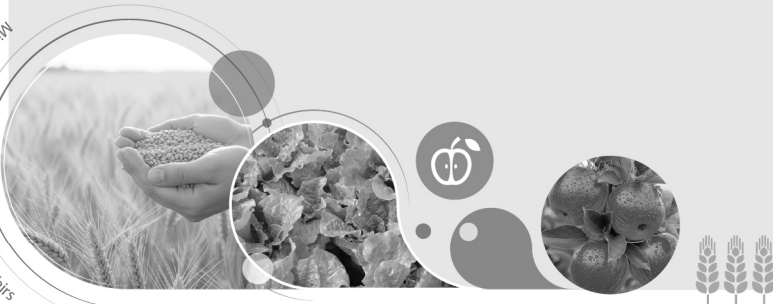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백제헌	044-201-2281

농생명산업

7-4 창업, 농산업 인력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적

- ☑ 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농업 농촌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분야의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도모

☑ 사업내용

-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분야
 - 예비창업자 : 농식품 분야 예비 벤처 창업자
 - 창업기업 :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 첨단기술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 :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품 판로 제공 등
 -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 멘토링 프로그램 등
- ☑ 지원 기준
 - 예비창업자 : 40팀 내외, 10~14.3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창업기업 : 300社, 30~6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 30社, 30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계속지원 기업 중 연말 창업진행도평가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상향 지급

☑ 시행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 사업신청

-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 소개 및공고
- ☑ 신청기간 : 매년 초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분야) 자격검토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심의조정위원회의 → 현장확인(필요시)
 - 사업·기술경쟁력과 대표자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 (첨단기술분야) 자격검토 → 서류 평가 → 발표 및 현장평가 → 심의조정위원회의
 - 사업·기술경쟁력과 대표자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투자 및 용자 등 자금조달 역량 제고 및 기업 혁신성장 견인

☑ 사업내용

-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용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 ☑ 지원기준 : 최대 13.5백만원/건
 -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국비 90%, 자부담 10%
 - * (우수기술평가, 소요자금평가) 국비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 ☑ 사업공고 : 매년 3월 초,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 신청기간 : 매년 3월 초 공고 이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 ☑ 기술평가 지원희망 기업 사업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기술평가 가능 여부 및 인증현황 등을 확인
 - * 기업 사업신청 서류 및 기술평가 가능여부 등 검토 → 적격일 경우 기술평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기술 기반의 농식품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민간 주도의 농식품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농식품 스타트업 발굴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IR·데모데이, 선정 스타트업의 R&BD 자금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액셀러레이터)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
- ☑ (스타트업)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예비) 창업자
*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社에서 자체 공고 및 선정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식품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운영자금
* 참여인력 인건비, 멘토링, IR 및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운영비
- ☑ 지원 규모 : 280백만원/社

☑ 사업신청

- ☑ 사업신청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 신청기간 : '매년 2월초 예정'
*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社에서 자체 공고·선정하므로 신청방법은 별도로 공지

☑ 대상자 선정

- ☑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후 사업이해도, 수행기관의 역량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절차 : 신청자격 검토(서류검토)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항목은 사업이해도, 수행기관 역량, 사업수행능력, 투자계획,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
 - * 평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지원으로 농식품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사업내용

-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및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지원요건)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및 스케일업 지원
* 민간투자사의 투자금과 1:1 매칭하여 국고지원 최대 5억원

☑ 시행근거(법령)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의2

☑ 사업신청

- ☑ 사업공고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매년초)
- ☑ 사업신청 :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검증 → 심의조정위원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 적

- ☑ 다양한 유통사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으로 우수창업제품의 홍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 사업내용

- ☑ 창업 초기업체 제품의 원활한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연계, 판로 네트워킹 등을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벤처육성기업 등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7년 이내 농식품창업기업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농식품 창업제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 사업신청

-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를 통해 사업 소개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대상자 선정

- ☑ 내역사업별 내용에 맞게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대상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 목적

- ☑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이 소액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 기업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관련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사업신청

- ☑ 접 수 처 : 농식품투자정보플랫폼(assist.apfs.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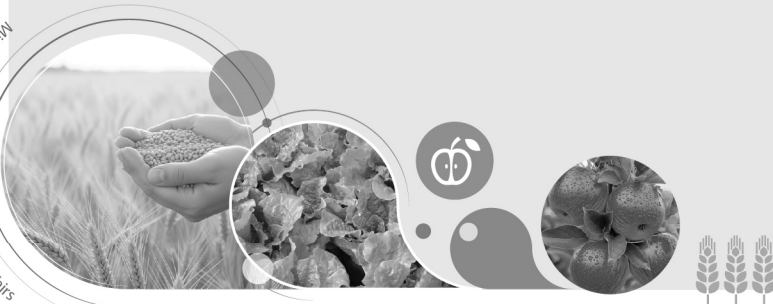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박유영	044-201-2422

농생명산업

7-5 농산업수출, 국제개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적

-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 사업내용

-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 지원 기준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국고 50~70%, 선정기업 자부담 30~50%
 - 기타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국고 100%

☑ 시행근거(법령)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 사업신청

- ☑ 장소 :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항목은 사업능력, 사업의지, 준비상황, 재무안정성 등이며, 우선 사항은 정책 적합 품목, 국내 반입 여부 등임
- ☑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내 자체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수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양지혜	044-201-2041

☑ 목적

-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지원으로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기회증대를 통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지원을 통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 사업내용

-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 제조판매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비용 일부
-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 '26년 예산 : 701백만원(국비 491, 자부담 210)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사업희망자는 세부시행계획(한국동물약품협회 시행)에 따라 한국동물약품 협회에 사업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박준호	044-201-2476

☑ 목적

-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 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 3) 산업재산권 출현
 -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 1) 시험인증 :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임상·비임상시험 비용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과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인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다년(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함. 다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필요예산 및 사업결과(예산집행 결과 및 증빙서류 포함)는 제출해야 함

-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등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 3) 산업재산권 출현 : 품목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수출혁신품목 육성사업 비용 일부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국비 250백만원 한도(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1항 및 제2항

☑ 사업신청

-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박준호	044-201-2476

☑ 목적

- ☑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국제적 수준의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보호 등 축산업 발전 기여 및 수출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 국제기구(WHO, PIC/S 등) 수출국가별(EU, 미국, 일본 등) GMP 기준관련, GMP 적용 현장교육 및 컨설팅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출업체 중
 - 수출국가의 GMP 적용요건에 따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업체
 -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을 위해 국제 수준 및 국내 GMP 선진화 기준(안)에 부합한 제조시설 운영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교육 필요 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동물용의약품 GMP 컨설팅 비용 일부
-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한도(국비 20, 지방비 15, 자부담 15)
- ☑ '26년 예산 : 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박준호	044-201-2476

☑ 목적

- ☑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 비용 일부
- ☑ 지원 기준 : 국비(융자) 100%
 - 업체당 최대 국비 20억원 한도
- ☑ '26년 예산 : 3,80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사업신청

-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26.2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박준호	044-201-2476

☑ 목적

- ☑ 청년들에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국제진출 여건 마련
- ☑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유도

☑ 사업내용

- ☑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3~5개월간 파견

☑ 지원자격 및 요건

-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재(휴)학생 및 졸업생
* 연령, 학력, 성적, 어학 등 세부 내용 선발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사전교육, 활동비, 항공료, 준비비(보험·비자발급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377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신청

- ☑ 매년 초 개별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문 참고

☑ 대상자 선정

- ☑ 단계별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1차 서류접수 → 2차 국내면접 → 3차 최종면접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지순	044-201-2033

☑ 목적

- ☑ FAO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대응 및 국제 농수산물식품 정보제공 등을 통해 통상현안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 사업내용

- ☑ FAO 주관 국제회의 의제 분석, 발언자료 정리, 논의동향 수집·분석 업무 지원 및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업정책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 발간 보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FAO한국협회* 직접 추진

* 제6차 FAO 총회('51.11월, 로마)에서 각 국가에 FAO 국가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재정지원 요청함에 따라, '57년부터 FAO한국협회 설립·운영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80%
- ☑ '26년 예산 : 662백만원(국비 80%)

☑ 시행근거(법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및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분야의 국제협력)UN/FAO 총회 결의(1951년),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제3조(FAO 사업조성 필요경비 금액 교부)

☑ 사업신청

- ☑ 해당없음

대상자 선정

해당없음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지순	044-201-2033

☑ 목적

- ☑ 대외변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WTO·FTA 협상 등 농업통상 현안 및 국제협력 업무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지원

☑ 사업내용

- ☑ 국제 농업 통상현안 대응
 - OECD 연구동향 이슈 심층분석, SPS 동향 모니터링, 농축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율 조사 분석, 통상대응 전문자료 동향분석 등 현안대응
- ☑ 국제농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농업협력 초청연구, APEC 식량안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 국제농업 통상협상 기반 마련
 - 농업통상 전문가포럼, SPS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 FTA 규범 세미나 진행을 통한 농업통상 협상기반 마련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 ☑ 지원 내용·품목 : 사업비, 직접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450백만원(국비100%)

☑ 사업신청

- ☑ 해당사항

☑ 대상자 선정

- ☑ 해당사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지순	044-201-2033

☑ 목적

-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 기획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제협력사업(ODA)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외건설업 등을 신고한 업체
 - * 세부요건은 발주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 '26년 예산 : 114,151백만원(국비100%)

☑ 시행근거(법령)

-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30조

☑ 사업신청

- ☑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입찰(총액입찰)

☑ 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박영현	044-201-2048

8



탄소중립,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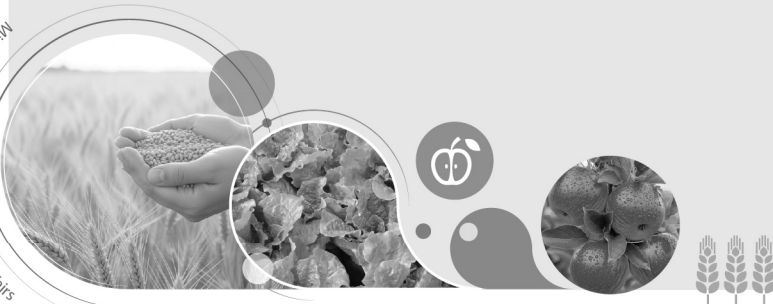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8-1 친환경농업



☑ 목적

-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사업내용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및 예산

-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160kg
-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사업연도 전년 11~12월)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배형준	044-201-2438

☑ 목적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 사업내용

-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한도(사업규모) : 최대 20억원/개소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신청

- ☑ 시·도(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사업연도 전년 2월~)

☑ 대상자 선정

- ☑ 시·도(시·군)에서 사업평가지표에 따라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포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확정하고, 농식품부에 적정성 검토 신청
 - (서면) 계획의 적정성, 농지의 집적정도, 생산관리 현황, 유통 확보 현황 등
 - (발표) 사업자의 의지 및 역량,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 (현장심사) 환경평가, 조직의 결속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배형준	044-201-2438

☑ 목 적

-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사업내용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사업신청

-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배형준	044-201-2438

☑ 목적

- ☑ 유기식품 및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활동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친환경인증 심사원 양성 및 전문인력 육성, 현장조사기기 구입, 인증기관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인증기관,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및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전담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육성, 농업인 의무교육 비용 지원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 '26년 예산 : 663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의 4 및 제54조

☑ 사업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친환경인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및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 능력, 관리기술 등)+입찰가격평가 20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26.1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박준용	054-429-4177

☑ 목적

-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교육·체험·소비·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 사업내용

-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시도, 시군구),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본·시행계획(설계 및 운영) 수립, 공사시행* 및 운영준비
 - * 기반시설(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판매·가공시설, 교육·홍보·체험시설, 편의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단, 부지매입, 위락시설 지원 불가)
-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0억원(국비 90억원)/ 6년간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사업신청

- ☑ 지특회계(자율계정)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 소관 지자체가 예산 신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안정은	044-201-2432

☑ 목적

- ☑ 친환경·무항생제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하여 인증업무 수준 향상 및 우수인증기관 육성

☑ 사업내용

- ☑ 친환경·무항생제 인증기관 등급평가(서면, 현장) 제반사항 실시 및 등급평가 보고서 작성·보고,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무항생제 인증기관 지정·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인증기관 등급평가 관련 비용 지원
-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 '26년 예산 : 10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사업신청

-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 대상자 선정

- ☑ 공모 및 사업제안서 평가*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사업운영기관 1개소)

* 기술능력평가 80%(기술지식, 사업수행, 인력·조직, 실적 등)+입찰가격평가 20

-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26.1월말)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이상신	054-429-4148

☑ 목적

- ☑ 유기가공식품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유기식품의 소비가치 확산

☑ 사업내용

- ☑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국제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참가를 위한 임차비, 바이어 발굴 및 주선비, 수출 상담 통역원, 홍보자료 제작, 샘플 운송비 등
 - * 참가업체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 수출 교육 및 컨설팅
-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7.03.
- ☑ '26년 예산 : 350백만원(국비 100)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54조

☑ 사업신청

- ☑ (온라인)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접속하여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문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 4~5월 중에 지원사업 안내문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임

☑ 대상자 선정

- ☑ 신청서류 등을 계량·비계량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해외시장 개척의지, 수출 인프라, 국내 원료 사용 등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박준영	054-429-4181

☑ 목적

- ☑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용자 지원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지원규모 : 18,500백만원(농협경제지주 12,5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000)
- 사업추진기관(aT, 농협경제지주)별 지원규모는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 지원형태 : 용자 80%, 자부담 20%
- ☑ 지원기간 : 1년 일시 상환
-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연 2.5%, 조합 등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 지원 한도 : 업체당 5,000백만원
-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 사업의무량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구매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사업신청

-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 지부에 제출('26.1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제출

☑ 대상자 선정

-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26.2월)
 - 잔여 예산이 발생하거나 지원규모가 증액될 경우 추가 대상자 모집·선정(수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 식	044-201-2440

☑ 목 적

-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반 조성 및 미래세대 건강한 먹거리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

☑ 사업내용

- ☑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부

☑ 지원내용 및 예산

-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구입 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임신부 1인당 24만원 지원

☑ 시행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법 제3조, 제7조, 제55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사업신청

- ☑ (온라인) 사업전용온라인몰(에코이몰) 신청
- ☑ (오프라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사업전용온라인몰에 사업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 ☑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또는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가구)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안정은	044-201-2432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탄소중립, 기후변화

8-2 저탄소농축산



☑ 목적

-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사업내용

-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육우) 1.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02만원/수/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0.13만원/톤/년
 - (강제송풍, 한우·육우) 0.05만원/톤/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 0.15만원/톤/년
 - (강제송풍, 젖소) 0.05만원/톤/년

☑ 시행근거(법령)

-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 등

☑ 사업신청

-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6. 1 ~ 7월
 - * 사업홍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변경 가능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 대상자 선정

- ☑ 농식품부는 시·도별 수요조사 또는 사육두수에 따른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 시·도별 사업량은 사업 전체 물량(100%수준) 내에서 배정
- ☑ 축산환경관리원은 AgriX 신청자료를 토대로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통보
 - 신청물량이 시·도 배정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단, 신청 미달 시도의 물량과의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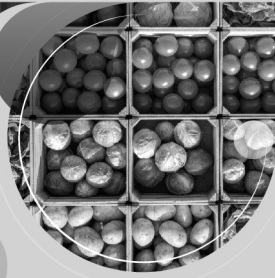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지찬욱	044-201-2392

9



임업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 목적

- ☑ 숲가꾸기사업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 정비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 ☑ (반복참여 제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에 한해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만 6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반복참여 예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류 구입 등 지원
- ☑ 지원 기준 : 사업 참여자 인건비(국고 50%, 지방비 50%)
 - 1일 임금 :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 자원조사단 및 수집단 82,560원
- ☑ '26년 예산 : 26,859백만원(국비 13,649, 지방비 13,210)

☑ 사업신청

- ☑ 신청 접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 신청기간 : 각 사업시행 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설정(매년 1~2월)
 - ※ 중도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수시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 산림청의 “직접일자리 종합 지침”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선발

※ 내내역사업 : 숲가꾸기패트를,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박세은 주무관 안인호	042-481-4218 042-481-4105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 목적

- ☑ 양질의 전문 임업노동력 확보로 산림작업의 품질향상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
- ☑ 사방, 훼손지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및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경영기능인 양성으로 산지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
- ☑ 임업기계조종사 양성을 통한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과 목재생산성 향상
- ☑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해율을 저감하고 높은 재해율에 따른 임업의 부정적 인식 및 임업경영 부담 개선

☑ 사업내용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훈련기관인 임업훈련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 ☑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업기계 등 산림현장의 작업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기능인영림단, 산림 관련 전공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기능인영림단 교육 : 15일(800명)
- ☑ 산림공학기능인 교육 : 15일(40명)
- ☑ 임업기계조종사 교육 : 15일(100명)
- ☑ 산림경영자 교육 : 60일(65명)
-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 2시간(7,800명)
- ☑ '26년 예산 : 2,158백만원(국비 2,068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 **시행근거(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

☑ **사업신청**

-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3개 교육원(양산, 강릉, 진안) 공문, 유선, 홈페이지 신청
- ☑ 신청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

☑ **대상자 선정**

- ☑ 신청자 중 선착순 선발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설진명	042-481-8816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정우영	02-3434-7212

☑ 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생산장비, 재해예방시설, 작업로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및 예산

- ☑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방제장비,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시설(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등을 지원
- ☑ '26년 예산 : 6,141백만원 (국비 6,141, 지방비 9,211, 용자 9,211, 자부담 6,141)

☑ 시행근거(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신청

-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승엽	042-481-4209

☑ 목적

-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① 공모사업 :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
- ② 소액사업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보조비율

- ① 공모사업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② 소액사업 : 국비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 ☑ '26년 예산 : 10,322백만원 (국비 10,322, 지방비 12,718, 용자 11,336, 자부담 10,322)

☑ 시행근거(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신청**

- ☑ 소액사업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 공모사업 : '26.4~6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승엽	042-481-4209

☑ 목적

- ☑ 계속된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재배포지의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 산도 교정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사업내용

- ☑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토양개량제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 유기질비료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 ☑ 유기질비료 : 종류·등급별 정액지원(국비 1,000~1,400원, 지방비 600원 이상)
- ☑ '26년 예산 : 2,100백만원 (국비 2,100, 지방비 900)

☑ 시행근거(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신청

- ☑ '26.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검토 후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승엽	042-481-4209

☑ 목적

- ☑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 사업내용

- ☑ 임산물의 소비 심리 위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우수 임산물 전시회, 임산물 홍보 등
- ☑ ('26년 예산) 265백만원(국비 265, 지방비 - , 용자 - , 자부담 -)

☑ 사업신청

- ☑ 사업계획서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 소비 촉진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윤세정 주무관 김기형	042-481-4208 024-481-1848

☑ **목 적**

- ☑ 단기소득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 ☑ 임산물 2차 가공을 위한 가공시설, 장비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건축, 가공장비, 선별 포장, 위생, 판매시설 등
- ☑ ('26년 예산)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400, 용자 - , 자부담 600)

☑ **사업신청**

-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 검토평가(1차) → 시·도 검토평가(2차) → 임업진흥원에서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 실사 → 최종심의회를 통한 확정(전년도 8월말까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경열 주무관 이상직	042-481-4206 024-481-4207

☑ 목적

-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 인증 임산물 등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 1회성의 포장 박스도 지원 가능, 즉시 유통되지 않는 임산물 저장 및 단순 운반을 위한 다회용 상자(나무, 플라스틱 소재 상자 등)는 지원 불가
- ☑ ('26년 예산) 10,325백만원(국비 2,065, 지방비 3,097, 용자 3,097, 자부담 2,065)

☑ 사업신청

-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 심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경열 주무관 이상직	042-481-4206 024-481-4207

☑ 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 저장, 가공 등 유통 체계 구축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 임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산림조합)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건축, 저장시설, 가공 장비, 선별 포장, 유통 장비 등
- ☑ ('26년 예산) 4,000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00, 용자- , 자부담 1,200)

☑ 사업신청

- ☑ 사업실행 전년 5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매년 공모사업 접수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 검토평가(1차) → 시·도 검토평가(2차) → 임업진흥원에서 사업타당성평가 및 현장 실사 → 최종심의회를 통한 확정(전년도 8월말까지)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경열 주무관 이상직	042-481-4206 024-481-4207

☑ 목적

-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임가의 산림소득 증대

☑ 사업내용

-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및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 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
- ☑ ('26년 예산) 15,476백만원(국비 3,095, 지방비 4,643, 용자 4,643, 자부담 3,095)

☑ 사업신청

- ☑ '26년 6~7월까지 해당(사업 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대상자 선정

- ☑ 시·군·구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 심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경열 주무관 이상직	042-481-4206 024-481-4207

☑ 목 적

- ☑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 사업내용

-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의 생육 단계별 적정
- ☑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으로 육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숲가꾸기 사업비
- ☑ 지원 기준 : 사업비 100%(국고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306,630백만원(국비 153,315, 지방비 153,315)

☑ 시행근거(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신청

- ☑ 장소 : 산림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시·군·구)
- ☑ 기간 : 전년도 2월 말(수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에서 정하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 중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최승호	042-481-4157

☑ 목적

- ☑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 사업내용

-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품목 : 조림사업 대행
- ☑ 지원 기준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50~70%),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 2026년 예산 : 195,890백만원(국비 106,278, 지방비 83,875, 자부담 5,737)

☑ 시행근거(법령)

- ☑ 산림기본법 제16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사업신청

- ☑ 임야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조림사업 신청
- ☑ 신청시기 방법 : 전년도 2월말, 방문신청

☑ 대상자 선정

-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신청내용에 대해 서류, 현장 확인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석상구	042-481-4183

☑ 목적

-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품 가공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 임산물 규격·품질 관리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임산물 수출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조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공동 집하·출하 시설, 자동선별장비 등 가공시설 및 장비
-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26년 예산 :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200, 자부담 300)

☑ 사업신청

- ☑ 공모시기 : 매년 6~7월경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대상자를 추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사무관 김재기	042-481-4086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실장 유기진	02-6393-2561

☑ 목적

- ☑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수출 활성화

☑ 사업내용

- ☑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보험 등 글로벌 안전성 관리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임산물 수출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 '26년 예산 : 580백만원

☑ 사업신청

- ☑ 공모시기 : 매년 2~3월경
- ☑ 신청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nfcf.or.kr)를 통해 공고

☑ 대상자 선정

- ☑ 사업에 따라 선정기준은 상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사무관 김재기	042-481-4086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대리 표관영	02-3434-7330

☑ 목적

- ☑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및 협의회 육성, 글로벌 선도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 수출통합조직 및 협의회 육성, 글로벌 선도조직 육성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임산물 수출업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수출조직 공동마케팅, 선도조직 육성, 수출컨설팅 등
-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 '26년 예산 : 1,168백만원

☑ 사업신청

- ☑ 공모시기 : 매년 2~3월경
-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대상자 선정

- ☑ 사업에 따라 선정기준은 상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사무관 김재기	042-481-408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유통부	차장 임요한	042-389-5014

☑ 목적

- ☑ 임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수출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 사업내용

- ☑ 임산물 패키지 지원, 국제박람회 및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임산물 수출업체, 해외 바이어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패키지 지원, 박람회 참가, 해외판촉 등
- ☑ 지원 기준 : 국고 80~100%, 자부담 0~20%
- ☑ '26년 예산 : 2,425백만원

☑ 사업신청

- ☑ 공모시기 : 매년 2~3월경
-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대상자 선정

- ☑ 사업에 따라 선정기준은 상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사무관 김재기	042-481-408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유통부	차장 임요한	042-389-5014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실	실장 유기진	02-6393-2561

☑ 목적

- ☑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향상 도모 및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및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 '26년 예산 : 5,934백만원(국비 4,154, 지방비 1,187, 자부담 593)

☑ 사업신청

- ☑ 사업 시행 전년도 2월까지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 사업부지 확보,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사무관 박지현 주무관 김동역	042-481-8814 042-481-8815

☑ 목적

- ☑ 산림병해충 예찰·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보호에 기여

☑ 사업내용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통해 피해 감소 및 청정지역 확대
- ☑ (일반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예찰·방제 및 수목진료 제도 운영
- ☑ (침단예찰방제체계 구축) 소나무 이동관리체계 운영관리 및 재선충·일반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 ☑ (이동단속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무단이동 저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취급 단속
- ☑ (긴급방제비)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외래해충,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에 대한 적기 방제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림병해충 방제를 시행하는 산림소유자(방제 명령을 받은 자) 등,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 : 예찰·방제사업비 * 방제명령 받은 자 : 농약비용, 인건비 등
- ☑ 지원 기준 : 사업비 100%(국비 50%, 지방비 50% * 약제대 국비100%)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비 70%, 지방비 30% * 약제대 국비100%)
 - * 일반병해충방제(국비 50%, 지방비 50% * 약제대 국비100%)
 - * 침단예찰방제체계(재선충 무인항공방제 국비 70%, 지방비 30% * 약제대 국비100%)
(일반병해충 무인항공방제 국비 50%, 지방비 50% 약제대 자부담)
 - * 이동단속초소운영, 긴급방제비(국비 50%, 지방비 50%)
- ☑ '26년 예산 : 169,700백만원(국비 114,155, 지방비 55,545)

☑ **사업신청**

- ☑ 장소 : 산림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받은 자
- ☑ 첨단예찰방제체계(일반병해충 무인항공방제)는 신청에 따라 사전적절성 검토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사무관 이호영 주무관 장보경	042-481-4076 042-481-4038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목적

- ☑ 석재의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 사업내용

- ☑ 석재채취·가공 사업장에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부산물 재활용·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및 가공을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시설(집진기, 세륜시설, 방음벽 등)
-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 '26년 예산 : 2,200백만원(국비880, 지방비 660, 자부담 660)

☑ 사업신청

-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구 산림과로 신청
- ☑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8월까지(시·군·구별 신청·검토·심의 일정 사전 확인 必)

☑ 대상자 선정

- ☑ 지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지정책과	사무관 김대환	042-481-4193
		주무관 황지영	042-481-1224

☑ 목적

-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 등에 적극 대응

☑ 사업내용

-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 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기존시설의 개·보수, 양묘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 민유양묘장(지자체 묘목생산 대행자)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 용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 민유양묘장 소유토지이거나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신청 가능
- ☑ 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 내용·품목 : 묘목생산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20%, 자부담 20%
- ☑ '26년 예산 : 1,800백만원(국비 540, 지방비 540, 용자 360, 자부담 360)

☑ 사업신청

- ☑ 장소 : 신청서를 사업대상지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
- ☑ 신청기간 : 7~8월

☑ 대상자 선정

- ☑ 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서기관 김영훈	042-481-4185
		주무관 김준명	042-481-4179

☑ 목적

- ☑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

☑ 사업내용

-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규모임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자격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19.4.1~'22.9.30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 육림업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지급대상자가 실시한 육림실적이 있는 산지
- ☑ 지원요건 :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육림업 제외)

☑ 지원내용 및 예산

- ☑ 지원내용 : (소규모임가) 130만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지급대상 산지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 '26년 예산 : 59,146백만원(국비 100%)

☑ 사업신청(직불금 등록신청)

- ☑ 신청장소 :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예정

☑ 대상자 선정

- ☑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이 공고하여 정하는 날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읍·면·동에 제출
- ☑ 실경영 여부, 부정산지분할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하려 적격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

☑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사무관 김양천	042-481-1241
		주무관 임유미	042-481-1242